

뉴질랜드

정보수정일자: 2012. 03. 23

작성처: 오uckland 무역관

본 자료를 무단으로 복제, 전재, 판매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에 의해 엄격하게 금지되며 위반 시에는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kotra

<http://www.kotra.or.kr>

<http://www.globalwindow.org>

◀ 목 차 ▶

I. 국가일반

국가개요 /1
정치사회동향 /3
한국과의 주요이슈 /7

II. 경제

경제동향 및 전망 /8
주요 산업 동향 /10
지역무역협정 체결현황 /16

III. 무역

1. 교역동향
수출입 동향 /17
한국과의 교역동향 및 특징 /19
2. 무역관련 주요제도 및 절차
수입규제제도 /22
대한수입규제동향 /24
관세제도 /26
주요인증제도 /27
지적재산권 /30
통관운송 /31

IV. 투자

1. 투자환경 및 동향

- 투자환경 /34
- 외국기업 투자동향 /38
- 우리기업 투자동향 /41

2. 외국인투자 유치제도

- 주요 투자법 내용 /43
- 진출형태별 절차 /45
- 투자입지여건 /51

3. 사업관리

- 노무관리 /52
- 조세제도 /54
- 외환관리 및 자금조달 /56

V. Business 참고정보

- 시장특성 /58
- 물가정보 /60
- 바이어발굴 /61
- 상관습 및 거래 시 유의사항 /63
- 무역, 투자 진출 시 애로사항 /65
- 진출 성공, 실패 사례 /67
- 이주정착 가이드 /69
- 출장가이드 /73
- 주요 전시회 개최일정 /89
- 유관기관 웹사이트 /91



1. 국가일반

1. 국가개요

가. 일반 사항

국 명	뉴질랜드(New Zealand)
위 치	대양주 남단
면 적	270,534 km ² (남한의 2.7배) (북섬 11만 6,000 km ² , 남섬 15만 1,000km ²)
기 후	온난해양성 기후(1월 평균 16.5도, 7월 평균 8도)
수 도	웰링턴(Wellington) - 1865년 오클랜드에서 천도
인 구	442만 2천 7백명(2011. 12월 기준, 추정치) - 북섬에 약 75% 거주
주요 도시	Auckland(150만), Christchurch(39만), Wellington(38만), Hamilton(20만)
인 종	유럽인(70%), 마오리(15.8%), 아시안(7%), 폴리네시아인(6.5%), 기타(0.7%)
언 어	영어, 마오리어(원주민어)
종 교	기독교 약 51% ('86년 73%), 및 여러 종교 산재
건국일	1840.2.6 (영국 총독과 마오리 대표간 Waitangi 조약 체결)
정부형태	의원 내각제
국가원수	영국 Queen Elizabeth II
수상	John Key (국민당 당수)

자료: Statistics New Zealand (www.stats.govt.nz)

나. 경제 지표

GDP	US\$ 1,039억 (2011년) (= NZ\$ 1350억, 적용환율: 0.7697)
경제 성장률	1.2% (2011년)
1인당 GDP	US\$ 23,506 (2011년)
실업률	6.3% (2011년)
소비자물가상승률	2.6% (2011년)
화폐단위	NZ Dollar(NZ\$)
환 율	US\$1 = NZ\$ 1.2241 (2012년 3월 7일 매도율)
외 채	US\$ 2,213억 (2011. 9월 현재, GDP의 133.7%) - 민간외채 (US\$ 1,842억), 정부외채 (US\$ 371억)
외환보유고	US\$ 181.9억 (2012. 1월 기준, 적용환율: 0.8007)
산업구조	1차 산업(7.5%), 제조업(12.0%), 전기수도(2.0%), 건설(4.0%), 도소매 숙박(15.3%), 운송 통신(10.3%) 금융 보험(29.0%), 재정 국방(5.0%), 개인 공동체서비스(12.2%)
교역규모	US\$ 748억 (수출 US\$ 377억, 수입 US\$ 371억), 2011년

자료: 뉴질랜드 재무성, IMF, 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tics, World Trade Atlas,

다. 주요 교역 품목

수 출	낙농 제품, 육류, 목재, 양모, 수산물
수 입	기계류, 전기전자, 차량, 원유, 철강, 플라스틱

라. 한-뉴질랜드 관계

특수 관계	1950년 한국전에 뉴질랜드 군인 6,020명이 참전, 45명이 전사함. 북한과는 2001.3.26 수교하였으나, 대사관을 설치하지는 않았음.
체결 협정	대사급 수교('62), 무역경제기술협력협정('67.7), 어업협정('78.3), 국제운수소득면세협정('78.12), 이중과세방지협정('81.11), 항공협정('93.8), 사증면제협정('94.8), 임업협력협정('97.4), 과학기술의정서('97.9), 취업관광사증협정('99.5), 형사사법공조협정('00.3), 방산물자품질보증약정('00.11), 범죄인인도조약('01.5), 영화공동제작 약정('05.11), 경찰협력약정('06.6), 농림부간협력약정('07.4), 군수협력협정('07.11), 영화공동제작협정('08.9)
무역 규모	한국 수출 US\$11억385만, 한국 수입 US\$14억7446만('11)
교역 품목	o 한국의 수출: 석유제품, 자동차, 무선통신기기, 철강 o 한국의 수입: 목재, 육류, 축산가공품, 기타석유화학
투자 교류	o 우리나라는 도소매, 광업·농림어업, 숙박 및 음식점업 등을 중심으로 신고기준 총 22건, US\$1,186만 규모의 對뉴 투자를 함. ('11) (누적: 총 477건, US\$3억4,473만). o 뉴질랜드는 전기·가스·수도·건설,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신고기준 총 4건 US\$ 36만 규모의 對한 투자를 함. ('11) (누적: 총 79건, US\$ 6,951만)
교 민	주오클랜드 총영사관의 추산에 의하면 뉴질랜드 교민은 약 30,000명인 것으로 보임. 이는 뉴질랜드내 아시아인 인구 중 중국(약 15만명)과 인도(약 10만명)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것이며 전체 인구의 약 0.7%를 차지하는 비율임

2. 정치 사회 동향

가. 국가 조직

1) 정치 체제

뉴질랜드는 의원내각제 국가이나 일부 영연방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명목상 국가원수는 영국 여왕 Queen Elizabeth 2세가 겸임하는 입헌군주제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국가원수는 뉴질랜드 총리의 제청에 따라 임명되는 임기 5년의 총독에게 권한을 위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총독은 뉴질랜드 주권을 대표하지만 평시에는 상징적인 정치적 권력만을 보유 한다.

현재 뉴질랜드 총독(Governor-General)은 2011년 8월 31일에 취임한 전직 방위군 총사령관 출신인 제리 마티파라이 (Jerry Mateparae) 중장이다. 그는 뉴질랜드 최초의 마오리 방위군 참모총장이며, 역사상 두 번째 마오리 총독이다.

2) 선거 제도

개별 후보와 정당에 각각 투표하는 방식으로 지역구 및 전국구 의원을 뽑는 방식으로 되어 있으며 매 3년 마다 총선이 있다.

선거권은 뉴질랜드 국적/영주권 보유 여부와 상관 없이 1년 이상 뉴질랜드에 거주한 모든 만 18세 이상의 사람에게(단 1개월 이상 해당지역 선거구에서 거주해야 함) 부여되고, 피선거권은 선거권을 가진 시민권자(영주권자 제외)에게만 부여된다.

3) 행정부

뉴질랜드는 연방이 아닌 단일국가(Unitary State)로 구성되어 있다. 주정부가 따로 없는 중앙정부-기초 지방단체의 2원 정부체제(Two-Tier System)로 운영되고 있으며, 단원제의 의원 내각제를 운영하고 있다.

의원 내각제로 3년마다 실시되는 총선에서 다수 의석을 차지한 정당의 당수가 수상이 되며 수상이 임명한 의원이 각료가 되어 내각을 구성하고 있다. 이들 장관들은 정부 의사결정의 주도 역할을 하며 국무위원들은 정책 입안 및 정부주도의 법률안 제출과 행정관장 및 세출 결정 등을 담당하고 있다.

각료 명단

직위	이름
총리	John Key
부총리	Bill English
교통부 장관	Gerry Brownlee
경제개발부 장관	Steven Joyce
법무부 장관	Judith Collins
보건부 장관	Tony Ryall
교육부 장관	Hekia Parata
문화부 장관	Christopher Finlayson
사회개발부 장관	Paula Bennett
환경부 장관	Dr. Nick Smith

산업부 장관	David Carter
외무부장관	Murray McCully
경찰 장관	Anne Tolley
국방부 장관	Dr. Jonathan Coleman
무역 장관	Tim Groser
에너지자원 장관	Phil Heatley
노동부 장관	Kate Wilkinson
이민국 장관	Nathan Guy
상공부 장관	Craig Foss
내무부 장관	Amy Adams
건설부 장관	Maurice Williamson
남북국방 장관	Chris Tremain
여성부 장관	Jo Goodhew
법원 장관	Chester Borrowes
국세청 장관	Peter Dunne
규제개혁 소상공 장관	John Banks
마오리담당 장관	Dr. Pita Sharples
장애문제담당 장관	Tariana Turia

주: *** 국무위원(장관의 직함이 부처 명칭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님)

자료: 내각부 (Department of the Prime Minister and Cabinet)

또한 사무차관(Chief Executive) 제도를 도입하여 장관(Minister)은 의원이 겸직하고 실무는 사무차관이 담당하고 있다. 지방 행정조직은 17개 Region, 15 개의 City, 59개의 District (74개 Territorial Authorities)로 각각 지방의회(Council)가 있으며 지방자치제도를 도입하여 실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강력한 중앙집권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4) 사법부

불문법 국가로 성문헌법은 없으며 New Zealand's Constitution Act 1986 이외에 영국법률 (Imperial Acts)과 역사적인 성문법 (Magna Carta, Habeas Corpus Act 1679 등)이 헌법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관련 영국 법률들은 뉴질랜드 국내법 Imperial Laws' Application Act 1988에 열거되어 있다.

뉴질랜드는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한 상소법원, 고등법원 및 지방법원 등 4심 제도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 외에 특정분야의 법률문제를 다루는 특수법원으로 Small Claims Tribunal, Labor Court, Maori Land Court, Children & Young Persons Court, Family Court Division, Dispute Tribunal 등이 있다.

판사는 우리와 달리 변호사로서 7년 이상 근무한 사람을 대상으로 소정의 추천 절차를 거쳐 임용하며 실제로는 최소 15년 이상의 변호사 경험이 있는 자들이 임용되는 게 관례화 되어 있다.

뉴질랜드에는 한국과 같은 검찰청이 따로 없고 수사권은 경찰에 일임되어 있으며, 정부 기관의 법률 업무는 왕실 변호사(Crown Solicitor)란 기관이 담당하며 수사권은 없다. 다만, 한국적인 의미에서의 검사 역할, 즉 기소 변호사(prosecutor)가 필요한 경우에는 정부와의 계약에 의해 한 변호사 사무실이 그 업무를 맡아 하게 된다.

우리와는 달리 헌법 과 헌법재판소가 따로 없다는 점에서 최고 법원인 대법원이 정부에 대한 최대의 견제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5) 의회

1852년 영국 의회는 The New Zealand Constitution Act를 제정함으로써 뉴질랜드 의회 민주주의의 기초를 다지는 초석이 되었다. 영국식 의원내각제를 통해 국정이 운영되고 있고 1893년 세계 최초로 여성의 참정권을 인정하였다. 임기 3년의 단원제 및 소선거구제와 비례대표제를 혼용하고 있고 현재의 의석 총수는 121석이다.

총선은 3년마다 비밀투표로 실시되며 18세 이상인 뉴질랜드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는 물론 1년 이상 거주자는 누구나 투표가 가능하며, 유권자는 정당에 한 표, 선거구의 후보자에게 한 표씩을 행사하는 혼합비례 선거제도 (MMP; Mixed Member Proportional Representation)를 채택하고 있다. 가장 최근의 총선은 2011년 11월 26일 실시되었으며, 집권당인 국민당이 59석을 얻어 재집권에 성공했다.

정당별 득표 및 의석 현황(2001년 11월 총선 결과)

정당 명	정당 득표	지지율	지역구	전국구	총 의석
National Party	1,058,636	47.31	42	17	59
Labour Party	614,937	27.48	22	12	34
Green Party	247,372	11.06	0	14	14
New Zealand First Party	147,544	6.59	0	8	8
Maori Party	31,982	1.43	3	0	3
Mana	24,168	1.08	1	0	1
Act New Zealand	23,889	1.07	1	0	1
United Future	13,443	0.6	1	0	1
총계			70	51	121

자료: 뉴질랜드 선거관리위원회 (www.elections.govt.nz)

의회구성은 의장(Speaker), 부의장(Deputy Speaker), 위원회 전체의장(Chairman of Committees), 사무총장(Clerk of the House), 정무장관(Minister of State) 그리고 18개에 달하는 분과 위원회(Select Committee)로 되어 있다.

나. 국내정치 동향

현 국민당 정부는 2011년 11월 총선 승리로 재집권에 성공했다. 이에 따라 기존의 경제정책 기조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며 도로 및 학교건설, 초고속 인터넷망 구축 등의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정부 보유 국영기업 지분 매각, 자원개발절차 간소화를 통한 석유 및 천연가스 채굴 확대, 탄소배출권 거래제도 단계적 도입 등이 예상되고 있고, 중국, 인도 등과의 경제협력을 강화하는 뉴질랜드 정부의 아시아 중시정책도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다만, 유럽발 재정위기로 인한 세계 경제의 침체 지속과 잦은 여진으로 인한 크라이스트처치 지진 복구작업의 지연에 따른 성장을 둔화 등의 경제적 부담을 안고 있다.

다. 사회동향

뉴질랜드는 캔터베리 지역 크라이스트처치에서 2010년 9월과 2011년 2월에 발생한 두 차례의 지진으로 185명이 사망하는 등 큰 피해를 입었다. 뉴질랜드 재무성에 따르면, 두 지진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NZ\$ 150억 정도로 추산하고 있으며, 이는 뉴질랜드 연간 GDP의 8%에 달하는 액수이다.

뉴질랜드 정부는 지진복구를 위해 재건청(CERA; The Canterbury Earthquake Recovery Authority)를 신설, 빠른 복구를 위해 힘쓰고 있지만 계속되는 여진으로 지체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진복구에 55억불의 지진복구기금이 투입될 예정이며, 4,500개의 일자리 창출도 기대되고 있다.

지진 피해규모

(단위: NZ 10억불)

구분	주거지역	상업지역	인프라	합계
9 월 지진	3.25	0.75	1.0	5.0
2 월 지진	6.0	3.0	3.0	12.0
합계	9.0	3.0	3.0	15.0

자료: 뉴질랜드 재무성, 중복된 피해는 합계에서 제외

한편, 제 7회 럭비월드컵이 2011년 9월 9일에서 10월 23일까지 45일간 뉴질랜드 12개 지역에서 개최되었고, 모두 48게임이 치러졌다. 이번 대회는 뉴질랜드가 유치한 스포츠 행사 중 최대 규모였고 대회 기간 중 뉴질랜드를 방문한 외국인인 13만 3천명으로 집계되었다. 이번 대회 준비를 위해 뉴질랜드는 모두 12억 달러를 사용했으며, 입장권 판매 수익은 당초 목표를 초과한 2억 6,850만 달러를 기록했다. 특히, 이번 럭비월드컵은 크라이스트처치 지진으로 침체에 빠진 관광업계에 돌파구를 마련한 행사로 평가 받고 있다.

3. 한국과의 주요 이슈

가. 양국 수교 50주년

2012년은 양국 수교 50주년을 맞는 해로 양국 정부는 ‘한-뉴 우호의 해’로 지정, 인적, 문화교류 확대를 도모하고 있다. 웰링턴과 오클랜드에서 ‘한-뉴 우호의 해’ 리셉션이 개최될 예정이며, 문화공연 행사, 학술회의, 비즈니스 포럼 등도 개최될 예정이다.

특히, 많은 뉴질랜드인들은 아직도 한국이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어 있는 나라 등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아 양국 관계의 심화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따라서 문화적, 정서적 격차 해소를 통해 뉴질랜드에 한국에 대한 호의적인 이미지를 형성하는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나. 한-뉴 FTA 협상

2009년 3월 3일-4일 이틀에 걸친 이명박 대통령의 뉴질랜드 국빈방문에서 뉴질랜드 존키 수상과의 정상회담이 열렸고, 이 때 양국간 자유무역협정 협상의 공식 개시가 선언되었다. 그 후 2009년 6월 서울에서 1차 협상(8-12일)이 열렸으며, 2차 협상은 9월(14-18일) 웰링턴에서, 3차 협상은 12월(14-18) 서울에서, 4차 협상은 2010.5월(12-14) 웰링턴에서 그리고 5차 협상은 2010년 7월(5-7) 서울에서 각각 열렸다. 2010년 7월 협상 이후 추가 협상은 주요 쟁점에 대해 양측이 이견을 좁히지 못해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

뉴질랜드 측은 한국이 칠레, 페루, 미국, 호주 등과의 FTA를 적극 추진하면서 한국시장에서 경쟁력을 잃을 것을 우려, 조속한 협상 재개를 희망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한국측은 외교적 측면, 교민사회 및 양국 국민간 인적교류 등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한국측은 뉴질랜드측이 농축산물 시장 개방을 과도하고 요구하고 있고, 현행 뉴질랜드의 관세율이 낮아(평균 3%) 우리 제조업의 실익이 많지 않고, 농림수산업 협력 확대 및 인력이동 원활화 등 우리 요구에 대해 뉴질랜드측이 소극적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다. 우리 수출 10억불 돌파

2011년 우리나라의 대뉴 수출이 사상 처음으로 10억불을 돌파, 11억불을 기록했다. 1987년 1억불을 돌파했던 대뉴 수출이 24년만에 10억불을 돌파함으로써 수출증가세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주요 수출품목은 승용차, 경유, 휘발유, 철도차량 등이며, 수입품목은 원목, 낙농품, 가축육류 등이다.

한편, 2011년 수입은 14억7천만불을 기록, 3억7천만불의 무역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II. 경제

1. 경제동향 및 전망

가. 개관

2008년 금융위기로 인한 세계 경기 위축으로 뉴질랜드 경제도 2009년과 2010년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하는 등 많은 영향을 받았다. 하지만 주력 수출상품인 1차 상품의 국제가격이 상승하면서 수출이 호조를 보였고 뉴질랜드 달러화의 강세가 이어지는 등 유럽, 미국 등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는 비교적 양호한 경제 상태를 유지했다.

다만, 2011년 2월 발생한 크라이스트처치 지진은 재무성 추산으로 2011년 경제성장률을 1.5% 하락시키는 악영향을 미쳤고, 그 후 계속되고 있는 여진으로 지진 복구작업이 지연되면서 경기 활성화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또한 중동 지역의 정치적 긴장 고조로 인한 고유가는 원유 공급을 수입에 크게 의존하는 뉴질랜드 경제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나. 경제성장

2009년 -1.5%, 2010년 -0.9%의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한 뉴질랜드는 2011년 1.2% 성장하면서 부진에서 탈출하는 모습을 보였다. 뉴질랜드 정부는 2012년 경제성장률을 3.4%까지 높게 발표하기도 했지만 2012년 초에는 2.8%로 하향 조정해서 발표했는데, 이는 크라이스트처치 지진 복구작업이 당초 예상보다 지연되고 있고, 유로존의 위기로 인한 세계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고 있는 것이 주된 이유이다.

하지만 뉴질랜드 정부는 2013년과 2014년 성장률을 3.8%로 높게 잡고 있는데 이것이 실현된다면 10년만의 최고치를 경신하게 된다.

다. 무역

뉴질랜드는 교역규모 기준으로 세계 60위(2010년, IMF)에 위치하며 수출은 58위, 수입은 56위를 기록 중이다. 전체 수출에서 60% 이상을 차지하는 1차 상품에 대한 의존도가 높는데 수출 1위 품목은 분유, 치즈 등 낙농품이 차지하고 있다. 이 밖에도 육류, 목재 등이 2, 3위를 차지한다. 수입의 경우, 정제 시설 부족으로 정제된 석유제품의 수입량이 많고, 자동차, 전자제품 등 공산품도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수출대상국으로는 호주가 1위이며, 중국, 미국, 일본 등의 순으로 많이 수출 중이다. 한국은 제 5위의 수출대상국에 올라있다. 수입의 경우는 2011년 중국이 호주를 앞지르고 처음으로 제 1위 수입대상국에 올랐다. 그 다음으로는 호주, 미국, 일본 등의 순이며, 한국은 8위를 차지 중이다.

라. 경상수지

경상수지는 매년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2005년부터 2008년까지는 적자규모가 연속해서 NZ\$ 100을 넘어 섰는데, 적자폭이 가장 컸던 해는 2008년으로 NZ\$ 164.3억을 기록했다. 하지만 2009년에는 NZ\$ 46.3으로 대폭 감소한 후 2010년과 2011년에는 각각 NZ\$ 67.8억, NZ\$ 82.6억을 기록했다.

마. 환율

뉴질랜드는 1985년 환율 변동제를 도입했다. 뉴질랜드가 전체인구 440만명의 소규모 경제규모를 가진 탓에 외국자본의 유입·유출에 따라 환율변동은 심각한 상태다. 2005년 미 달러 대비 NZ\$ 0.68 수준의 환율이 2008년 3월 한때 NZ\$ 0.81까지 치솟았으나, 같은 해 하반기에 금융위기의 여파로 한때 NZ\$0.5 수준으로 급락한바 있다. 유럽발 금융위기 후 뉴질랜드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기 시작했고 2012년 3월 현재는 NZ\$ 0.82까지 상승했다.

환율변동 추이

시기	2007	2008	2009	2010	2011
환율(NZ\$:US\$)	0.7686	0.5569	0.7162	0.7504	0.7697

*자료원 : 뉴질랜드 중앙은행, 매년 12월 기준

바. 인플레이션, 실업률, 최저임금 등

중앙은행은 물가상승률 관리 목표를 1~3%로 잡고 있다. 2009년 물가상승률은 2.0%로 비교적 완만하였으나, 2010년에는 비교적 높은 4.0%를 기록했고, 2011년에는 1.9%로 또 다시 안정세를 되찾았다.

2010년 6.7%를 기록했던 실업률은 2011년에는 6.3%로 낮아졌고, 2012년에는 남성 지진복구 작업 확대에 따른 고용증대로 5% 중반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최저임금은 매년 매년 변경되는데, 2012년 4월 1일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세전금액)은 시간당 NZ\$ 13.50 (NZ\$ 108 / 8시간, NZ\$ 540 / 40시간)이다.

2. 주요 산업 동향

가. 뉴질랜드 산업 구조 및 특성

뉴질랜드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배경으로, 목축업이 잘 발달되어 있는 선진 낙농 국가이다. 전 국토의 54%가 목초지, 28%가 삼림, 5%가 경작지, 기타 13%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산업은 1978년에 200해리 경제수역을 선포한 바 있다.

뉴질랜드 농업은 주요 선진국과는 달리 농업 보조금이 없으나, 보조금을 받고 있는 여타 국가의 제품들과 겨룰 수 있을 정도로 세계 시장에서 강한 농업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지난 1995년 발효된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우루과이 라운드 농업 협정에 따라 많은 나라들이 자국의 농산물 및 수출에 지급하던 보조금을 크게 축소하고 있어 뉴질랜드 수출 품목의 해외 시장 수출 기회는 더욱 넓어지고 있다.

반면, 제조업은 극히 취약한데 이는 시장규모가 작아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없는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대외경쟁력을 보유한 제조업은 레저용 보트 분야가 유일할 정도이다. 또한 1990년대 중반 국민당 시절, 관세인하 및 관세 조기철폐 정책의 추진으로 제조업체들이 공장을 폐쇄하는 사례가 많았다. 도요타, 포드, 혼다, 마즈다가 공장을 폐쇄했고, 뉴질랜드 최대 가전제품 생산업체인 Fisher & Paykel 역시 2008년 세탁기 공장을 태국으로 이전했다.

뉴질랜드 통계청의 자료에 의하면, 2011년 산업별 GDP 구성은 1차 산업이 7.5%, 2차 산업이 18.0%, 3차 산업이 71.6%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GDP by Industries (2011)

(단위: %)

대분류	소분류	비중	
1차 산업	농업	5.0	7.5
	임업, 광업, 수산업	2.5	
2차 산업	제조업	12.0	18.0
	전기, 수도, 가스	2.0	
	건설업	4.0	
3차 산업	도매업	7.3	71.6
	소매업, 숙박, 요식업	8.0	
	운송, 통신업	10.3	
	금융, 보험, 사업중개업	29.0	
	재정 및 국방, 기타	5.0	
	개인 및 공동체 서비스	12.0	
합계		100.0	

자료: 뉴질랜드 통계청

나. 낙농업

뉴질랜드는 국토의 52%가 목초지로 낙농 선진국이다. 전체 수출에서 낙농품이 차지하는 비율이 약 25%를 차지할 정도다. 주요 낙농 제품으로는 분유, 치즈, 버터, 식품 원료 등이 있는데, 뉴질랜드 낙농산업은 대규모 가공 시설과 결합한 효율적인 목축 시스템, 연구 개발에 대한 많은 비용의 투자, 혁신적인 마케팅을 자랑하고 있다. 뉴질랜드의 유제품

수출 비중은 전세계 유제품 교역량의 30%에 이르고 있으며 시장 영향력도 막강하다.

뉴질랜드 낙농업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기업은 폰테라 협동조합(Fonterra Cooperative Group)이다. 폰테라는 뉴질랜드에서 생산되는 유제품의 90%이상을 수출하는 세계적인 기업으로 낙농업의 발전을 위해 뉴질랜드의 가장 큰 유가공업체 2개와 뉴질랜드 낙농청(New Zealand Dairy Board)의 합병으로 설립되었다.

폰테라는 서울에도 사무소가 있어 뉴질랜드 낙농 제품의 수출 통로가 되고 있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주요 제품 및 원료를 뉴질랜드에서 수입하려 할 때는 폰테라를 통해 구매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폰테라는 가격과 물량을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 폰테라는 세계 120개국에 1만 7,000여 명의 직원을 두고 있으며 140억 달러의 연간 소득을 올리고 있다.

한편, 뉴질랜드 목축업의 근간이 되는 가축 숫자는 인구의 10배에 육박하는 4천2백60만 마리로 집계되고 있다. 가장 많은 가축은 양으로 3천114만마리이며, 그 다음으로는 젖소, 육우, 사슴, 돼지의 순이다. 특이한 점은 뉴질랜드에서는 연중 풀이 자라고 흑한이나 흑서의 기후가 없는 관계로 대부분의 가축이 방목으로 키워지고 있다는 점이다.

뉴질랜드 보유 가축 숫자

(단위: 마리)

종류	숫자
양 (Sheep)	31,147,300
젖소 (Dairy Cattle)	6,175,100
육우 (Beef Cattle)	3,882,500
사슴 (Deer)	1,064,500
돼지 (Pigs)	335,114 (예상치)
합계	42,604,514

자료원: 뉴질랜드 통계청(2011년 6월 기준)

이들 가축들이 만들어 내는 수출도 막대한 규모로 뉴질랜드 전체 수출에서 약 40%에 달할 정도이다. 수출 1위 품목인 유제품(분유, 버터, 치즈)의 수출 비중은 전체에서 약 22.5%를 차지하고 있고, 2위 품목인 육류(내장 포함)의 수출 비중도 전체에서 11.89%를 차지하고 있다. 이 밖에도 양모를 비롯해 가축과 관련된 각종 제품의 수출을 합할 경우 수출금액이 전체에서 40%를 넘고 있다.

뉴질랜드의 주요 농업 제품 수출 실적

(단위: US\$ 백만)

구분	2009	2010	2011
낙농품, 계란, 꿀 등	5,100	7,542	9,454
육류	3,157	3,655	4,355
목재	1,485	2,131	2,531
과일, 너츠	996	1,047	1,279
음료	771	950	1,079
어류 및 해산물	796	943	1,077
양모류	402	532	721
펄프 등	389	494	535
기타 식품	405	442	526

자료: World Trade Atlas

이처럼 뉴질랜드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1차 상품의 높은 비중 때문에 이들 상품의 국제가격 변동에 따라 뉴질랜드 전체 수출이 크게 영향 받는 문제점이 노출되기도 한다.

한편, 2011년과 2012년에 걸쳐 뉴질랜드 전역에 걸쳐 유례없이 많은 비가 내리면서 목축업의 이익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흥미로운 전망도 나왔다. BNZ (Bank of New Zealand)의 경제학자 Doug Steel은 2011년과 2012년에 걸쳐 내린 많은 비로 뉴질랜드 목축업이 당초 성장을 예상치었던 3~5%의 두 배에 달하는 7~10%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는 등 1억 뉴질랜드 달러 이상의 경제적 효과를 보고 있다고 분석했다.

2011년 12월의 경우, 넬슨, 로토루아, 해밀턴, 웰링턴 등 많은 도시들이 사상 최대의 월간 강우량을 기록했고, 오클랜드 역시 192mm가 내려 사상 세번째의 강우량을 기록했다. 뉴질랜드의 12월은 여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달로 보통은 맑고 화창한 날씨가 이어져왔다.

다. 임업

뉴질랜드는 국토의 약 30%(810만Ha)가 광활한 산림 지역으로 임산자원이 풍부하고 이 중 640만Ha는 천연림, 170만Ha는 조림지로 전체 목재의 95% 가량이 조림지에서 생산된다. 2008년 한국이 뉴질랜드 최대의 원목 수입국이었던 적이 있으나 그 후 중국 등이 수입량을 늘리면서 2011년의 경우 한국이 4위 수입국가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이 가장 많은 원목을 수입하고 있는 나라가 뉴질랜드이며, 한국이 뉴질랜드로부터 가장 많이 수입하고 있는 품목 1위 역시 원목이다. 2011년 기준으로 원목이 우리나라의 전체 뉴질랜드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2.5%에 이르고 있다.

2011년 뉴질랜드의 주요 목재 수출국

(단위: US\$ 백만, %)

순위	국가	수출금액	비중
1위	중국	933	36.8
2위	일본	367	14.5
3위	호주	312	12.3
4위	한국	289	11.4
5위	인도	165	6.5
	전체국가 합계	2,531	100

자료: World Trade Atlas

라. 관광업

청정국가의 이미지를 가진 뉴질랜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산업 중의 하나가 관광이다. 뉴질랜드는 아름다운 경관과 자연 환경, 다양한 야외 스포츠를 가진 나라로 매년 250만명 이상의 외국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다. 2011년 뉴질랜드를 찾은 관광객은 모두 260만명이었는데 이는 전년도에 비해 86,493명이 늘어난 수치다. 이 중에서 호주 관광객이 115만명으로 전체의 44.5%를 차지하며, 그 다음으로는 영국, 미국, 중국, 일본 순으로 뉴질랜드를 찾고 있다. 2011년 한국인 관광객은 2010년의 62,552명에서 줄어든 52,787명을 기록했다.

2011년은 뉴질랜드 관광업에 희비가 공존했던 해이다. 2011년 2월 발생해서 185명이 사망한 크라이스트처치 지진은 뉴질랜드 관광산업에 치명적인 타격을 가했고 이로 인해 수많은 관광객들이 뉴질랜드 방문을 취소하기도 했다. 하지만 2011년 9월 9일부터 10월 23일까지 45일간 뉴질랜드 12개 지역에서 개최된 제 7회 럭비월드컵은 침체된 관광산업에 활기를 불어 넣는 기폭제가 되었다. 행사 기간 중 뉴질랜드를 방문한 외국인은 13만3천명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국가/지역별 방문객 현황

(단위: 명, %)

순위	2010			2011		
	국 가	방문객	비중	국가	방문객	비중
1	호주	1,120,649	45.0	호주	1,156,426	44.5
2	영국	244,993	9.7	영국	230,316	8.9
3	미국	192,534	7.6	미국	184,714	7.1
4	중국	114,258	4.5	중국	145,524	5.6
5	일본	88,631	3.5	일본	68,963	2.7
6	독일	88,631	2.5	독일	63,719	2.4
7	한국	62,552	2.4	한국	52,787	2.0
8	캐나다	48,443	1.9	캐나다	49,154	1.9
9	싱가포르	30,579	1.2	싱가포르	38,680	1.5
10	인도	27,842	1.1	프랑스	36,607	1.4
	총 계*	2,514,951	100	총계*	2,601,444	100

주: 총계는 기타 국가 포함 2011년 총 방문객 숫자임

자료: 뉴질랜드 통계청

마. 에너지 산업

뉴질랜드는 석유를 제외한 나머지 에너지는 자급자족이 가능하며 전체 에너지 자급률은 70%에 달한다. 가장 주된 에너지원은 수력으로 지형 구조상 낙차가 크고 유속이 빠른 남섬에 수력발전소가 집중되어 있는데 남섬에 80여 개의 댐이 있다. 북섬에는 중부 지역의 타우포와 와이카토 강에 수력발전소가 편중되어 있다.

가장 큰 수력 발전소는 남섬의 MANAPOURI 발전소로 600MW 급으로 연간 38억 8,700만KW의 전력을 생산한다. 남섬에서 생산된 전력은 해저 케이블을 이용하여 수요가 많은 북 섬으로 공급된다. 화력발전소는 9개 지역에 45개소가 가동 중이나 점차 쇠퇴 일로에 있다.

지열발전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전력 수요의 약 13.5%를 충당하고 있다. 지열 발전소는 북섬 중부 지역의 타우포, 로토루아 지역에 위치하며 가정용 전력으로 사용되는데 1958년 건설된 와이라케이 발전소와 1989년 건설된 OKAIE 발전소가 있다.

전체 전력에서 약 4.5%를 생산하는 풍력의 경우는 최근 관련 기자재들이 중국에서 낮은 비용으로 생산되기 시작하면서 향후 20년 내에 전체 발전량에서 약 20%를 차지할 정도로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관련 업계는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태양광발전의 경우는 하루 생산량이 4 - 5 MW에 불과하여 통계에 잡히지 않을 정도로 미미하다. 태양광이 발전하지 못한 주된 원인은 정부의 보조금이 없기 때문인데

일부 뉴질랜드 기업들은 보조금이 있는 미국에서 태양광발전소를 건설하기도 했고, 통가에 발전소를 건설할 계획을 세우고 있기도 하다.

그런데 최근 뉴질랜드 태양광 발전시장이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이는 전세계적으로 태양 전지판의 가격이 크게 떨어진 때문으로 분석되는데, 특히 일반가정에서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전력 생산현황

(단위: GWh)

		2011			
		1 분기	2 분기	3 분기	4 분기
재생 에너지	수력	6,157	6,504	6,238	5,932
	지열	1,401	1,471	1,475	1,423
	바이오가스	54	54	54	54
	목재	83	95	85	88
	풍력	431	483	544	472
	소계	8,126	8,607	8,396	7,969
화력	석유	0	0	0	1
	석탄	342	397	670	616
	가스	1,674	1,850	2,632	1,799
	폐열	15	15	15	15
	소계	2,031	2,262	3,317	2,431
총계		10,156	10,868	11,713	10,400
재생에너지 비율		80%	79%	72%	77%

자료: 경제개발부

이 밖에도 원유는 북섬 남서부 해안 돌출부에 소재한 타라나키에서 일부가 생산되고 있고, 남한의 2.7배에 달하는 국토를 보유하고 있지만 광물자원은 풍부하지 않은 편으로 금, 철 성분의 모래, 점토, 골재 등이 일부 채굴되는 정도이다. 석탄은 채굴 가능 매장량이 86억 톤으로 최대 동력 자원이며 30%가 남섬 지역에 매장되어 있다. 석유 고갈에 대비해 대체에너지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한 바 있으나 경제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뉴질랜드는 환경보존에 매우 민감하여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도가 매우 높다. 뉴질랜드 정부는 2011년 말 현재 전체 전력 중 77%를 얻고 있는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을 2025년에는 90%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특히 태양열, 바이오에너지, 조력, 파력 등의 개발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정책적으로 핵발전소는 보유하지 않고 있고 보유 계획도 없는 상태이다.

뉴질랜드 정부의 에너지 정책은 ‘뉴질랜드 에너지 정책(New Zealand Energy Strategy 2011-2021)’과 ‘뉴질랜드 에너지 효율 및 보존정책(New Zealand Energy Efficiency and Conservation Strategy 2011-2016)’에 잘 나타나 있다. 이 정책들은 신재생에너지의 개발 및 생산, 온실가스 배출 감소와 각 분야의 에너지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들을 개발하고 시행하는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에너지 효율적 교통시스템 구축, 주택에서의 에너지 효율 제고, 에너지 고효율 제품의 보편화, 공공부문에서의 에너지 효율 제고 등을 추구하는 내용이다.

바. 정보통신 산업

뉴질랜드의 정보통신 산업은 초고속인터넷 구축과 함께 큰 발전을 이룰 것으로 기대된다. 뉴질랜드 정부는 2011년 상반기에 초고속인터넷 구축사업을 위한 업체 선정 절차를 마무리 지었으며, 2011년 8월부터 업체별로 공사가 시작되었다.

뉴질랜드 전역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이번 공사는 2020년까지 진행될 예정이지만 병원, 기업, 학교 등에는 늦어도 2015년까지 초고속인터넷 설치를 완료한다는 방침이어서 지역에 따라서는 훨씬 빨리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설치가 완료되면 뉴질랜드 인터넷 이용자의 75%가 초당 100MB의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데 이는 2011년 현재의 뉴질랜드 평균 인터넷 속도 보다 20배 이상 빠른 수준이다.

이처럼 뉴질랜드가 조만간 초고속인터넷 시대를 맞게 됨에 따라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의 수요도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뉴질랜드 정부는 초고속인터넷이 기업의 생산성을 높여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고화질의 화상회의, 온라인 직원교육 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가정에서는 온라인 TV의 활성화로 쇼프로, 영화, 다큐멘터리 등에 대한 접근이 용이해지고, 교육분야에서는 인터넷 학습, 화상교육 등을 통해 교육여건이 부족한 지역의 학교 교육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의료 분야 역시 큰 기대를 걸고 있는데 MRI와 같은 고용량의 의료문서가 우편이 아닌 이메일로 전송할 수 있어지면서 의사들이 더욱 편리하게 환자들을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텔레헬스기술(Tele-Health Technologies)의 활성화로 의사들이 환자들을 원격 검사 및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사. 건설업

오랜 침체를 겪고 있는 뉴질랜드 건설업은 크라이스트처치 지진 복구와 주택 부족현상을 겪고 있는 오클랜드 인근의 건설경기에 힘입어 활기를 찾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지진으로 금이 가거나 물이 새는 주택과 학교 등에 대한 보수작업 역시 건설경기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2007년 124억 뉴질랜드 달러를 기록하며 정점에 이르렀던 연간 건축허가 금액이 2011년에는 89억 달러까지 떨어졌지만, 2012년을 전환점으로 상승세로 전환되면서 2016년에는 100억 달러를 회복할 것이며, 지진 복구작업이 대거 추진된다면 100억 달러를 훨씬 상회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다만, 뉴질랜드 건설시장은 Fletcher 등 몇몇 현지 기업들이 독과점 형태로 장악하고 있는 시장이어서 외국 기업의 진출은 매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이에 따라 건축자재를 중심으로 한 진출이 우선 시도 되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3. 지역무역협정 체결현황

가. 개관

뉴질랜드는 2012년 기준으로 모두 14개국과 FTA에 준하는 무역협정을 발효시켜 놓은 상태다. 1983년 호주와의 협정을 시작으로 가장 최근에는 2012년 1월부터 인도네시아와의 FTA에 발효되었다.

또한 걸프지역 6개국(GCC회원국)과는 FTA를 타결한 상태며, 한국, 미국, 페루, 인도, 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등 7개국과는 협상을 진행 중이고, 일본과는 협상 가능성을 타진 중에 있다.

이처럼 뉴질랜드가 FTA를 교역확대에 적극 활용하면서 전체 교역에서 FTA 체결국과의 역내교역이 차지하는 비중도 약 46%에 이르고 있다. 또한 협상이 타결된 GCC 회원국과의 FTA가 발효되면 그 비중이 50%를 웃돌 전망이며, 협상이 진행 중인 FTA들이 모두 발효되면 역내교역 비중이 70%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뉴질랜드가 이처럼 적극적으로 FTA를 추진하는 이유는 교역 상대국의 관세장벽을 낮춰 주력 수출품목인 원자재, 농축산물의 수출을 확대하고, 상대적으로 열세에 있는 제조기반 품목들의 수입가 하락을 통해 물가안정을 도모하려는 의도인 것으로 보인다.

나. 뉴질랜드의 무역협정 추진 현황

체결국가	협정종류	발효연도
호주	CER	1983
싱가포르	CEP	2001
태국	CEP	2005
브루나이	TPP P4	2006
칠레	TPP P4	2006
중국	FTA	2008
말레이시아	아세안-호주-뉴질랜드 FTA	2010
미얀마	아세안-호주-뉴질랜드 FTA	2010
필리핀	아세안-호주-뉴질랜드 FTA	2010
베트남	아세안-호주-뉴질랜드 FTA	2010
라오스	아세안-호주-뉴질랜드 FTA	2011
캄보디아	아세안-호주-뉴질랜드 FTA	2011
홍콩	FTA	2011
인도네시아	아세안-호주-뉴질랜드 FTA	2012

자료원: 뉴질랜드 외교통상부, 2012년 3월 현재

III. 무역

1. 수출입동향

가. 수출

뉴질랜드의 2011년도 수출은 US\$377.1억으로 전년대비 20.0% 증가했다. 1위 수출시장인 호주로는 18.8%가 증가했고, 2위를 차지한 중국으로의 수출은 전년 대비 무려 32.6%가 증가한 86억불을 기록했다. 이러한 중국으로의 수출증대는 2009년 10월부터 발효된 뉴-중 FTA가 크게 작용한 때문으로 분석된다. 한국은 2010년 6위 수출대상국에서 2011년에는 5위로 순위가 한 단계 상승했다.

2010년과 마찬가지로 2011년의 경우도 주요 1차 상품의 국제가격이 높게 형성되면서 1차 상품이 많은 뉴질랜드의 교역조건(TOT)이 유리해져서 뉴질랜드 수출금액이 함께 증가하는 현상을 보였다.

뉴질랜드의 주요 수출대상국

(단위: US\$ 백만, %)

순위	구분	2009 수출액	2010 수출액	2011	
				수출액	비중
	총계	24,977	31,418	37,713	100
1	Australia	5,830	7,240	8,602	23.0
2	China	2,289	3,492	4,633	11.1
3	United States	2,439	2,706	3,157	8.6
4	Japan	1,772	2,430	2,725	7.7
5	Korea, South	785	1,019	1,323	3.2
6	United Kingdom	1,049	1,099	1,217	3.5
7	India	395	652	744	2.0
8	Taiwan	477	607	709	1.9
9	Malaysia	444	560	690	1.7
10	Indonesia	599	670	678	2.1

자료: World Trade Atlas

수출품목 1위는 낙농품으로 전체에서 25%를 차지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는 육류, 목재, 광물, 기계류 등이 차지하고 있다.

뉴질랜드의 주요 수출품목

(단위: US\$ 백만, %)

HS 코드	구분	2009	2010	2011	
				수출액	비중
	총 수출	24,977	31,418	37,713	100
04	Dairy, Eggs, Honey, Etc	5,100	7,542	9,454	25.0
02	Meat	3,157	3,655	4,355	11.5
44	Wood	1,485	2,131	2,531	6.7
27	Mineral Fuel, Oil Etc	1,232	1,490	2,001	5.3
84	Machinery	1,054	1,244	1,452	3.8
98	Special Other	863	1,182	1,409	3.7
08	Edible Fruit And Nuts	996	1,048	1,279	3.3
22	Beverages	771	950	1,079	2.8
03	Fish And Seafood	797	943	1,077	2.8

자료: World Trade Atlas

나. 수입

뉴질랜드의 2011년도 수입은 US\$371억으로 전년대비 21.0% 증가했는데, 가장 큰 특징은 중국이 처음으로 호주를 제치고 1위 수입대상국으로 부상했다는 것이다. 특히 호주는 전년대비 5.2% 증가에 그친 반면,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은 전년 대비 20.4%가 증가하여 앞으로 중국이 1위 자리를 굳히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한국은 전년과 마찬가지로 8위를 차지했다.

뉴질랜드의 주요 수입대상국

(단위: US\$ 백만, %)

순위	구분	2009	2010	2010	
				금액	비중
	총계	25,621	30,642	37,106	15.9
1	China	3,869	4,898	5,901	15.7
2	Australia	4,741	5,558	5,849	10.6
3	United States	2,766	3,187	3,961	6.2
4	Japan	1,871	2,244	2,312	4.6
5	Singapore	1,028	1,178	1,710	4.2
6	Germany	1,070	1,257	1,581	3.1
7	Malaysia	699	1,098	1,169	3.1
8	Korea, South	862	1,002	1,151	2.8
9	Thailand	680	990	1,051	2.7
10	United Kingdom	600	690	1,010	2.6

자료: World Trade Atlas

가장 큰 수입품목은 휘발유, 석유 등으로 이는 석유정제시설이 부족한데 기인한다. 그 다음으로는 기계류, 자동차, 플라스틱 등으로 국내 제조 기반이 약해 대부분의 공산품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뉴질랜드의 주요 수입품목

(단위: US\$ 백만, %)

HS 코드	구분	2009	2010	2011	
				수출액	비중
	총 수출	25621	30642	37106	100
27	Mineral Fuel, Oil etc.	3737	4679	6391	17.2
84	Machinery	3174	3758	4483	12.0
87	Vehicles, Not Railway	2076	3088	3456	9.3
85	Electrical Machinery	2520	2631	3183	8.5
39	Plastic	952	1165	1313	3.5
88	Aircraft, spacecraft	983	578	1209	3.2
90	Optic, Med Instruments	867	958	1076	2.9
30	Pharmaceutical Products	739	819	885	2.3
48	Paper, Paperboard	606	718	815	2.2

자료: World Trade Atlas

2. 한국과의 교역동향 및 특징

가. 개관

2011년 통계 기준으로 뉴질랜드는 한국의 53위 수출대상국이자 37위의 수입대상국이다.

2011년 한국의 대뉴 수출은 사상 최초로 10억불을 돌파하여 11억불을 기록했다. 이는 1987년 1억불을 돌파한 후 24년만으로 향후 수출 증가세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수입은 14억7천만불을 기록해서 3억7천만불의 무역적자를 기록했다. 수출입 모두 전년대비 20%가 넘는 증가세를 기록, 양호한 증가세를 보였다.

한국의 대뉴 수출은 자동차, 전자제품 등 공산품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 수입은 원목, 낙농품 등 1차상품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한국의 대뉴질랜드 수출입 실적

(단위: US\$ 천불, %)

구분	2008	2009	2010	2011
대뉴 수출 (증감율)	824,785 (18.0)	890,761 (8.0)	918,464 (3.1)	1,103,857 (20.2)
대뉴 수입 (증감율)	1,121,669 (-4.2)	879,361 (-21.6)	1,175,909 (33.7)	1,474,469 (25.4)
무역수지	-296,884	11,399	-257,445	-370,612

자료: 한국무역통계

나. 수출

2011년 대뉴 수출은 20.2%가 증가하면서 사상 최초로 10억불을 돌파, 11억불을 달성했다. 수출 1위 품목은 승용차가 차지했는데, 현대차와 기아차의 현지시장 점유율을 2011년에 13.2%를 차지했다. 경유, 휘발유, 철도차량이 그 뒤를 이었고, 건설중장비, 칼라TV, 변압기 등의 수출이 호조를 보였다.

한국의 대뉴질랜드 주요 수출품목

(단위: US\$ 천불, %)

순위	품목명	2010		2011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총계	918,464	3.1	1,103,835	20.2
1	승용차	159,196	46.0	191,243	20.1
2	경유	111,207	-21.7	169,903	52.8
3	휘발유	132,693	-8.8	95,749	-27.8
4	철도차량	20,797	-	65,551	215.2
5	기타어류	36,568	-5.5	44,174	20.8
6	건설중장비	26,584	30.5	42,358	59.3
7	오징어	27,074	123.3	38,165	41.0
8	합성수지	29,885	19.5	33,287	11.4
9	기타석유화학제품	25,597	39.2	24,257	-5.2
10	석도강판	19,161	65.4	23,812	24.3
11	무선전화기	18,175	-49.0	21,966	20.9

12	타이어	19,173	7.8	21,135	10.2
13	인쇄용지	21,700	29.1	21,108	-2.7
14	축전지	15,789	18.2	20,677	31.0
15	전선	16,419	1,835.9	18,750	14.2
16	칼라 TV	10,580	35.3	17,336	63.9
17	화물자동차	12,053	111.7	11,172	-7.3
18	기타정밀화학원료	7,661	25.7	9,462	23.5
19	기타플라스틱제품	8,091	26.5	9,117	12.7
20	아연도강판	12,946	30.5	8,491	-34.4
21	대구	6,012	-61.3	8,255	37.3
22	기타석유제품	4,095	62.9	7,456	82.1
23	동조가공품	7,794	220.0	7,290	-6.5
24	기타철강금속제품	5,243	33.1	7,223	37.8
25	변압기	323	-8.4	6,646	1,960.0
26	폴리에스테르섬유	2,933	15.6	6,595	124.8
27	커피류	3,870	19.8	6,280	62.3
28	필름류	3,563	9.1	5,612	57.5
29	냉장고	4,938	55.4	5,232	6.0
30	모사	6,139	204.4	4,979	-18.9

자료원: KITA 한국무역통계

주: 품목은 MTI 4 단위 분류, 순위는 2011 년 실적 기준

다. 수입

2010년과 2011년 對紐 수입액은 각각 33.7%와 25.4%가 증가했는데, 이는 주력 수입품목인 1차상품의 국제가격이 높게 형성된 것에도 큰 원인이 있다. 1위 수입품목은 원목이 차지했고, 낙농품, 가축육류가 그 뒤를 이었다.

한국의 對紐질랜드 주요 수입품목

(단위: US\$ 천불, %)

순위	품목명	2010		2011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총계	1,175,909	33.7	1,474,143	25.4
1	원목	312,190	27.5	332,149	6.4
2	낙농품	144,153	53.5	225,356	56.3
3	가축육류	122,515	34.4	160,401	30.9
4	기타석유화학제품	120,638	96.9	119,768	-0.7
5	알루미늄괴및스크랩	75,425	38.7	109,963	45.8
6	펄프	64,255	47.6	80,217	24.8
7	과실류	51,542	5.6	69,396	34.6
8	단백질류	25,673	36.9	37,539	46.2
9	제재목	23,402	68.0	36,040	54.0
10	고철	22,394	23.9	32,771	46.3
11	변환및안정기	3,829	265270.2	17,777	364.2
12	골판지원지	10,542	55.0	15,895	50.8
13	나프타	20,806	35.1	15,440	-25.8
14	채소류	12,529	16.8	15,320	22.3
15	기타수산물가공품	10,270	-7.1	14,940	45.5
16	양가죽	12,289	-0.6	13,699	11.5
17	꿀및로알제리	9,765	7.0	11,971	22.6

18	기타육류	10,907	31.4	11,856	8.7
19	단판	12,605	14.8	11,699	-7.2
20	동물성한약재	10,905	27.2	10,994	0.8
21	동괴및스크랩	2,085	231.2	10,735	414.8
22	열연강판	7,159	-31.1	7,818	9.2
23	폐건전지	3,808	-2.8	6,539	71.7
24	육류가공품	4,457	11.1	6,056	35.9
25	주류	4,643	-7.3	5,753	23.9
26	기타정밀화학원료	2,035	130.7	5,675	178.9
27	연괴및스크랩	4,532	27.5	5,372	18.5
28	의약품	5,104	109.0	4,648	-8.9
29	소스류	2,966	30.5	4,054	36.7
30	기타산업기계	32	-35.7	3,980	12245.4

자료원: KITA 한국무역통계

주: 품목은 MTI 4 단위 분류, 순위는 2011 년 실적 기준

3. 수입규제제도

가. 수입 규제 동향 및 특징

뉴질랜드는 제조업이 매우 취약하여 공산품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자유무역을 지향하고 있으며, 수입관세를 철폐하거나 인하해온 까닭에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낮은 관세율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자국에서 생산되는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국내 산업 보호와 고용 유지를 위해 수입품에 대해 반덤핑, 상계 관세를 부과하는 등 규제를 하고 있다. 준거 법률은 The Dumping and Countervailing Duties Act 1988 및 The Temporary Safeguard Authorities Act 1987 등이 있다.

2000년대 초 뉴질랜드는 한국산 냉장고, 세탁기, 오일필터 등에 대해 수입규제 조치를 취하기도 하였으나 현재는 한국 상품에 대해 취해지고 있는 수입규제조치는 없는 상황이다.

나. 2012년도 수입 규제 전망

무역 자유화를 통해 자국의 이익이 크다는 점에서 수입 규제가 특별히 강화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또한 우리나라의 對 뉴질랜드 수출이 자동차, 전자제품, 석유연료 등으로 자국 산업 및 기업과 이해 대립이 적기 때문에 우리 상품에 대한 수입 규제 가능성은 낮다.

특히 과거 우리나라 냉장고, 세탁기 등에 대한 덤핑제재를 초래했던 현지 유일의 백색가전 제품 제조공장이 중국, 태국 등지로 공장을 이전함으로써 우리나라 전자제품에 대한 수입 규제 가능성은 더욱 낮아진 상태이다.

다. 수입 규제 현황

1) 수입 규제 부과(조사) 현황(2001년 이후)

품 목	국 가	유 형	관 세	판정일
Preserved Peaches	Spain	Dumping Investigation	Current	2011.08.03
Wire Nails	China	Dumping Investigation	Current	2011.06.02
Canned peaches	South Africa	Dumping Reassessment	Current	2010.02.09
Reinforcing Steel Bar and Coil	Thailand	Dumping Review	Current	2009.08.28
Reinforcing Steel Bar and Coil	Thailand	Dumping Reassessment	Current	2009.11.17
Canned Peaches	Greece	Dumping Reassessment	Current	2009.11.18
Galvanised Wire	Malaysia	Dumping Review	Current	2009.10.20
Galvanised Wire	Malaysia	Dumping Reassessment	Current	2009.11.17
Canned Peaches	European Union	Subsidy Review	Terminated (2009-07-03)	2009.07.03
Canned Peaches	Greece	Dumping Review	Current	2009.07.03
Hog Bristle Paintbrushes	China	Dumping Reassessment	Current	2009.03.16
Galvanised Wire	South Africa	Dumping Reassessment	Current	2008.08.18
Canned Peaches	South Africa	Dumping Reassessment	Current	2008.02.11
Diaries	China, Hong Kong, Indonesia, Malaysia	Dumping	Imposed on goods from Malaysia and China	2007.10.08

	Korea			
Certain Bound Stationery	Malaysia	Dumping	Imposed on goods from Malaysia	2007.09.12
Oil Filter *	Indonesia	Dumping Reassessment	Current(부과)	2006.04.29
Galvanised Wire	Malaysia	Dumping Reassessment	Current	2005.11.15
Oral Liquid Paracetamol	Ireland	Dumping	Decision Pending	2005.03.30
Oil Filters	Korea, China, Indonesia, Thailand	Dumping	Current	2005.01.14
Galvanised Wire	Malaysia	Dumping	Imposed on Malaysia	2004.04.27
Reinforcing Steel Bar	Malaysia, Thailand	Dumping	Current	2004.03.25
Canned Peaches	Greece, EU	Dumping Reassessment	Current	2003.12.15
Portland Cement	Thailand	Dumping	Not Imposed	2003.11.30
Canned Peaches	Greece	Dumping	Current	2003.07.14
Canned Peaches	EU	Subsidy Review	Current	2003.07.14
Hog Bristle Painbrushes	China	Dumping Reassessment	Current	2003.07.14
Glass Wool Insulation	Taiwan	Dumping	Not Imposed	2003.04.24
Hog Bristle Paintbrushes	China	Dumping Review	Current	2003.04.23
Galvanised Wire	South Africa	Dumping	Current	2002.12.21
Plasterboard	Thailand	Dumping Reassessment	Current	2002.12.04
Canned Peaches	South Africa	Dumping Reassessment	Current	2002.06.11
Hollow Gold Jewellery	Italy	Dumping	Not Imposed	2001.07.22
Washing Machine	Korea	Dumping	종료	2001.06.10
Refrigerator-Freezer	Korea	Dumping	종료	2001.06.10
Tamoxifen Citrate	UK	Dumping	Not Imposed	2001.02.21

주: *표의 오일필터 규제는 현지 제조업체가 생산을 중단하면서 사실상 무의미하게 되었음.

자료: Ministry of Economic Development

2) 현재 조사 진행 중인 건수(2012년 3월 기준)

품 목	국 가	유 형	개 시 일
Preserved Peaches	People's Republic of China	Review Investigation	2011.07.07
Preserved Tomatoes	Italy	Dumping	2011.09.19
Plasterboard	Thailand	Review	2011.09.05

자료: Ministry of Economic Development

라. 수입 쿼터제

뉴질랜드는 교역 자유화를 주창하고 있어 수입 쿼터 제도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

4. 대한수입규제 동향

공산품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분쟁 사례는 많지 않으나 아래와 같이 우리 제품의 수입을 규제한 경우가 있었다. 그러나 현재는 한국산 제품에 적용되는 수입 규제는 없다.

1) 수입 규제 사례/ 자동차용 배터리(HS: 8507.10) 반덤핑 규제

- 규제 기간: 1991년 12월 ~ 2000년 2월
- 관련 기업: GNB Technologies (GNB) Century Batteries (NZ) Ltd
- 대상 국가: 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대만
- 우리 기업: Delkor Corp., Global & Yuasa Battery, Korea Storage Battery
- 조치 경과
 - 1991년 4월 반덤핑 혐의로 피소
 - 1991년 6월 덤핑 조사 착수
 - 1991년 9월 예비 덤핑(40% 덤핑 마진율)
 - 1991년 12월 덤핑 최종 판정(47~48% 덤핑 마진율)
 - 1994년 6월 반덤핑 세율 최고 20%로 하향 조정
 - 1999년 6월 재검토
 - 1999년 8월 반덤핑 관세 12~18% 부과
 - 2008.9월 기준 규제 기간 만료로 반덤핑 규제는 종료됨.

2) 수입 규제 사례/ 연마용 디스크(HS: 6804.22) 반덤핑 규제

- 규제 기간: 1995. 10 ~ 2000. 10. 16
- 관련 기업: Abrasives Manufacturing Ltd
- 규제 대상국: 한국, 대만
- 규제 대상 한국 기업: Dongbo Grinding Wheel Co., Dongil Industries Co., Ltd
- 조치 경과
 - 1995.1월 피 제소
 - 1995.4월 반덤핑 조사 착수
 - 1995.7월 반덤핑 잠정 관세 부과
 - 1995.10월 반덤핑 최종 판정(덤핑 관세 12~16%)
 - 2000.10.17일 해제

3) 수입 규제 사례/ 냉장고(HS: 841810/21) 반덤핑 규제

- 규제 기간: 2001. 6. 10부터 5년간
- 관련 기업: Fisher & Paykel
- 규제 대상국: 한국
- 규제 대상 우리 기업: 삼성, LG, 대우 등
- 조치 경과
 - 2000.11월 피 제소
 - 2000.12월 반덤핑 조사 착수
 - 2001.3월 덤핑 예비 판정
 - 2001.3월 반덤핑 잠정 관세 부과(25% - 71%)
 - 2001.6월 최종 판정(32%-55%)

- 2006.6.11 해제

4) 수입규제사례/ 세탁기(HS: 845011) 반덤핑 규제

- 규제 기간: 2001. 6.10부터 5년간
- 관련 기업: Fisher & Pakel
- 규제 대상국: 한국
- 규제 대상 우리 기업: 삼성, 엘지, 대우 등
- 조치 경과
 - 2000.11월 피 제소
 - 2000.12월 반덤핑 조사 착수
 - 2001. 4월 덤핑 예비 판정
 - 2001. 4월 반덤핑 잠정 관세 부과(52% - 93%)
 - 2001. 6월 최종 판정(52%-93%)
 - 2006.6.11 해제

5) 수입 규제 사례/ 오일필터 반덤핑 규제

- 조사 개시일: 2004.7.20
- 잠정 판정: 2004.10.28
- 조사 종료일: 2005.1.14
- 규제 기간: 2005.1.14 ~ 2010.1.14
- 2006년 12월 뉴질랜드 오일필터 생산 공장의 폐쇄로 규제 사유가 없어져 해제

6) 수입 규제 사례/ 다이어리 반덤핑 규제

- 조사 개시일: 2007.3월
- 판정: 2007.8월
- WTO 반덤핑 협약 제5.8항(미소 물량 수입에 대한 조사 종료)에 의거하여 한국, 홍콩, 인도네시아산에 대한 반덤핑 조사 결과 반덤핑제소 취소

5. 관세제도

가. 대부분 공산품은 무관세

뉴질랜드는 농업, 임업 및 목축업이 주요 산업이며 목재, 소고기 및 낙농제품이 주요 수출 품목이다. 이들 1차 산업은 정부 보조 없이도 경쟁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자유무역을 지향하며, 농산물 및 서비스 등 전 부분의 교역 자유화를 주창한다. 이에 따라 마약류, 무기류, 동식물 같은 수입 금지 품목 등을 제외하면 수입이 자유롭다. 또한 자국에서 생산되지 않는 대부분 품목에 대해서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무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단, 일부 품목에 대해 상대적으로 5-10%대에 이르는 고율관세가 부과되기도 하나, 이 경우에도 WTO 권고에 따라 점진적인 인하를 단행 중이다.

나. 협정 체결에 따른 특혜관세

자유무역협정 체결 국가인 호주,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 칠레, 중국 등과 관세협정 체결국인 캐나다에 대해서는 무관세 혹은 저율 관세가 부과되며 이외의 국가에게는 일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세율 자체가 낮거나 무관세 적용 품목이 많아서 협정 체결에 따른 관세 혜택은 상대적으로 미미하다.

한편 저개발국 및 태평양 연안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제품에 대해서도 무관세 혜택을 부여하며 개도국에 대해서는 특혜관세(GSP) 제도를 통해 일반 관세율보다 약간 낮은 관세를 부과한다. 우리나라는 줄곧 개도국으로 분류되어 특혜관세(GSP) 혜택을 받아 왔으나 2004년 11월부터 일반관세 부과 대상국으로 분류되어 소폭의 관세 수혜도 소멸되었다.

다. 관세율 확인 방법

뉴질랜드 관세와 관련된 사항은 관세청 사이트(www.customs.govt.nz)에서 파악할 수 있다. 동 관세청 웹사이트를 통한 세율 검색방법은 “웹 초기화면>Library>The Working Tariff Document” 순으로 접근하고, 해당품목 군 섹션을 찾은 후 HS Code를 검색하면 pdf파일로 검색이 가능하다. 동 pdf파일에서 특혜관세 표기는 AAN, CA, CN, TH, TPA 등의 기호가 나오는데, 각각 호-뉴-아세안 특혜세율, 캐나다 특혜세율, 중국 특혜세율, 태국 특혜세율, 태평양 도서국 특혜세율을 의미한다.

6. 주요인증제도

가. 개관

뉴질랜드 표준(Standard) 제도의 기본은 인체의 안전에 있으며, 공산품 전반에 걸친 표준에 대한 인증을 담당하는 기관은 소비자보호부(Ministry of Consumer Affairs) 산하의 뉴질랜드 표준원(Standards New Zealand)이다.

이 기관(www.standards.co.nz)을 접속하면, 관련 정보를 쉽게 입수할 수 있고 E-메일이나 전화로도 필요한 자료와 정보, 서식 등을 쉽게 입수할 수 있으며, 인증 절차나 기관 등에 대해서도 파악할 수 있다. 관련 법규로는 표준법(Standards Act 1988)이 있는데, 이 법은 뉴질랜드에서 표준 사용을 촉진하고 장려하여 제품의 품질 하자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이 외에 뉴질랜드는 품목별로 개별 법이나 규정에 의한 안전 표준을 요구한다. 일종의 Negative System으로 강제 규정인 경우가 아니면 준수하지 않아도 되는 임의 규정이 많아 품목별로 세부적인 사항들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뉴질랜드 표준을 신청하는 방법은 우선 뉴질랜드 표준원(Standards NZ)을 접속하여 신청하고자 하는 품목에 대한 표준 내용을 파악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유아용 유모차 표준을 입수하려면 이메일이나 전화로 신청이 가능하며 유료인 경우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뉴질랜드 표준 중에서 특이한 것은 S마크 제도로, 이를 획득하는 경우 제품에 S마크를 부착할 수 있다. 강제 규정은 아니나 소비자에게 제품에 대한 안전성을 입증함과 동시에 좋은 이미지를 제공하는 기반이 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뉴질랜드에서는 제품 하자로 인해 소비자에게 해를 끼친 경우, 제품의 표준 준수 입증 책임이 수입업체에게 있기 때문에 수입상이 인증확보 여부를 따지게 되며, 우리 수출업체로서도 진출 초기부터 S마크 획득이 요구된다. S마크는 품질검사 전담기관인 Bureau Veritas (New Zealand) Ltd에서 실시하며 일정한 수수료를 내면 자체적인 시험 검사를 거쳐 승인해주나 시험 절차는 제품에 따라 상이하다.

소비자 보호부(Ministry of Consumer Affairs)와 모범이 있기는 하지만 모든 공산품의 표준 취득 여부에 대해 일괄적으로 규정하는 법규 또는 규정이 없다는 점에서는 이러한 인증이 필요한 대상이 다소 모호하다. 그러나 식품, 의약품, 기계류, 전기 및 가스용품 등은 인체나 재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많기 때문에 인증을 받아야 하는 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이들 제품들도 호주와 유럽, 싱가포르, APEC 국가에서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뉴질랜드에서 인증 받은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뉴질랜드와 호주는 CER(Closer Economic Relation)이라는 공동경제협약이 체결되어 있어 품질규격인증문제를 공동으로 관리하고 있는 바, 뉴질랜드나 호주 양국 중 어느 한 나라에서 규격 인증을 받게 되면 양국 어느 곳에서건 같은 효력을 발휘한다.

나. 한국제품 주요인증제도

우리 제품의 해당 사항이 많은 대표적인 품목은 식품과 전기전자 제품, 가스용품, 기계류,

의약품 등인데 주요 분야별로 규제법규 및 규제기관 등은 다음과 같다. 식품안전에 대해서는 보건부(The Ministry of Health)가 관할하고 있으며 수입 식품의 안전에 대해서는 농림부(MAF:The Ministry of Agriculture and Forestry)가 담당한다.

식품안전에 대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HACCP 시스템(the international 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 (HACCP) food safety system.)을 준수하도록 하며, HACCP 시스템은 강제 규정이 아닌 임의 규정이지만 이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보건부의 정기 식품 안전검사를 면제해 주고 있다. 전기전자 및 가스용품은 호주나 유럽의 인증을 보유하고 있으면 뉴질랜드에서도 인증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경우가 많으나 뉴질랜드 표준원이나 소비자보호부를 접촉하는 것이 필요하다.

뉴질랜드는 95%이상의 주택이 목재로 건축되고 있다. 따라서 화재나 누수에 취약하기 때문에 건축자재에 대해서는 각별한 안전규격을 요구하고 있다. 건축자재에 대한 안전규격 관리는 비영리법인인 BRANZ Group이 관리하고 있는데 모든 건축자재가 BRANZ 규격승인의 대상은 아니다. 일부 자재는 BRANZ승인 없이도 통용되고 있는데 동 규격 승인을 득해야 하는지 여부는 수입상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계류, 크레인, 중장비 등은 이용자나 개인들에게 상해를 입힐 수 있기 때문에 노동부 산하 OSH(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가 제품 및 이용에 대한 안전을 규제하고 있다.

전자제품에 대해서는 호주, 뉴질랜드 공용 C-Tick 인증제도가 있다. C-Tick 인증제이란 호주전자파적 합성마크로 전자파장을 규격화한 마크이다. 호주 통신청(ACA: Australian Communications Authority)에서 주관하며, 적용규격에 따라 수준(level) 1,2,3으로 구분하여 각 수준에 해당되는 라벨을 부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약품 및 의료기기에 대해서는 의약품법(the Medicines Act 1981) 및 의약품 오남용방지법(the Misuse of drugs Act 1975) 등을 통해 규제하고 있다. 이 법은 의약품이 안전, 품질, 효능 등에서 수용할 만한 기준을 충족시키도록 강제하며, 의약품이 최종 소비자에게 전달될 때까지 제조, 저장, 유통과 관련된 사람, 장소, 관행 등이 이러한 기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한다.

아울러 의약품(medicines) 및 의료기기(medical devices)와 관련된 법의 집행은 뉴질랜드 보건부(Ministry of Health) 산하의 메드세이프(Medsafe)가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안전 표준을 인증 받지 않아도 다른 나라의 인증을 그대로 인정하는 경우도 있는데 호주를 비롯하여 유럽(EU), 싱가포르, APEC 회원국의 제품이 이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특정 품목이나 사항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해당되지 않는 품목과 자국의 개별법에서 요구하는 안전 표준도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뉴질랜드는 의료기기 수입에 대해 사전허가제를 채택하지 않고 등록제를 적용하고 있다. 즉, 수입상은 수입품 유통 30일전에 메드세이프의 WAND(Web Assisted Notification of Devices)에 등록하면 된다.

한편, 안전표준과 관련하여 뉴질랜드는 호주와 TTMRA(Trans-Tasman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라는 상호인증협정 (1998.5.1부 발효)을 체결하였고, EU와는 NZ/EU MRA (Mutual Recognition of Conformity Assessment)를, 싱가포르와는 CEP(Closer Economic Partnership)를, APEC 회원국과는 식품 및 전기전자 제품에 대해 상호인증협정을 체결한 바 있다.

다. 뉴질랜드 인증 기관 및 관련 부처

- Standards New Zealand
 - 주소: 155 The Terrace Private Bag 2439, Wellington
 - 전화: 64-4)498 5990, 팩스: 64-4)498 5994
 - Email: snz@standards.co.nz
 - Website: <http://www.standards.co.nz>
- Bureau Veritas (New Zealand) Ltd
 - 주소: 35 O'Roke Road Penrose PENROSE 1061
 - 전화: 64-9) 526-4546, 팩스: 64-9) 571-2285
 - Website: <http://www.bureauveritas.co.nz>
- Ministry of Health
 - 주소: Ministry of Health PO Box 5013, Wellington
 - 전화: 64-4) 496-2000, 팩스: 64-4) 496-2340
 - Email: Emailmoh@moh.govt.nz
 - Website: <http://www.health.govt.nz>
- Ministry of Agriculture and Forestry
 - 주소: 25 The Terrace, PO Box 2526, Wellington
 - 전화: 64-4) 894-0100, 팩스: 64-4) 894-0720
 - Email: info@maf.govt.nz
 - Website: <http://www.maf.govt.nz>
- Medsafe – New Zealand Medicines and Medical Devices Safety Authority
 - 주소: Level 6, Deloitte House, 10 Brandon Street, P O Box 5013, Wellington
 - 전화: 64-4) 819-6800, 팩스: 64-4) 819-6806
 - Email: becci_slyfield@moh.govt.nz
 - Website: <http://www.medsafe.govt.nz>
- BRANZ
 - 주소: Moonshine Rd., Judgeford, Porirua City
 - 전화: 64-4) 237-1170
 - 팩스: 64-4) 237-1171
 - Email: branz@branz.co.nz
 - Website: <http://www.branz.co.nz>

(자료: 뉴질랜드 표준원 www.standards.co.nz, S마크 신청 및 승인 기관 [www. bureau veritas. co.nz](http://www.bureauveritas.co.nz))

7. 지적재산권

가. 지적재산권 보호 제도

뉴질랜드에서 자신의 지적재산권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관련 기관인 뉴질랜드 지적재산권 등록소(Intellectual Property Office)에 등록을 해야 한다. 뉴질랜드에서 보호되는 지적재산권의 종류는 상표권(trade marks), 특허권(patents), 의장권(design) 등 3가지이며 관련 법률로는 저작권법(Copyright Act 1994)을 비롯하여 상표법(Trade Marks Act 2002) 및 공정거래법(Fair Trading Act 1986) 등이 있다.

저작권법(Copyright Act 1994) 및 상표법(Trade Marks Act 2002)에서는 재판을 통한 권리구제는 물론 제품의 반환 등에 대해서도 열거하고 있는데 지적재산권 침해 사범에 대해서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NZ\$ 15만(약 US\$ 10만)의 벌금 등을 규정하고 있다. 공정거래법(Fair Trading Act 1986)에서도 소비자 기만을 이유로 이들 침해에 대해 강력히 규제하는 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 외에도 도매 및 소매 부문에서부터 이러한 침해를 방지 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과 경찰의 단속이 이어지고 있으며, 특허 및 상표권과 의장권 침해를 당한 사람은 뉴질랜드 세관에 이들 제품의 반입 금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된다.

그러나, 뉴질랜드가 1998년부터 병행수입(Parallel Import)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상표권 등이 침해를 받는 경우가 있다. 뉴질랜드 정부의 Parallel Import 허용관련 사항은 뉴질랜드 경제개발부 레귤레이션(www.med.govt.nz > Regulation > Intellectual Property Policy > Parallel Importing in New Zealand)을 참고하면 된다.

나. 특허권, 상표권, 의장권

특허권은 1953년 제정되고 1982년 개정된 특허법에 따라 존속기간은 제출일로부터 16년(5년 또는 10년 연장 가능)이며 출원 공고는 3개월이다.

상표권은 1953년 제정되어 2002년 개정된 상표법에 따른 것으로 서비스 마크 제도를 도입하여 서비스 마크 등록을 허용하고 있다. 존속 기간은 출원일로부터 7년으로 선사용주의를 원칙으로 하며 5년 동안 상표권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선의의 제3자가 등록 상표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의장권은 1953년 제정되어 1980년에 개정된 바 있다. 심사주의를 원칙으로 하나 등록 표시를 요하지 않으며 출원일로부터 15년(5년씩 2회 연장 가능) 존속이 가능하다.

다. 관련기관 연락처

- IPONZ –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of New Zealand
 - 주소: PO Box 9241, Marion Square, Wellington 6141, 205 Victoria Street, Wellington
 - 전화: 64-3)962-2606
 - Email: info@iponz.govt.nz
 - Website: www.iponz.govt.nz

8. 통관 / 운송

가. 통관 제도

1) 엄격한 통관 및 검역 절차

뉴질랜드는 기생충 및 질병으로부터 국민경제의 주요 원천인 동식물 자원을 보호하고 자연환경을 보존하기 위해 엄격한 통관 및 검역 절차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부 동식물 제품 등에 대해서는 사전 수입허가제 실시 등 엄격한 통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질병 및 기생충에 예방차원에서 박멸 및 봉쇄 활동을 집중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시장 개방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수입 규제는 없으나 외국산 신선농산물의 경우 수입 검역 규정이 마련되어 있어야만 통관이 가능하다. 예를 들면, 한국산 과일 중 뉴질랜드 검역 기준(IHS: Import Health Standard)이 마련된 배(Pear)는 수입이 허용되나 검역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과일은 수입이 불가능하다.

여행자가 비행기를 통해 반입하는 물품 검사도 까다롭기는 마찬가지이다. 입국신고서에 사과와 같은 과일이나 식품류를 기재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NZ\$400(약 USD 300)의 벌금을 내야 한다.

2) 일반 통관 절차

수입업자는 상업송장 등 관세평가 및 세 번 분류에 필요한 기본적인 내용을 포함한 선적 서류를 세관에 제출하여 수입허가 및 관세 납부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원칙적으로 물품의 인출 이전에 관세, GST(2011년 9월 기준 15%) 및 특별 소비세(Excise Duty) 등을 완납하고 세관에서 발행하는 물품 인도증(Delivery Order)을 교부 받아야 물품을 반출할 수 있다.

모든 수입업자는 통관업자를 통하지 않는 경우에 반드시 세관 인터넷페이지(www.cusweb.co.nz) 또는 EDI를 이용하여 전자 문서로 반출 신청을 해야 하며 이때 추가로 송장, B/L, Packing List 등의 서류 등이 요구될 수 있다.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뉴질랜드로 수입되는 모든 물품은 GST라 불리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데 산정 기준 가격은 세관신고가격+관세+운송 및 보험료 포함 가격이다. 또한 수입되는 모든 물품은 NZ\$ 28.75의 IETF(Import Entry Transaction Fee)라 불리는 수입 통관 수수료가 부과되는데 여기에는 농림수산부에서 부과하는 NZ\$4의 검역 수수료가 포함되어 있다. 수입 통관서류 작성시 기입 사항은 뉴질랜드 세관이 발행하는 Fact Sheet 7 에서 자세히 살펴볼 수 있으며, 주요 사항으로는 통관 종류, 입국 항구, 상업송장 번호, 운송 수단, 수입일자(일/월/년), 물품 상세 내역 등이다.

3) 물품 검사

세관에서는 CASPER라 불리는 컴퓨터 시스템을 활용하여 무작위로 수입품을 검사하는데, 평균 검사 비율은 7.5~10% 수준이다. 그러나 신선농산물의 경우 전수검사를 실시하기도 한다.

4) 샘플 통관

무관세 통관은 가격 기준으로 NZ\$ 1,000(약 US\$650)까지만 허용되므로 전시회

출품용이나 상담용 샘플도 송장 가격으로 NZ\$ 1,000 이상의 물품을 반입하는 경우 정식 통관 절차를 거쳐야 한다. 실제로 과거 무역사절단이 방문했을 때, 우리 업체의 샘플(모조 장신구)이 이러한 문제로 오클랜드 세관에서 통관이 지연된 바가 있었고, 송장 가격을 기준으로 7%의 관세와 12.5%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했다. 따라서 간단한 샘플인 경우 송장 가격을 NZ\$ 1,000 미만으로 표기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아예 Non-Commercial로 신고하여 문제발생 소지를 없애야 한다. 샘플 또는 임시 반입 제품 가격이 NZ\$ 1,000을 상회하는 경우에는 국제적으로 인정된 ATA Carnets(임시 통관 요청 서류/각국 상공회의소 발행) 시스템을 활용 해야 한다. 다만 이 경우에는 반드시 사후에 재 반출해야 한다.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현지 공공기관의 행사(무역관 주관 무역사절단)에 참가 할 경우는 해당 기관이 발행한 공문도 샘플 통관에 큰 도움이 된다. 그러나 완고한 검사 요원을 만나게 될 경우 원칙을 따질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위 4항을 준수하는 것이 좋다.

나. 운송

1) 개요

뉴질랜드는 총 길이가 2011km나 되고, 구불구불한 도로지형을 가지고 있으며, 인구는 적지만 널리 산재되어 있는 나라이다. 그렇게 때문에 뉴질랜드에서 운송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전국에 걸쳐 약 9만 3000km의 통합 도로망과 4200km의 철로가 가설되어 있다. 대외 교역은 약 90%가 선박에 의해 이루어지고 나머지 10%가 항공을 통해 이루어 진다. 선박 운송의 경우 30여 개의 외국 회사가 맡고 있으며, 항만 관리, 운영도 이제는 거의 민영화 되었다.

2) 컨테이너 비용 (40피트 컨테이너 기준, 2012년 3월, Toll Global사 견적 기준)

- 내륙 운송비: US\$ 270 (오클랜드 지역 내 운송비)
- 해상 운송비: US\$ 3,000 (오클랜드→인천 또는 부산)
 - 한국 → 뉴질랜드 해상운송비: 뉴질랜드 → 한국의 경우보다 물동량이 많기 때문에 위 운송비보다 약간 비싼 편임.
- 한국 → 뉴질랜드간 운송 소요 기간: 약 3주

다. 유통

수입 제품의 유통 구조는 전문 수입상 → 중간 도매상 → 소매상 → 최종 소비자의 전통적 구조가 일반적이었으나, 사회가 복잡해지고 수입 자유화가 확대 시행되는 지금은 도매 또는 대형 소매상이 직접 수입을 겸하면서 유통 구조가 점차 다양해지고 있다. 실수요 업체는 물론 현지 수입업체들은 대부분 중간 유통업체 대신 직접 상대국 제조 업체를 접촉하려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수입 물량이 많지 않아(최소주문량 충족 곤란) 직접 수입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직도 전문 수입상의 역할이 크다. 대형 창고형 매장의 체인점들은 A/S 문제, 인력 최소화 등을 위해 수출 업체와 직거래하는 것보다 중간 유통업자를 상대하려는 경향이 많다.

하지만 최근 들어 저가의 중국산 제품이 범람하고 수입 제품간의 판매경쟁이 더욱 치열해짐에 따라 직수입을 통한 박리 다매를 마다하지 않고 있다. 한편 소규모 수요 업체들이 수출상의 최소 주문량을 맞추지 못하는 점에 착안, 여러 곳에서 주문을 받아 수입한 후 다시 최종 수요 업체에 공급하는 수입 에이전트의 활동도 여전히 활발한 실정이다.

IV. 투자

1. 투자환경

가. 투자환경

1) 투자매력도

뉴질랜드는 국토에 비해 인구가 적고 기후가 온화하여 생활하기가 매우 쾌적한 나라이다. 또한 다양한 인종이 어울려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치안이 매우 좋은 것도 큰 장점이다.

자유 민주국가로 정치가 매우 안정되어 있고 공무원들의 청렴도가 세계에서 가장 뛰어날 정도로 부패가 없는 것 역시 큰 장점이며, 사회제도가 영국의 영향을 받아 선진화되어 있는 것도 투자처로서의 매력을 더해 준다.

최근에는 외국인 투자에 대한 뉴질랜드 정부 및 국민의 인식이 매우 좋아 일자리가 창출되는 제조업 등에 대한 투자의 경우는 크게 환영 받고 있다. 경기침체 타개와 주종 산업인 임업 및 관광부문 개발촉진을 위하여 외국인 투자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있고, 도로, 항만, 교통통신 등 사회 기간시설이 비교적 발달해 있는 것도 장점이다.

2) 외국인투자에 대한 개방화 정도

뉴질랜드는 경제활동의 자유가 매우 폭넓게 보장되는 국가로 국익보호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임야, 수산 어획 및 농업용 토지에 대한 일부 투자제한을 하는 이외에는 규제가 없어 개방화 수준은 세계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창업 및 기업운영에 있어 장애요인이 거의 없으며 창업 소요기간, 행정 절차, 기업등록 비용, 고용과 해고, 투자자 보호에서 월등한 이점을 제공하고 있는 국가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자원관리법 등으로 환경에 대한 규제가 심하고 자원개발에 대한 제한이 많을 뿐 아니라 인구가 적고 제조업 기반이 취약한 것은 단점이다.

3) 투자진출 유의사항

특별한 유의 사항은 없으나 자국의 1차 산업의 보호를 위해 외부에서 반입되는 동식물(치어, 묘목, 발아가능 종자, 육류 등)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관리 및 규제하고 있다.

4) 투자유치 정책 개황

뉴질랜드는 외국인 투자를 일반부문과 민감 부문으로 구분, 관리 중이며, 민감 부문은 해안 인접토지와 호수, 도서, 농업용 토지 및 수산 어획 등이다. 일반 부문의 경우 NZ\$ 1억(약 US\$ 7,600만) 이하 규모의 토지에 대한 투자도 별도의 허가 없이 가능하며, 민감 부문에 대해서만 최소한의 허가 및 감독을 하고 있다.

5) 투자유치 관련 법규

외국인의 뉴질랜드 투자에 대해서는 Overseas Investment Act 2005에 의거, 해외 투자실 (OIO: Overseas Investment Office)의 허가 및 감독을 받아야 하며 OIO는 자국의 민감 부문과 NZ\$1억 이상의 일반 부문, 어업 및 어획량 관련 외국인 투자만을 허가 및 감독

대상으로 하고 있다.

나. 사회간접자본

1) 전력산업

2011년 총 발전량은 43,137 GWh이며, 77%가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발전이다. 전력회사로는 약 33%의 시장점유율을 보유한 Meridian Energy를 비롯, 3개의 국영기업과 2개의 민간회사가 있다.

뉴질랜드 전력회사별 시장점유 현황 (2011년)

사업자 이름	전기생산량(GWh)	점유율(%)
Genesis Energy & Energy Online	6526	15.8
Contact Energy and Empower	10260	24.8
Mercury Energy and Bosco Connect	6833	16.5
Meridian Energy and Powershop	13652	33.0
Trust Power	4033	9.8

자료: 각 사업자 Annual Report

주: 점유율은 전체 총액을 100%로 하여 구함.

2) 상하수도

물에 대한 수요량은 연간 20억㎥로 추정되는데, 가정용 2.1억, 산업용 2.6억, 축산용 3.5억, 농업관개용 11억 정도로 알려지고 있다. 인구의 87%가 공공 상수도 혜택을 받고 있으며 나머지는 빗물 또는 지하수로 자체 공급하고 있다.

산업용은 33%가 상수도로 공급되고 있으며 나머지는 자체 조달하고 있다. 자원 관리법(Resource Management Act 1991)에 따라 수산부(Ministry of Fisheries)와 자원 보호부(Department of Conservation) 그리고 각 지방정부(Council)에 오염방지 감독권이 주어져 산업용 폐수와 가정용 하수에 대한 감독이 적극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3) 국제공항 및 항구

뉴질랜드의 국제공항은 3대 도시인 오클랜드, 웰링턴, 크라이스트처치에 위치하고 있다. 매년 약 260만 명의 외국인 관광객과 200만 명의 내국인이 이용하고 있다. 오클랜드 공항은 뉴질랜드의 국내외 관문 역할을 하고 있으며 대한항공을 비롯한 주요 항공사의 취항이 집중되어 있는데, 매일 100여개 국제선 및 300여개 국내선이 이륙하고 있다. 오클랜드 공항은 시내에서 21km 떨어져 있고 차량으로 35분 가량 소요되며, 국제공항과 국내공항으로 청사가 구분되어 있다.

주요 항구 및 공항별 수출입 금액

(단위: US\$ 백만, FOB, %)

항구/공항	2011			
	수출액	수입액	합계	비중
Auckland	7,597	13,803	21,400	28.6
Tauranga	9,389	3,800	13,189	17.6
Auckland 공항	2,918	7,857	10,775	14.4

Lyttelton	3,987	2,330	6,317	8.4
Whangarei	540	4,525	5,065	6.8
Dunedin	3,515	387	3,903	5.2
Napier	2,899	437	3,336	4.5
Wellington	838	1,976	2,813	3.8
New Plymouth	2,299	285	2,584	3.5
Invercargill	1,072	584	1,656	2.2
Christchurch 공항	960	488	1,447	1.9
전체 항구/공항	37,713	37,106	74,820	100

자료: 뉴질랜드 통계청

웰링턴 공항은 행정수도에 위치 하고 있으며 국제선 보다는 국내선 성격이 강하다. 크라이스트처치 공항은 남섬의 교두보에 위치하고 있고 국내는 물론 국제선 역할도 상당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대한항공은 비수기와 성수기에 따라 운행 비행기편을 달리 하고 있다. 2011년 운항 스케줄은 성수기에는 주 6회 운항(화요일 제외), 비수기에는 주 5회(월, 목요일 제외) 운항하고 있다.

현지 취항 주요 항공사

항공사	홈페이지	전화번호
Aerolineas Argentinas	www.aerolineas.com.ar	+64 9 379 3675
Air New Zealand	www.airnz.co.nz	+64 9 336 2400
Air Pacific	www.airpacific.com	+64 9 379 2404
Air Tahiti Nui	www.airtahitinui-usa.com	+64 9 308 3360
Air Vanuatu	www.airvanuatu.com	+64 9 367 2324
Aircalin	www.aircalin.nc	+64 9 308 3363
American Airlines	www.aa.com	+64 9 309 9159
China Airlines	www.china-airlines.com/en/	+64 9 256 8088
China Southern Airlines	www.flychinasouthern.com	+64 9 302 0666
Cathay Pacific Airways	www.cathaypacific.com	+64 9 379 0861
Emirates	www.emirates.com	+64 9 377 6004
EVA Air	www.evaair.com	+64 9 358 8300
Jetstar Airways	www.jetstar.com	+61 3 9347 0091
Korean Air	www.koreanair.com	+64 9 914 2000
Lan Airlines	www.lan.com/index.html	+64 9 256 6900
Malaysia Airlines	www.malaysiaairlines.com	+64 9 373 2741
Pacific Blue Airlines	www.flypacificblue.com	-
Polynesian Blue Airlines	www.polynesianblue.com	-

Qantas Airways	www.qantas.com.au	+64 9 357 8900
Royal Brunei Airlines	www.bruneiair.com	+64 9 977 2209
Singapore Airlines	www.singaporeair.com	+64 9 303 3209
Thai Airways International	www.thaiair.com	+64 9 377 3886
United Airlines	www.nz.united.com	-

자료: Auckland Airport(www.auckland-airport.co.nz)

국제 항구로는 북섬의 Tauranga, Auckland, Napier, New Plymouth, 남섬의 Christchurch, Dunedin, Nelson 등이 있다. 수출 물량은 뉴질랜드 최대 도시이자 경제활동 중심지인 오클랜드 항구가 가장 많으며, 원목 및 농산물을 주로 수출하는 북섬 동부의 타우랑가가 두 번째이다.

오클랜드는 컨테이너 전용항이며 벌크선은 타우랑가를 이용한다. 남섬 Dunedin항과 Christchurch항이 그 뒤를 잇고 있다. 수입 역시 Auckland 항이 가장 물동량이 많고, 그 뒤로 Whangarei, Tauranga 순으로 수입 상품이 주로 북섬에 집중됨을 알 수 있다.

다. 국가경쟁력/경제자유지수 및 신용등급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이 매년 발표하는 국가 경쟁력 순위에서 뉴질랜드는 2011년 전체 조사대상 59개국 가운데 21위를 차지, 2010년 20위 에 비해 1단계 하락했다.

뉴질랜드의 정부효율은 8위로 좋은 성적을 받았으나 기업효율에서는 24위를 기록, 기업효율이 정부효율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국제 신용평가기관인 Standard & Poor's는 2012년 3월 현재 뉴질랜드의 국가 신용등급을 안정적(Stable)이라고 평가하면서 AA 등급을 부여하고 있다.

라. 투자허가

뉴질랜드에 대한 투자업무는 인베스트먼트 뉴질랜드(www.investmentnz.govt.nz)가 담당하고 있다. 동 기관은 뉴질랜드 무역산업진흥청(NZTE)의 산하기관으로 KOTRA와 거의 비슷한 역할과 기능을 하고 있다.

뉴질랜드 영주권 소지자 이외의 사람이 NZ\$ 1억 이상을 투자해 사업을 설립하거나 뉴질랜드 회사의 25%이상의 주식을 매매하려 할 경우 그리고 5헥타르 이상의 부동산(땅, 섬, 해안이나 공원)을 구입하는 경우는 토지정보국 산하의 해외투자실(OIO; Overseas Investment Office)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서면신청을 원칙으로 한다.

신청서류는 주한 뉴질랜드 대사관과 해외투자실 또는 중앙은행에서 입수가 가능하다. 신청서류에 기재하는 내용은 주로 신청회사의 경력, 사업계획 및 사업구조, 재정상태 및 자금조달 계획, 뉴질랜드에 대한 기여도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또한 고용 창출, 수지 균형, 미개발 자원 개발, 특정 지역의 개발 및 환경 개선 등이 투자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포인트로 알려지고 있다. 승인기간은 약 2~3주 소요되며 재무부 (Ministry of Finance)가 실시하는 투자허가에 대한 공고를 통해 승인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2. 외국기업 투자동향

가. 외국인 투자 누적 총액 NZ\$ 3,000억 규모

뉴질랜드 통계청이 밝힌 외국인의 뉴질랜드 투자액은 2011년 3월 말 기준 NZ\$ 3,000억으로 1년 전의 NZ\$ 2,887억 보다 3.9% 증가했다. 외국인의 직접투자 누적총액은 NZ\$ 938억, 포트폴리오투자 누적총액은 NZ\$ 1,028억, 무역 신용장 개설, 대출 등 기타 투자 누적총액은 NZ\$ 879억, 파생상품 투자액은 NZ\$ 159억으로 집계됐다.

외국인의 대뉴 투자액(누적치)

(단위: NZ\$ 백만)

구분		2010. 3월 말	2011. 3월 말
직접 투자	Equity Capital	49,858	49,592
	Other Capital	43,972	44,301
포트폴리오 투자	Equity Securities	12,654	13,528
	Debt Securities	81,173	89,288
기타 투자	Trade Credits	C	2,057
	Loans	59,463	60,345
	Deposits	22,203	23,274
	Other Instruments	C	2,318
금융파생투자	Financial Derivatives	15,479	15,948
총계		288,786	300,050

자료: 뉴질랜드 통계청

주: 해당연도 3월말 기준, C는 Confidential로 공개되지 않음.

2011년 말 기준 외국인 투자 누적액은 NZ\$ 3006억으로서 전년도 NZ\$ 2887억에 비해 4.1% 증가했다. 국가별 누적 투자금액을 보면 호주가 투자한 금액은 NZ\$ 1069억으로서 35.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영국과 미국이 각각 NZ\$ 490억, 454억으로 그 뒤를 잇고 있고, 이 세 국가의 비중이 전체 투자금액의 66.9%를 차지하고 있다. 아시아권에서는 일본(NZ\$ 67억), 싱가포르 (NZ\$ 41억), 홍콩(NZ\$ 36억)이 주요 투자국이다.

주요국가의 대뉴질랜드 외국인 투자 현황(누계)

(단위: NZ\$ 백만)

국가 및 단체명	2008	2009	2010	2011
호주	86,653	96,387	100,845	106,906
독일	1,799	3,303	1,572	1,267
홍콩	3,188	2,983	3,829	3,611
이탈리아	22	38	53	71
일본	9,320	10,727	6,206	6,778
네덜란드	4,615	4,176	3,383	3,270
싱가포르	8,464	6,387	3,684	4,137
스위스	1,944	2,455	2,037	1,620
영국	44,454	49,894	48,715	49,079
미국	48,332	54,300	49,472	45,409
전체	273,166	294,257	288,786	300,650

자료: 뉴질랜드 통계청(Statistics of New Zealand)

주1: 해당 연도 3월말 기준, (C)는 Confidential로 공개되지 않음

주2: 전체 금액은 해당연도 총 투자금액을 합산한 것임

나. 금융 보험 부문 투자가 압도적

통계청의 기업 대상 설문 결과로 집계된 업종별 외국인 투자 자산 가액 현황에 따르면, 금융 보험 분야의 투자 금액이 NZ\$ 178,703백만으로 금융투자 형태의 자금 유입이 가장 일반적임을 알 수 있다. 제조업에 대한 투자 자산가액은 US\$ 24,678을 기록 중이다.

업종별 외국인 투자 자산가액 현황

(단위: NZ\$ 백만)

업종	2007	2008	2009	2010	2011
농림수산업	4,527	4,716	4,982	5,143	4,503
광업	2,714	3,150	3,667	4,798	4,531
제조업	25,589	25,561	26,180	23,509	24,678
전력/가스/수도/폐기물처리	4,927	5,247	8,003	6,679	7,785
건설업	836	658	649	921	854
도매업	10,576	11,223	8,430	9,658	10,608
소매업	6,320	5,923	5,724	5,319	5,856
숙박/요식	902	889	918	981	986
교통/우편/창고	4,416	4,023	4,061	3,931	4,333
정보/통신	15,696	14,212	13,457	14,690	13,846
금융/보험	155,176	174,172	188,996	177,217	178,703
부동산 및 임대업	3,551	3,416	3,799	3,763	2,802
전문과학/기술업	2,815	4,704	5,091	4,933	3,302
사무관련	377	500	378	357	307
공공업무/보안	C	C	C	C	C
- 공공기관	15,090	17,498	19,175	23,621	34,781
- 국방	1	4	--	27	29
- 공공질서/안전	C	C	C	C	C
교육훈련	--	--	--	--	C
보건	810	1,551	1,738	1,550	1,778
예술/휴양서비스	C	C	C	C	C
기타서비스	107	C	C	C	C
산업구분없음	9,792	11,040	15,843	16,317	15,160
총 외국인투자액	266,069	290,276	312,693	304,661	316,627

자료원 : 뉴질랜드 통계청

주) C: 기밀, 매년 3월 말 기준

다. 오클랜드 지역에 대한 투자 가장 많아

외국인 투자의 지역별 분포는 북섬과 남섬에 골고루 분산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뉴질랜드 최대 도시이자 상공업 중심지인 오클랜드 지역에 대한 투자가 가장 많고, 다음이 북섬의 동북부 지역인 베이 오브 플렌티로 알려져 있다. 남섬에서는 북단에 위치 한

넬슨과 크라이스트 처치를 포함하는 캔터베리 지역이 유망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라. 주요 외국 투자 기업 (2007년~2012년)

- 2007년
 - 미국계 Pepsi가 NZD 2억5천만에 Bluebird Foods 인수(오클랜드)
 - 미국-호주기업 연합인 Sirius Finance가 NZD 1억7천만에 Blue Star Print Group 인수(오클랜드)
 - 영국 Antipodean사가 NZD 1억에 쇼핑센터 매입(오클랜드)
 - 호주 Alico HIT사가 NZD 2억2천만에 Strategic Investment Group 인수(오클랜드)
- 2008년
 - 홍콩 Cheng Kong Infrastructure Holdings Limited사의 Vector Wellington Electricity Network지분 100% 인수, 인수금액 NZD 785백만
 - 호주 Origin Energy의 Contact Energy 지분 일부 인수, 인수금액 NZD 52억
- 2009년
 - Retirement Villages NZ (호주지분 뉴질랜드회사)의 오클랜드, 타우랑아 지역그민감토지에 대한 지분 매입, 매입금액 NZD 13억
 - 일본 Suntory 사의 뉴질랜드 Dandone Holdings NZ 지분 획득, 호주/뉴질랜드 지역의 음료 시장 진출을 노림, 인수 금액은 기밀
- 2011, 2012년
 - 상하이 Pengxin Group社 뉴질랜드 초대형 목장(Crafar Farm) 인수를 추진 중임.

3. 우리기업 투자동향

가. 투자현황

우리나라의 대 뉴질랜드 투자는 80년대 이전의 기록을 갖고 있지만 본격화되기 시작한 것은 2000년대 초부터이다. 2011년 말 기준 우리의 투자는 신고기준 477건에 US 3억 8176만 달러이며 실제 투자는 US 2억 596만 달러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투자의 대부분은 엄밀한 의미에서 일반 기업의 해외투자라기보다는 이민 진출의 확대에 따른 이민형, 생활형 투자의 특징을 보인다. 따라서 건당 신고금액이 평균 72만 8000 달러에 불과한 소규모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민투자는 2000년 초 뉴질랜드 정부가 이민 문호를 개방, 현지에서 사업을 하겠다는 일종의 의향서만 제시하면 영주권을 부여하는 장기 사업자 비자 정책을 채택하면서 크게 증가 했다. 이민형 투자는 도소매업, 숙박음식업, 서비스업 등의 부문에 주로 집중되어 있다.

연도별 대 뉴질랜드 투자 현황

(단위: US\$ 천)

연도	신고건수	신고금액	투자금액
1980 ~ 99	55	96,708	18,922
2000	29	5,306	4,346
2001	73	14,780	7,893
2002	66	28,467	14,024
2003	48	33,456	33,853
2004	29	24,268	16,691
2005	32	24,169	24,973
2006	28	21,544	4,221
2007	34	38,213	32,202
2008	27	15,801	12,086
2009	13	13,480	12,462
2010	21	16,739	12,427
2011	22	48,835	11,862
Total	477	381,766	205,962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나. 기업투자현황

뉴질랜드에 대한 우리나라 기업의 직접투자는 아직 미미한 수준이며, 임업, 식품 분야에의 투자가 두드러진다.

풍부한 산림자원을 이용하기 위해 조림사업에 투자한 경우가 있는데 이는 일조량이 세계 어느 지역보다 많고 강우량 역시 풍부하여 나무가 비교적 빨리 자라는 환경을 활용하기 위한 투자로 평가된다. 또한 제조업에서는 거의 유일하게 오뚜기가 공장을 짓고 97년부터 사업을 시작했다.

건설업에는 2005년 우리나라 중견 건설업체가 오클랜드 시내에 토지를 직접 구입,

단일동의 아파트 건물을 건설하여 성공적으로 분양을 하기도 했지만, 그 후 활동과 다른 건설업체의 진출은 답보상태에 있다.

산업별 대 뉴질랜드 투자 현황

(단위: 건, US\$ 천)

분류	2009		2010		2011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13	12469	21	12427	22	11863
농림어업	4	1720	4	1621	5	2242
광업	1	3340	2	3351	1	7210
제조업	-	-	-	-	3	102
건설업	-	-	-	-	-	-
도소매업	0	0	8	6215	2	350
운수창고업	2	833	2	120	3	570
숙박음식업	1	0	2	362	6	1193
서비스업	3	674	2	571	2	196
부동산업	2	5894	1	187	0	0

주: 금액이 0은 신고는 했으나 투자를 하지 않은 경우

자료: 한국 수출입은행

한편, 뉴질랜드에 진출한 우리 기업은 약 20개사에 이르며, 오클랜드 지역에 삼성전자, LG전자, 오투기,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국민은행, 대한항공, LG전선, 대한전선, 하나투어, 디케이코리아 등이 진출해 있고, 남섬 크라이스트처치와 티마루에 동남, 동원수산, 주암산업, 사조, 태진, GOM 등 6개 수산업체가 진출해 있다.

4. 주요 투자법 내용

가. 투자 유치 정책 개황

외국인 투자는 일반적인 사업 투자(Business Investment)와 토지 투자(Land Investment) 부문으로 구분되며 각각 규정을 달리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특히 토지 투자에 대해서는 민감 토지(Sensitive Land)인 해안 인접 토지와 호수, 도서, 농업용 토지 등과 수산 어획 쿼터 매입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나. 투자 유치 관련 법규

1) 해외투자법(Overseas Investment Act 2005)

외국인의 뉴질랜드 내에서의 투자에 관한 관할 법으로서 이 법에 의해 해외투자실(Overseas Investment Office, OIO)이 개별투자의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해외투자법의 세부 내용은 해외투자실 홈페이지(www.oio.linz.govt.nz) 내 Publication 항목에서 상세히 열람할 수 있다.

2) 해외투자위원회의 승인이 필요한 투자

토지 관련 투자 시 다음과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유로운 투자가 가능하다.

- 토지 총 면적 5 헥타르 초과 시
- 토지 총 면적 4,000 평방미터를 초과하고 이름이 있는 섬의 일부일 때
- 토지의 크기와 상관 없이 이름이 없는 섬의 일부일 때
- 토지의 총 면적이 4,000 평방미터를 초과하고 용도가 자연보존의 목적을 가진 경우,
- 공공위락 목적의 경우 또는 문화 유산이나 역사 보존 지역인 경우
- 해안선을 포함한 대지와 인접 토지의 총 면적이 2,000 평방미터를 초과할 경우

주식 투자 시 다음과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유로운 투자가 가능하다.

- 총 주식의 25% 이상을 취득할 경우
- 주식 매입 금액이 NZ\$ 1 억을 초과하는 경우
- 회사 발행 주식 감정가 총액이 NZ\$ 1 억을 초과하는 경우
- 투자 대상 회사 주식 발행인의 자산 액이 NZ\$ 1 억을 초과하는 경우

자산 및 사업체 투자 시 투자 규모가 NZ\$ 1 억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는 해외 투자법에 의한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

다. 토지 투자 승인 절차(승인 필요 시)

별도의 승인신청 양식은 없으나 모든 신청서는 편지 형식으로 작성해야 하며 OIO 주소로 송부해야 한다. (OIO 주소: Overseas Investment Office, Land Information New Zealand, Private Box 5501, Wellington, Fax: + 64 4 460 0111, Email: oio@linz.govt.nz)

모든 신청서는 다음과 같은 형식을 따라 작성해야 한다.

신청인(Applicant)	- 이름, 생년월일, 국적, 여권번호 및 주소지 - 신청인의 뉴질랜드 비자 사항 - 신청인의 사업경력 또는 해외투자 경력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신청인의 자산 상태
매각인 또는 회사 (Vendor/Target Company)	- 매각인 또는 회사의 이름, 국적 및 주소지 - 매각인의 뉴질랜드 시민권 또는 영주권에 대한 사항
투자(Investment)	- 매입하고자 하는 대상물에 대한 정확한 설명 - 허가가 필요한 사항에 대한 설명 - 투자 예상가액에 대한 세부 설명 - 투자금액 조달 방법
토지(Land)	- 토지의 면적(헥터 또는 평방미터) - 법적 명세서 - 1 개월 이내 등기부 - 주소 및 지역을 포함한 위치 - 주변 지도 - 토지 소유권의 종류 - 매입 후 분할 예정인 경우 그에 대한 계획서
투자 이유 (Rationale for the Investment)	- 민감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사유 및 근거
제안서 근거 (Investment Criteria)	- 사업 경험, 재정적 능력, 인품, 영주권 취득 여부 및 영주 의사 등에 대한 설명

신청 수수료는 건당 최소 NZ\$ 12,300 이며 최고 NZ\$ 22,000 까지 건당 정해져 있다. 신청서 접수 후 통상 10~12 주 정도의 심사 기간이 소요된다.

라. 토지를 제외한 사업체에 대한 투자

별도의 승인 신청 양식은 없으나 모든 신청서는 편지 형식으로 작성해야 하며 OIO 로 송부해야 한다. 모든 신청서는 다음과 같은 형식 및 내용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신청인(Applicant)	- 이름, 생년월일, 국적, 여권번호 및 주소지 - 신청인의 뉴질랜드 비자 사항 - 신청인의 사업 경력 또는 해외 투자 경력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신청인의 자산 상태
매각인 또는 회사 (Vendor/Target Company)	- 매각인 또는 회사의 이름, 국적 및 주소지 - 매각인의 뉴질랜드 시민권 또는 영주권에 대한 사항
투자(Investment)	- 매입하고자 하는 대상물에 대한 정확한 설명 - 허가가 필요한 사항에 대한 설명 - 투자 예상가액에 대한 세부 설명 - 투자금액 조달에 대한 설명
투자 이유 (Rationale for the Investment)	- 민감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사유 및 근거
제안서 근거 (Investment Criteria)	- 사업 경험, 재정적 능력, 인품, 영주권 취득 여부 및 영주 의사 등에 대한 설명

신청 수수료는 건당 최소 NZ\$ 10,900 이며 최고 NZ\$ 12,900 까지 명기되어있다. 신청서 접수 후 통상 10~12 주 정도의 심사 기간이 소요된다.

5. 진출형태별 절차

가. 법상 구분

뉴질랜드에서는 사업자가 Sole-Trader, Partnership, Company 의 세 가지의 형태로 영업활동을 할 수 있다.

1) Sole-Trader

1인 사업자가 대부분 취하는 형태이다. 개인 사업자는 세금 및 관련 모든 비용에 대한 무한책임을 진다. 별도의 회사 등록 절차가 없으나, 세금등록번호 (IRD 번호)가 있어야 한다. 연소득이 6만불 이상일 경우 GST 사업자 등록을 하고 GST 번호를 부여받는다. GST는 뉴질랜드의 부가가치세 개념인 Goods and Services Tax를 말한다.

2) Partnership

2인 이상의 사업자가 동업을 하는 형태이다. 각 파트너는 사업체를 운영하는 비용을 공동으로 부담하고 채무에 대해 무한 책임을 진다. 별도의 회사 등록 절차를 요하지 않는다.

Limited Partnership은 무한책임을 지는 General Partner와 투자한 금액에 한하여 책임을 지는 Limited Partner로 구성이 되며, 이 경우에는 Companies Office에 등록 절차를 거쳐 회사의 형태를 띄게 된다.

3) 회사 (Company, 대부분 Limited-유한책임회사를 말함)

뉴질랜드 회사법(Companies Act 1993)상 설립되는 회사를 말한다. 아래 구성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Companies Office에 등록해야 한다.

- 회사명
- 주식 (1주 이상)
- 1인 이상의 주주
- 1인 이상의 이사 (Director)

나. 투자형태별

1) 외국기업 (Overseas Company)의 정의

회사등기소는 외국기업을 ‘최초에 외국에서 설립되었으며, 뉴질랜드에서 영업을 영위하는 모든 주체’로 정의한다. 외국기업은 뉴질랜드 현지에 법인을 설립하였거나 법인 설립 절차를 거치지 않았어도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자국의 채권자 보호를 위한 회사 등록 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회사 설립 시 주식의 25% 이상을 외국인이나 외국의 모기업이 소유한 경우 외국기업으로 정의한다. 이 경우 해당 회사는 회사등기소에 외국기업으로 등록하고 관련 재무제표 및 보고서 제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2) 현지법인의 설립

뉴질랜드의 회사 설립절차는 매우 간단하다. 외국기업이나 외국인이 자본을 이루는 모든

현지 법인의 설립 절차는 뉴질랜드 법인 설립 절차와 동일하게 간소하다.

외국기업으로 정의된 회사는 Financial Reporting Act 1993에 따라 회계 감사를 받은 후 재무제표를 포함한 연간신고서(Annual Return)을 등록 첫해를 제외하고, 결산일로부터 5개월 20일 이내에 회사 등기소에 제출해야 한다. Annual Return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지사의 등록된 사무실 주소 및 서류 송달 주소, 주식자본금 요약, 이사들의 인적 사항, 과거/현재의 이사 명단, 최종 연차 총회일.

외국기업은 Financial Reporting Act 1993에 따라 연간신고서(Annual Return) 외에도 연차 보고서(Annual Report)를 작성해야 하며, 수신을 원하는 모든 주주들에게 발송해야 한다. 연차보고서는 회계 마감일 5개월 이내에 작성되어야 하며 총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발송되어야 하는데 연차보고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재무제표 사본, 이사 보고서, 감사 보고서 (필요 시), 이사들의 인적 사항, 연간 수입이 NZ\$ 10만을 초과하는 임직원의 수)

3) 지사의 설립

지사라 함은 외국에서 설립된 외국기업 (Overseas Company)의 뉴질랜드 내 영업소로서, 현지법인 설립은 하지 않았으나 현지에서 영업을 진행하는 존재를 말하며, 현지법인과 동일하게 Overseas Company로 회사 등기소에 등록해야 한다.

이 영업소도 회계 감사를 받아야 하며, 이를 회사 등기소장에 현지법인과 동일한 절차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반드시 본사의 영문 재무제표 (한국 재무제표일 경우 공증 번역된 재무제표)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현지법인과 동일하게 연간신고서와 연차보고서를 회사 등기소장에게 제출해야하는 나머지 절차들은 현지법인과 동일하다.

3) 연락사무소

뉴질랜드는 상법상 지사와 개념이 다른 단순 사무소 (연락사무소 등)에 대한 개념이 없으나 부득이하게 연락사무소를 유지해야 할 경우, 정보수집이나 연락업무 등은 가능하나 영업 활동은 할 수 없다.

연락사무소의 경우 모기업이 송금하는 비용을 사용하기 때문에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나, 다만 이 경우 주재원의 장기 비자 획득이 어려울 뿐 아니라 현지 직원 채용이 불가능하여 현지 직원 채용시 고용에 따른 경비 지출이나 환급 등 세무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기능상 연락 사무소라고 하더라도 현지법인이나 지사의 형태로 설립되어야 한다.

다. 투자주체별

1) 단독 투자

투자가는 100%의 자기 자본으로 회사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개인 기업 (Sole Trader), 회사 (Limited Company) 등을 설립하여 영업 활동을 할 수 있다.

2) 합작투자 / 전략적 협력 (Joint Venture / Strategic Alliance)

두 개 이상의 기업이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재정적, 또는 재정적 이외의 영역의 각자의 무형적 자원을 모아 함께 협업하는 모든 형태를 칭한다.

합작투자/전략적 협력은 정해져 있는 규정이나 절차가 있는 것이 아니며 참여 주체들 간의 상호 협의에 의해 움직이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역할 또는 책임 소재에 관련한 분쟁이나, 이후 이익의 배분에 대한 상세 내용을 미리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지분 참여

투자자가 이미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뉴질랜드 현지 법인에 지분참여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해외 투자사무소 (OIO)의 제한 규정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한없이 참여할 수 있다. 해외 기업이 25% 이상으로 현지 기업에 지분참여할 경우 상기한 외국기업의 등록 및 관련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아래 경우에 대해서는 해외투자사무소 (OIO)의 허가를 득해야 한다.

- 전체 기업 설립 자본이 1억뉴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the total expenditure involved in establishing a new business exceeds NZ\$100 million)
- 기존 기업 지분또는 자산을 매입하는데 드는 금액이 1억뉴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the price paid when buying an existing asset or business acquisition (whether by one transaction or a series of related transactions) exceeds NZ\$100 million)
- 주식매입한 기업 전체 자산가액이 1억을 초과하거나, 25% 이상의 주식을 매입하면서 해당 매입가액이 1억을 초과하는 경우 (either the amount paid for the shares, or the gross value of the assets of the company (including its 25% or more subsidiaries) whose shares are being acquired, exceeds NZ\$100 million.)

마. 투자형태별 설립절차

1) 현지법인 설립절차

No	구분	준비사항	유의사항	담당부서	소요기간/ 비용
1	설립 요건	최소 1명 이상 필요, 자본금 결정 (최소 자본금 규정 없음)	자본금예치 필요 없음	회사등록소 (Companies Office)	
2	법인등록 신청	원하는 회사명, 이사의 이름 및 연락처, 총 주식수 및 주주 별 보유비율, 회사의 연락처	주식 액면가격에 대한 기재 사항은 없음, 실 주소, 우편 주소, 접촉의 망 주소	회사등록소 (Companies Office)	등록비용: NZD 150 (회사명 중복여부 검토비용: NZD 10)
3	예비등록증 수령 및 주요인사 동의서 제출		예비등록증은 온라인 접수 후 2~3일 내로 우편 수령되며 이때 동봉된 동의서 양식에 이사 및 주주가 서명 하여 회송 할 것	회사등록소 (Companies Office)	온라인 접수 후 2~3일

4	회사등록소가 회사등록증 발급		등록신청서에 기재된 이사의 주소지로 송부	회사등록소 (Companies Office)	
5	사업자 납세자등록	국세청신청서를 작성 하고 회사 등록증을 첨부하여 국세 에 제출하면 IRD&GST 번호를 부여 받음	현지에 체류할 주재원 (법인장 포함)은 개인 자격으로 납세자 번호를 별도로 신청해야 함	국세청 (Inland Revenue; IRD)	5
6	회사명의 은행구좌 개설	회사등록증 사본, IRD & GST 번호, Director 신분증2종 (여권, 운전면허증 또는 신용카드), Authority Letter from Shareholders	- 회사등록 및 사업자 납세자 등록 이 완료 후 은행구좌 신청서를 작성 하면 대부분 당일에 법인 명의 구좌 개설 가능 - 대리인 활용이 불가하며, Director 가 은행을 필히 방문 해야 함.	은행	1일
7	파견인력 최대환도 승인 (AIP; Approval In Principal	신청서, 사업계획서, 파견인력 숫자 및 지위와 업무내용, 파견인력에 대한 임금지불 방법 (예: 본사가 지불 한다는 서약서 등), 파견인력에 대한 주택, 차량 등 보조 관련 서류(예: 주택 임대차 계약서 등), 이외에도 이민성은 다양한 자료제시를 요구할 수 있음	- 법인 설립 후 해외 모기업으로부터 파견될 인력의 최대 숫자에 대한 협약이 선행되어야 이에 근거한 주재원 Work Visa 신청이 가능함. - 이민성은외국투자기업이 주재원 파견을 최소화 하고 가급적 자국인 고용확대를 요구하기 때문에 심사가 까다로움	이민성	- 파견인 력 4인 미만 (1~2개 월) - 파견인 력 5인 이상 (1년 이상 이 요구 되기도 함
8	파견인력 별 Work Visa 발급	Work Visa 신청서 "INZ 1015"	- AIP에 근거하여 주재원 파견 시 마다 개별적으로 Work Visa를 신청해야 함 - 비자 신청서는 이민성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이민성	-

2) 지사설립절차

No.	구분	준비사항	유의사항	담당부서	비용
1	회사명 승인신청	회사명 회사 홈페이지 아이디	- 회사등록소 홈페이지접속 후 온라인상으로 신청	회사등록소	NZD 10.22
2.	회사 등록신청	모기업 명칭, 주주들의 이름과 자택주소 뉴질랜드 내 사무소의 주소, 모기업의 권한 수입자 1명 이상의 이름과 주소 상호명 승인서	- 상호명 승인을 받으면 영업일 10일 내에 회사 등기소에 등록 신청서를 제출해야 함. - 회사 등기소장은 모든 요건이 충족되었을 경우 지사 설립을 증명하는	회사등록소	

		뉴질랜드가 아닌 제3국 에서 회사가 설립 되었다는 증명	증명서를 발급하며, 이때부터 지사명의로 영업이 가능함		
		모기업의 외국에서의 등록서류, 정관이나 정관이 없음을 입증 하는 서류			
3	사업자 납세자등록	국세청 신청서를 작성 하고 회사등록증을 첨부하여 국세청에 제출하면 IRD& GST 번호를 발급받음	- 현지에 체류할 주재원 (법인장 포함) 은 개인 자격으로 납세자 번호를 별도로 신청 해야 함.	국세청 (Inland Revenue; IRD)	

바. 추천 법무법인/ 회계 법인

- Chapman Tripp 법무법인
 - 주소: 23 Albert St. PO Box 2206, Auckland, New Zealand 1140
 - 전화 번호: +64 9-357-9000
 - 홈페이지: www.chapmantripp.com
 - 이메일: info@chapmantripp.com
 - 규모 관련정보: 175명의 변호사, 세계적인 기업의 자문 역할 (20th Century Fox Film Corp), 전국 3곳에 사무소 (오클랜드, 웰링턴, 크라이스트처치)
- Russell Mcveagh 법무법인
 - 주소: Vero Centre 48 Shortland St. PO Box 8 Auckland 1140, New Zealand
 - 전화 번호: +64 9-367-8000
 - 홈페이지: www.russellmcveagh.com
 - 이메일: andrew.peterson@russellmcveagh.com
 - 규모 관련정보: 250명의 변호사, 고객 (Qantas 항공, New Zealand Oil and Gas)
- Bell Gully 법무법인
 - 주소: Vero Centre 48 Shortland St. PO Box 4199 Auckland, New Zealand 1140
 - 전화 번호: +64 9-916-8800
 - 홈페이지: www.bellgully.com
 - 이메일: info@bellgully.com
 - 규모 관련정보: 1840 설립. 뉴질랜드에서 가장 오래된 법무법인 중 하나임. 2010년 포함 연속 3년 동안 New Zealand Top Law Firm으로 선정됨. International Financial Law Review가 선정한 2010년 New Zealand Top Law Firm of the Year.
- KPMG 회계법인
 - 주소: KPMG Centre 18 Viaduct Harbour Ave PO Box 1584 Auckland 1140
 - 전화 번호: +64 9 367 5800
 - 홈페이지: <http://www.kpmg.com/NZ/en/Pages/default.aspx>
 - 이메일: rjbuckley@kpmg.co.nz (Lead Partner)
 - 규모 관련정보: 전국 5개 도시에 사무실 위치함 (오클랜드, 웰링턴, 크라이스트처치, 해밀턴, 타우랑아)
- Delloite 회계법인

- 주소: Level 18, Deloitte Centre 80 Queen Street Private Bag 115-033 Shortland Street Auckland 1140 New Zealand
 - 전화 번호: +64 9 303 0700
 - 홈페이지: http://www.deloitte.com/view/en_NZ/nz/index.htm
 - 이메일: pvanschaardenburg@deloitte.co.nz (Mr. Pete van Schaardenburg- Senior Communicatios Advisor)
 - 규모 관련정보: 뉴질랜드 직원 수 900명, 전국 5개 도시에 위치
- Price Waterhouse Coopers회계법인
- 주소: PwC Tower 188 Quay Street Auckland, New Zealand
 - 전화 번호: +64 9 355 8000
 - 홈페이지: www.pwc.com/nz/en
 - 이메일: richard.agnew@nz.pwc.com (Mr. Richard Agnew- 파트너)
 - 규모 관련정보: 오클랜드 사무실만 직원 수 600명 및 54명의 파트너 근무함.

6. 투자입지여건

가. 투자 입지 여건 개황

적은 인구로 규모의 경제를 누리기가 힘든 뉴질랜드 특성상 제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는 극히 드물며 포트폴리오 투자와 자산 투자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풍부한 농축산품과 뉴질랜드의 청정이미지를 활용할 수 있는 식품 분야에서만큼은 투자가 진행되고 있다. 한국 기업으로서 제조업 분야에 유일하게 투자한 회사도 식품분야의 오뚜기이다. 그 외 한국의 목재 가공업체들이 뉴질랜드에서의 원목 가공 수입을 위해 진출 했으며 남태평양 대구, 오징어 잡이를 위해 일부 수산업체들이 남섬 지역에 진출해 있기도 하다.

이처럼 뉴질랜드에 대한 투자는 시장을 겨냥한 투자라기 보다는 뉴질랜드가 보유한 자원 확보 혹은 활용을 목적으로 한 투자가 대부분이다.

나. 주요 지역별 특징 및 투자 여건

뉴질랜드는 제조업 발달이 미약해서 지역별로 산업 특성이 확연히 드러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제조업은 주로 인구가 제일 많은 오클랜드를 중심으로 발달되어 있고, 그 외 지역은 낙농업이나 수산업이 발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1) 오클랜드 지역(Auckland Region)

뉴질랜드 최대의 도시인 오클랜드가 속해 있는 지역으로 전체 442만의 인구 중 150만 명이 거주하고 있어 경제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다. 대부분의 이민자들이 오클랜드를 이주 지역으로 정함에 따라 최근 5~6년간 부동산 투자 및 건축 붐이 일어난 바 있으나 현재는 세계적인 경기 불황의 여파로 다소 주춤하는 상황이다. 세계 50위권의 오클랜드 대학 및 다수의 사립 중고등학교가 위치해 있어 교육 산업 역시 크게 발달하였다.

2) 와이카토 지역(Waikato Region)

낙농, 목축업의 중심지로서 목장 및 관련 산업이 크게 발달해 세계 최대의 낙농 유통 기업이라 할 수 있는 폰테라의 유가공 공장 등이 위치해 있다. 폰테라는 세계 유가공품 시장의 40%를 공급하고 있다.

3) 웰링턴 지역(Wellington Region)

행정 수도인 웰링턴시가 위치해 있으며 시를 중심으로 관광 및 와인 산업이 발달하였다. <반지의 제왕>을 제작한 웨타 스튜디오가 위치해 있어 이를 중심으로 영화 산업 역시 각광받고 있다.

4) 캔터베리 지역(Canterbury Region)

2011년 2월 지진이 발생했던 남섬의 크라이스트처치가 중심도시이며 양을 중심으로 한 목축업이 발달해 있다. 인근에 퀸즈타운 등 세계적인 관광 명소가 위치해 관광 산업 역시 크게 발달해 있다. 지진 복구 등 인프라 재건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7. 노무관리

가. 노동법 및 노동 시장

뉴질랜드 노동법은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은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한 협상을 강화하고, 회사가 부도나더라도 노동자가 보호 되고, 고용주가 기존의 고용 관계법(Employment Relations Act)을 악용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 등을 담고 있다.

2010년 7월 노동자들의 권리뿐만 아니라 고용주를 위한 노동법이 개정되었다. 기존에는 직원 수 20인 이상의 고용주에게만 적용되었던 90일 수습기간 제도가 규모에 상관없이 모든 고용주에게 허용되도록 바뀌었다. 90일 수습기간(90-day trial) 제도는 고용주가 최고 90일까지의 기간을 수습기간으로 정하고, 수습기간 동안 직원을 자유롭게 해고할 수 있는 제도이다. 만약 수습기간 외에 고용주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이유로 직원을 해고할 경우, 직원은 고용주를 상대로 손해 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1) 기본적인 고용 여건

뉴질랜드는 호주로의 인력 유출로 만성적인 인력부족 현상을 겪고 있다. 부족한 인력을 아시아 및 남태평양 이민자들을 통해 해소하고 있으나 인건비 및 서비스 요금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고급 인력은 보수 조건이 보다 우수한 호주 및 미국 등지로 계속해서 유출되고 있기 때문에 고급 인력과 단순 인력 사이의 노동 시장 차별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최근 호주에서 발생한 홍수 및 뉴질랜드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숙련 노동 인력의 부족 현상 심화는 임금 인상 요인이 되고 있으며, 뉴질랜드 정부 및 중앙은행도 이러한 변수가 물가 및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2) 고용 절차

뉴질랜드는 대부분 중소기업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 10인 이하 회사 비율이 96%를 넘는다. 제조업은 취약한 반면 서비스업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있는데, 신문광고나 취업 알선 전문 회사를 통해 채용하거나 일부 대기업은 대학으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채용하는 경우도 많다.

그러나 직원 1, 2명 정도의 채용이 대부분이어서 특별한 자격 조건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대부분 사내 문건(사내 E-메일, 사내 공지사항 등)을 통해 직원들로부터 추천을 받아 채용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들은 직원 채용 후에 통상 3개월의 수습 기간을 설정하고 있다. 고용 계약 체결은 반드시 노동관계법을 준수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며 노동자의 권리를 중시하는 제도와 관행이 지배적임을 고려해야 한다.

3) 인력 수급

2011년 12월말 기준 뉴질랜드의 실업률은 6.3%로 여전히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뉴질랜드는 2002년 이래 인구 순유입이 계속 감소 하여 기업들의 경우 숙련 노동자를 찾기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이는 이민 문호가 대폭 축소 되고 뉴질랜드 현지인들이 보수 조건이 더 좋은 호주 등지로 이주함에 따른 현상이다.

4) 외국인의 고용

뉴질랜드 영주권이 없는 외국인이 뉴질랜드에 입국해서 일을 하려면 반드시 비자와 취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 뉴질랜드 입국을 위한 단기 비자는 비교적 쉽게 받을 수 있으나 취업 허가를 받기는 쉽지 않다. 일반적으로 고용주가 고용하고자 하는 피고용인이 특별한 경험과 기술이 있고, 뉴질랜드에서 피고용인의 서비스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을 때에만 취업 허가가 발급되는데, 그러한 노동력을 "뉴질랜드 현지 노동 시장"에서 구할 수 없을 때에만 허용하는 경우도 있다.

5) 최저 임금

2012년 4월 1일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최저임금은 시간당 NZ\$ 13.5 이며, 2011년 12월 현재 주당 평균임금은 NZ\$ 1,016.95이다.

나. 사회보장제도

현재 Work and Income이라는 기관과 IRD(국세청)에서 각종 수당 지급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Work and Income은 주로 저소득층, 장애인, 실업자 등과 관련된 수당 지급을 담당하며, IRD에서는 중산층 이하의 세금환급 및 소득공제를 통한 간접적인 지원을 담당한다.

주요 사회보장 제도로는 실업 수당(Unemployment Benefit; 16세 이상의 실업자에게 지급), 노후 연금(National Super Annuation; 만65세 이상의 노인에게 지급), 가족 세액공제(Family Tax Credit; 이전의 Family Support에서 명칭이 바뀜)이 있다.

2012/2013 회계연도 가족 세액공제 기준

만 13 세 이하 기준 자녀 수	연간소득 상한 금액(세전)
1 명	\$74,000
2 명	\$90,500
3 명	\$105,500
4 명 이상	\$120,500

자료: 뉴질랜드 국세청

현재 출산 휴가는 출산 예정일 기준으로 동일한 직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여성 노동자에게 14주까지의 유급 휴가를 보장하고 있으며, 주당 NZ\$ 372.12의 출산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Department of Labour 웹사이트에서 입수 가능하다.

8. 조세제도

가. 세제 개황

뉴질랜드의 조세 제도를 총괄하는 기관은 뉴질랜드 국세청(IRD)이며, 주요 세금으로는 법인 및 개인 소득세와 부가가치세(GST: Goods and Services Tax)를 들 수 있다. 매년 4월 1일에서 익년 3월 31일을 기본 세무 회계 연도(이하, 세무연도)로 하여 경상 비용을 제외한 순수 기업 이윤 및 부동산 거래 등에 따른 이윤 등을 과세 대상으로 한다.

세무연도의 제 4월, 제 8월 및 제 13월에 추정 세액(Provisional Tax)을 선납하고 부족할 경우에는 다음 세무연도의 제 13월까지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이는 IRD 승인 아래 기업별로 세무연도를 조정할 수 있다. 세무연도 13월은 차 세무 연도 1월을 의미한다.

나. 조세 종류

법인 소득세(Corporate Income Tax)는 33%로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으나, 2008.4월부터 30%로 2010.4월부터 28%로 인하하였으며, 외국 투자 기업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개인 소득세(Individual Income Tax) 세율은 2010.10월부터 연소득 NZ\$ 14,000까지 10.5%, NZ\$ 48,000까지 17.5%, NZ\$ 70,000까지 30%, 그 이상의 소득에 대해서는 33%를 부과하는 누진 제도를 시행 중이다.

뉴질랜드의 주요 세제 현황

(단위: NZ\$, %)

구분		변경전 세율	변경후 세율
법인소득세		30.0	28.0
Trustee 소득세		33.0	33.0
개인소득세 (소득구간별 할증)	~ 14,000	12.5	10.5
	~ 48,000	21.0	17.5
	~ 70,000	33.0	30.0
	70,001~	38.0	33.0
부가가치세(GST)		12.5	15.0

자료원 : 국세청

상속세는 폐지되어 적용되지 않지만 증여세(Gift Tax)는 연간 NZ\$ 12,000 이상은 IRD에 신고해야 한다. NZ\$ 27,000 이상의 경우 증여 금액에 따라 5~25%까지의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

주식 등의 배당금에는 33%의 세율이 적용되며 예금 이자 소득은 개인의 연간 총소득 금액 과 합산되어 개인 소득 세율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세금신고번호(IRD 번호)가 없는 경우 무조건 39%가 적용됨을 유의해야 한다.

부가가치세(GST)는 2010년 10월 1일부터 15%로 인상되었다. 부가급부세(Fringe Benefit)가 종업원에 대하여 급여 이외의 부가급부 제공 시(예를 들면 업무 목적 외의 차량 제공 시, 원가 이하 금액으로 자사 제품 제공 시 등) 피고용인 한 명당 분기별 NZ\$ 200 또는 전체 피고용인에 대해 연간 NZ\$ 15,000을 넘기는 금액에 대해 64%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는 비 거주 과세 보류자일 경우 뉴질랜드와 이중과세 협정이 체결된 국가의 시민은 10%, 그렇지 않으면 15%가 징수되며, 비거주 과세 보류자가 아닐 경우 2%가 징수된다. 비거주자가 배당금을 받는 경우도 비거주 과세 보류자로 분류된다.

9. 외환관리 및 자금조달

가. 금융 시장 개황

뉴질랜드 중앙은행(RBNZ: The Reserve Bank of New Zealand)이 통화의 발행과 금융 및 통화 정책을 담당하고 있고 재무 관리 및 재정 정책은 재무부(Treasury)가 관장하고 있다

한편 뉴질랜드의 5대 시중 은행은 모두 호주 등 외국계이며, 주요 상업은행은 BNZ(Bank of New Zealand), ASB Bank, ANZ Banking Corp., National Bank, Westpac Banking Corp. 등이 있다.

뉴질랜드 자본으로 운영되는 은행은 2001년에 설립된 Kiwi Bank가 유일한데, 비교적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우리나라 은행으로는 국민은행이 96년 5월 사무소를 개소하고 97년 9월부터 영업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외의 금융기관으로는 Private Savings Bank, Building Society, Merchant Bank, Finance Companies 및 Stock and Station Agent 등이 있다.

나. 은행 제도

뉴질랜드 은행은 Reserve Bank Act 1998에 따라 허가 받은 상업은행이 중심이 되며 이들은 은행은 registered banks로 중앙은행 지준을 엄수는 물론 외환 신고 및 업무 감사 등을 받게 된다.

뉴질랜드 금융 산업은 1980년대 중반에 대폭적인 규제 완화 조치가 단행된 바 있다. 그 후 자본 시장이 급속히 활성화 되었으며 증권 시장 규모가 확대되었다.

또한 선물 옵션이 도입되었고 이자율과 환위험 방지에 기여하게 되었다. 리먼 브러더스 등 미국 투자 은행들의 몰락에 따라 뉴질랜드 은행들도 위기 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다. 기타 신용 기관

보험업으로 AMP, AXA(구 National Mutual), Colonial, NZ Insurance, Tower Corporation, Prudentials 등의 보험 회사들과 소규모의 신용 대출 회사들이 있다.

라. 변동 환율 제도 운영

뉴질랜드는 1985년까지 고정 환율 제도를 운영해 왔으나 이후 외환 시장의 외환 수급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되는 바스켓 방식의 변동 환율 제도로 변경하였다. 외환 시장도 완전히 개방하여 현재는 외환 관리상의 제약이나 국내 기업의 활동에 지장을 주는 어려움은 없다.

그러나 뉴질랜드 달러화 가치의 변동이 심하여 2004년부터는 중앙은행이 일정 수준 외환 시장에 개입할 수 있는 정책을 도입하였다.

사. 자금 조달

1) 주식 시장(NZX)을 통한 자금 조달

o NZSX(New Zealand Stock Market)

뉴질랜드의 대표적인 기업들이 상장되어 있으며 2012년 3월 23일 기준 166개의 기업이 상장되어 있고, 시가총액은 NZ\$ 578억이다. (출처: www.nzx.com)

o NZAX(New Zealand Alternative Market)

중소 규모 회사의 상장을 통해 자금 조달을 돕기 위한 시장으로서 NZSX의 상장 요건을 갖추기 어려운 회사 등을 상대로 한다. 2012년 3월 23일 기준 25개의 회사가 상장되어 있고, 시가총액은 NZ\$ 6억이다.

o NZDX(New Zealand Debt Market)

채권 시장으로 2012년 3월 23일 기준 총 119개 사의 NZ\$ 158억 규모의 채권이 등록되어 있다.

2) 은행권 및 제2금융권을 통한 자금 조달

전국의 은행 및 제2금융권을 통한 다양한 자금 조달이 가능하며 중앙은행의 연속된 금리 인하로 은행권 담보 대출 금리가 6~8%로 상당히 내린 상태이나 기업 신용 대출은 여전히 14~15% 대를 유지하고 있다.

V. Business 참고정보

1. 시장특성

가. 협소한 시장 규모

뉴질랜드는 남 섬과 북 섬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전체 면적이 남한의 2.7배에 달하나 인구가 442만 명에 불과해 수요가 크지 않은 소량 다품종 시장이다. 높은 노동 임금과 인구 소국이라는 이유로 제조업이 취약해 소비재를 비롯한 대부분의 공산품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경제 구조는 농축산물을 중심으로 한 1차 산업이 주류를 형성하고 있으며 무역 의존도가 50% 이상이고 개혁 개방을 통한 자유 무역을 추구하고 있다.

나. 소비자 특성

1인당 국민 소득은 약 US\$ 25,000 내외를 기록하면서 우리나라보다 높은 편이지만 최고 33%에 이르는 높은 소득세율로 인해 가처분 소득이 낮아 실질적인 구매력은 제한적이다. 따라서 실용적인 중저가 제품을 선호한다.

검소하고 보수적이며 실용적인 소비의 특성을 보이고 있어 유행이나 고가품을 찾는 경향이 덜하고 적정 가격의 품질이 좋은 상품을 꼼꼼히 비교하며 구매한다. 중고가 상품을 구매해야 할 경우에는 크리스마스 또는 부활절과 같은 특수 세일 시즌을 최대한 활용하여 싸게 사려는 경향이 있다. 일반시민들은 중저가 실용적인 제품을 선호하고 첨단 신제품에 대한 실질적인 구매력은 낮다.

다. 한국 상품 인지도

한국 상품에 대한 인지도가 높은 편이며, 특히 IT, 자동차, 전자 및 기계 등을 중심으로 우리 제품의 우수성과 경쟁력이 인정받고 있다. 대표적으로는 휴대폰, LCD TV, 가전제품 등이 있으며, 도요타 리콜 사태 후 한국산 자동차의 인지도도 크게 높아졌다.

그러나 뉴질랜드 소비자들은 가격 위주의 실속 구매를 하는 경향이 강해, 한국상품에 대한 높은 인지도에도 불구하고 중국산 중저가 제품과 경쟁을 해야 하는 상황이므로 시장진출이 용이한 편은 아니다.

라. 치열한 경쟁 구도 형성

영업 활동이 자유롭기 때문에 수많은 기업들이 새로 생겨나기도 하지만 수시로 폐업되며 광범위한 중저가 제품 시장과 고가의 유명 브랜드 제품 시장이 공존하고 있다.

대부분 공산품이 무관세나 저율관세로 수입되어 가격 경쟁이 치열하다. 뉴질랜드는 전통적으로 지리적 근접성과 문화의 유사성으로 인해 호주로부터의 수입에 크게 의존해 왔으나 최근 미국 제품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중국 및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지역으로부터의 저가품 시장도 급속히 늘고 있다.

마. 거래 방식, 제품 선호도 및 상관습

영국 이주민에 의해 형성된 사회로 뉴질랜드만의 특별한 금기사항은 없으며 영국 등 서구사회의 기본적 문화예절과 상거래 관행이 통용된다고 보면 무난하다.

소규모 인구와 협소한 시장 규모 등 제반 여건으로 인해 다품종 소량 소액 주문이 주종을 이루며, 주문량이 적은 반면 주문 횟수가 비교적 많고 거래선을 쉽게 바꾸지 않는 보수적 성향을 갖고 있다. 대금 결제도 비용 절감을 위해 L/C 방식보다는 T/T 방식을 선호한다.

바. 유통 구조

과거의 전문 수입상-> 중간 도매상->소매상의 정형화된 구조를 갖고 있다. 그러나 최근 대규모 도/소매상들은 직접 수입한 후 자사가 보유한 대규모 직판장에서 직접 판매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1회 주문 단가가 높은 품목(산업용 원자재 및 설비 등)은 수입 업체들이 수출 기업이 요구하는 최소 주문량을 맞추지 못해 극소수 수입상들에 의해서 수입되어 공급되고 있다.

2. 물가정보

(1 NZ\$ = US\$ 0.8194 / 2012년 3월 22일 기준)

구분	항목	가격 (NZ\$)
식품류	쌀 1kg (Sunrice Medium Grain Rice Calrose White)	3.75
	계란 12개 (Size 7)	4.99
	소고기 등심 1kg	27.99
	돼지고기 등심 1kg	21.99
	우유 500 ml	1.70
	식용유 1L (Azalea Grape Seed Oil)	9.65
	생수 1L (Waiwera Water Still)	3.33
	맥주 (하이네켄 355ml, 6팩)	13.99
	담배 1갑 (말보로)	16.20
	햄버거 (맥도날드 빅맥)	5.20
	김치찌개 1인분	12.00
	의료보험료(4인 가족, 치과제외 Full Cover, 1년)	4000.00
의료비	병원진료비 (의료보험x, 몸살감기 내과초진)	75.00
	병원진료비 (의료보험 o, 몸살감기 내과초진)	30.00
	중형승용차 (2000cc 신차, 오토, 에어컨포함 기본사양)	31,990.00
차량관련	무연휘발유 1L (91 Octane)	2.16
	자동차 등록비	388.06
	자동차보험료 의무 (2000cc신차, 운전경력 10년, 대인/대물커버, 1년)	900.00 (의무보험 없음)
	도심 1시간 주차료	12.00
교통비	지하철 기본요금 (성인, 1구간)	1.70
	시내버스기본요금	1.80
	택시 기본요금	2.40
	도심 1시간 주차료	12.00
통신비	시내전화 요금 (3분)	0.75
	국제전화 요금 (3분, 한국으로 걸 때)	0.75
	휴대전화 요금 (월 표준 1분)	1.39
	인터넷 월 사용료 (메가텔) 30GB	71.28
주택	아파트 월 임차료 (150sm, semi-furnished, 시내, 중상급)	3,300.00
교육	초등 1년 수업료 (중상급)	없음(기부금200.00)
	중등 1년 수업료 (중상급)	없음(기부금300.00)
	고등 1년 수업료 (중상급)	없음(기부금600.00)
숙박	특급호텔 (5성급) 1박 정상요금 (싱글)	250.00
	중급호텔 (3성급) 1박 정상요금 (싱글)	120.00
임금/노무	대졸 초임 (대졸, 영어구사, 외국인회사 초임 월급여)	3,000.00
	생산직 초임 (학력무관 월 급여 초임)	2,800.00
	매니저급 급여 (인사담당 5년 경력 과장급 월 급여)	5,000.00
	주당 법정근무시간 (법적으로지정되지 않음, 개인이 고용주와 협상)	-
	출산휴가일수	70일 (14주)
	연간 국경일수	11 일
	주5일 근무 여부	5일 근무
기타	드라이 크리닝 (정장 1벌 기준)	20.00

주1: 호텔 요금은 성수기, 비수기에 따라 큰 차이가 있으며, 성수기요율은 정상요율과 할인요율의 중간 수준이라고 보면 무난함.

주2: 의료보험금은 개인별 건강상태, 나이, 흡연 유무에 따라 편차가 큼.

3. 바이어 발굴

가. 주요 기관 접촉을 통한 바이어 발굴

다음과 같은 경제 유관기관 및 단체 접촉을 통해 바이어를 발굴 할 수도 있다.

ID	Organization & Association	Website
1	New Zealand Trade and Enterprise	www.nzte.govt.nz
2	Investment New Zealand	www.investnewzealand.govt.nz
3	Employers & Manufacturers Association	www.ema.co.nz
4	Waikato Chamber of Commerce	www.waikatochamber.co.nz
5	New Zealand Agritech	www.agritech.org.nz
6	Deer Industry New Zealand	www.nzgib.org.nz
7	FashioNZ	www.fashionz.co.nz
8	Fonterra	www.fonterra.co.nz
9	NZ Marine	www.nzmarine.com
10	Meat and Wool New Zealand	www.meatnz.co.nz
11	New Zealand Winegrowers	www.nzwine.com
12	Organic Products Exporters	www.organicsnewzealand.com
13	New Zealand Pine Manufacturers Association	www.pine.net.nz
14	Plastics New Zealand	www.plastics.org.nz
15	Seafood Industry Council	www.seafood.co.nz
16	Software New Zealand	www.nzsa.org.nz
17	Textiles New Zealand	www.textilesnz.org.nz
18	Turners and Growers & ENZA	www.turnersandgrowers.com
19	New Zealand Trade Centre	newzealandtradecentre.com
20	Canterbury Employer Chamber	www.cecc.org.nz
21	Automotive Parts & Accessories Association	www.apaa.co.nz
22	Business NZ	www.businessnz.org.nz
23	New Zealand Food & Grocery Council	www.fgc.org.nz
24	New Zealand Ice Cream Manufacturers Association	www.nzicecream.org.nz
25	Packaging Council of NZ	www.packaging.org.nz
26	NZ Juice & Beverage Association	www.nzjba.org.nz
27	NZ Bio	http://www.nzbio.org.nz
28	Marine Industry Association	http://www.nzmarine.com/
29	Boating Industry Training Organization	http://www.nzmarine.com/
30	Auckland Chamber of Commerce	www.b-vital.com

나. 인터넷 검색 및 기업 디렉토리를 활용한 바이어 발굴

가장 일반적이고 유용한 바이어 발굴 방법은 구글 등 인터넷 검색 엔진을 활용하거나 인터넷 상에서 활용이 가능한 기업 디렉토리를 통해 1 차 잠재 바이어를 찾은 후 이를 D/B 화하고 직접 텔레마케팅을 구사하는 방법이다. 이들 사이트는 수시로 업데이트 되어 다양한 품목 및 분야의 최신 바이어를 발굴하기에 유용하다.

- Yellow page: <http://www.yellowpages.co.nz> (전화번호부)
- <http://www.ubd.co.nz> (기업디렉토리)
- <http://www.finda.co.nz> (기업디렉토리)

다. 신문 및 잡지 광고

무역사절단 상담 주선 등의 경우, 텔레마케팅을 통해 바이어를 발굴하나, 경우에 따라서는 신문 및 잡지, 교민 신문 등을 통해 바이어를 찾기도 한다. 전국을 커버 하는 일간지로는 The New Zealand Herald (www.nzherald.co.nz)가 유일하며, 광고료는 일반 지면 10Cmx15Cm 크기의 광고료가 US\$1,500 수준이다. 교민 신문으로는 잡지를 포함하여 10 종 정도가 있다.

라. 전시회 활용

전시회 참관은 제품에 대한 시장 수요 및 동향 그리고 바이어의 요구 사항을 직접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바이어를 발굴하는 매우 유용한 방법이다. 또한 전시회 개최 기관을 통해 참가업체를 확인하고 품목별 바이어를 발굴할 수도 있다.

마. 기존 고객 대상 발굴

오클랜드무역관 홈페이지 (www.kotra.or.kr/auckland)상의 인콰이어리 정보를 활용하여 해외고객을 발굴할 수도 있다.

4. 상관습 및 거래 시 유의사항

가. 문화적 금기 사항

영국 이주민에 의해 형성된 사회로 종교나 관습에 기초한 특별한 금기 사항은 없다. 영국 등 서구사회의 기본적 문화 예절과 상거래 관행이 통용되고 있어 상거래나 출장 시에 조심해야 할 특이사항은 없다.

철저한 신용사회라는 점도 서구 일반의 경우와 대동소이하여 시간 엄수 및 약속의 성실한 이행 등 일반적인 비즈니스 관행을 준수해야 비즈니스에 도움이 되고 신뢰 형성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또한 서구인들은 가족 중심적 생활에 익숙하기 때문에, 퇴근 시간(주로 오후5시) 이후나 주말에 약속을 잡는 것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삼가야 한다. 평일 저녁식사를 접대할 경우에도 당일 제안하는 것보다는 며칠 전에 초대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 대금결제 방식

일반적인 수입 절차 및 관행이 서구사회와 비슷하며 대금 결제 방식은 비용절감을 위하여 L/C보다는 T/T를 선호한다. T/T결제는 소액 거래의 80% 이상을 차지하며 심지어 수출업체의 은행 계좌로 직접 송금하겠다고거나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겠다는 수입상도 있다.

샘플 주문, 테스트 오더 등의 경우 최근 KOTRA의 소액 온라인 결제 시스템인 KOPS (Kotra Online Payment System, <http://kops.buykorea.org>)을 이용하는 빈도가 늘고 있다.

다. 거래시 유의 사항

뉴질랜드의 상거래 관행과 호주의 상거래 관행이 꼭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뉴질랜드 시장을 호주 시장과 묶어 생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뉴질랜드가 시장 규모는 작지만 별도의 시장으로 인정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최근 들어 한국 업체들의 적극적인 마케팅 노력으로 현지 업체와 직거래하는 경우도 점증하는 추세이다.

뉴질랜드 기업의 평균 종업원 수는 8~9명 수준이다. 대부분 기업은 가족 단위의 Family Business로 운영된다. 직원별 담당업무가 정해지면 타 직원의 업무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메일 교신 등 업무 연락시에 담당자가 출장 중이거나 휴가 중일 때에는 업무가 마비된다. 이 때 회신 지연 등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지 말고 느긋하게 기다리는 것이 좋다.

라. 비즈니스 에티켓

시간을 엄수하고 약속을 성실하게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며 일반적인 서구 생활 방식과 비즈니스 사고가 거의 그대로 통용된다. 문화 혹은 관습과 관련되어 요구되는 특별한 에티켓은 없다. 다만, 뉴질랜드는 다양한 민족과 다양한 종교를 가진 이민 사회이므로 잘 알지 못하는 바이어와 대화할 때는 민감한 주제는 피하는 것이 좋다.

마. 상담 시 유의 사항

거래선을 잘 바꾸려 하지 않는 보수적 성향의 바이어가 많아 기존 거래선이 있을 경우에는 거래 개시까지 상당한 인내심이 요구된다. Sample, 가격, 품질 보증 등 까다로운 사항들을 요구하기도 하나 원칙에서 어긋날 정도는 아니며 합리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다. 아침 일찍 근무를 시작하여 오후 3~4시경 끝내고 남은 오후 시간을 즐기려 하는 경향이 있고, 휴가기간이나 휴일을 방해 받는 것을 꺼리는 경향이 강하다.

바. 기타 참고사항

성의 있는 자세로 상담에 응하고 바이어와 눈높이를 조절하며 의사소통을 통한 우호적인 분위기와 신뢰감을 조성한다. 럭비가 국기이므로 럭비를 주제로 한 대화가 유익하다. 골프나 낚시 이야기도 대화소재로 유용하다.

상담 시 뉴질랜드가 소량 다품종 시장임을 감안하여 최소 주문량 및 바이어 요청 사항에 대해 세심하게 배려하고 있다는 인상을 심어 주어야 한다.

상담 이후 바이어의 문의 사항은 회신기한을 준수하여 답하며, 바이어와의 상담 시 약속했던 사항은 확실하게 이행하여 거래의 기본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Wood Packing 또는 Pallet을 사용할 때 수출 전 사용 목재에 대한 방역 검사가 필수 조건이므로 가격을 산정할 때 반드시 소요 비용을 감안해야 한다. 선편이 월 2~3회 있으므로 선적 일정 작성 시 고려해야 한다.

유럽과 거래 중인 업체는 기존 거래선을 변경하기를 꺼리는 경우도 많아 품질, 납기 등에 대한 신뢰를 심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시장 조사 시 소매 가격이 높은 것은 유통 기간이 길고 마진율이 높기 때문에 소매 가격을 기준으로 수출 가격을 책정하지 않는 것이 좋다. 일반 제품의 소매 가격은 수입 가격의 대략 4배 수준임을 기억해두면 좋다.

많은 한국 업체들은 접촉 방법의 미숙으로 거래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바이어 입장을 고려한 접촉 방법이 중요하다. 일례로 바이어에게 제품 검토를 요청한 경우 이메일이나 단순 레터보다는 영문으로 된 카탈로그 등이 포함된 세부 자료를 송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회사 소개서, 제품 카탈로그, 각종 거래 조건, 제품 설명서, 샘플 등 제품 검토에 필요한 충분한 자료를 우편으로 발송한 후, 거래 희망 여부를 팩스, 전화, E-메일 등으로 문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A/S나 클레임 해결 등 한국 업체들의 사후 관리는 현지에서 제기되는 주요 애로사항 중 하나이다. 이는 소량 주문에 따른 부수적인 영향으로 판단되나 신뢰도 저하에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역으로 A/S나 클레임을 신속하게 해결하여 신뢰도가 높아지면 거래 물량 확대 등 부수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정부나 국영기업이 바이어일 경우 이들의 품위를 저해할 수 있는 로비나 압력은 행사하지 않는 것이 현명하다.

5. 무역, 투자진출시 애로사항

가. 소규모 시장의 한계

뉴질랜드와의 비즈니스에서 가장 큰 애로사항은 작은 시장이 지닌 한계에서 발생한다. 기본적으로 다품종 소량의 통용되는 시장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큰 물량을 판매하겠다는 욕심은 금물이다.

따라서 뉴질랜드 시장이 지닌 한계만 볼 것이 아니라 시장 내 경쟁자들과의 경쟁을 어떻게 이겨나갈 것인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유사성이 많은 호주를 함께 공략해야 하는 동일 시장으로 삼는 전략이 필요하며, 품목이나 분야에 따라서는 남태평양 도서국 시장을 함께 고려하는 전략도 유효한 경우가 많다.

나. 보수적 거래 관행

뉴질랜드 시장은 유럽, 미국, 일본의 진출이 강했던 시장이며 아직도 이들 나라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매우 높고 일단 좋은 거래 관계를 유지하면 거래처를 잘 바꾸지 않으려는 보수적 성향 때문에 초기 시장 진입에 애로가 존재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첫 상담 시 우리 상품의 우월성을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사전 준비가 매우 중요하며, 장기간 믿고 거래할 수 있는 업체라는 신뢰를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또한 최근 중국 상품이 대거 유입되면서 기존 가격 질서가 재편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추후 중국 제품에 실망하는 바이어들이 대거 발생할 수 있는 점은 오히려 우리기업에게는 호기가 될 수도 있다.

현지 바이어들은 한국상품이 유럽이나 일본 제품보다는 품질은 떨어지지만 가격 면에서 경쟁력이 있고 중국 제품보다 가격은 높지만 품질이 우수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가격보다는 품질에 초점을 맞춰 제품을 홍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 까다롭고 느린 일 처리 관행

합리성과 매뉴얼에 따른 청렴한 일처리 방식이 뉴질랜드 사람들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천천히 흘러가듯 처리하는 업무처리 방식은 한국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인내를 요하는 단점임에 분명하다.

정부가 처리하는 심사 또는 소송 등 뉴질랜드 공기관에서 처리되는 모든 일들이 적은 인력을 이유로 매우 느리게 진행되며, 수시로 데드라인을 넘기는 경우도 많다. 사기업 또한 의사결정에 있어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들과의 비즈니스에는 많은 인내심이 요구된다.

또한 세계에서 가장 기업하기 좋은 나라로 평가 받고 있지만 막상 투자를 하려면 당초 기대와는 달리 실무적으로 까다로운 일에 부딪치는 경우가 종종 있다.

효율적으로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비용에 다소 부담이 있더라도 변호사, 세무사 그리고

전문 컨설팅회사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환경평가 및 주민 동의를 받아야 하는 Resource Consent에 있어서는 이들 전문가 그룹의 도움이 크게 작용한다.

라. 인력 확보의 어려움

현지진출 기업들이 뉴질랜드에서 겪는 큰 애로 중의 하나가 인력을 확보하는 일이다. 뉴질랜드 직장인들은 한 직장에서 오래 근무하기 보다는 여러 곳에서 경력을 쌓는 것을 중요하고 여기는 경향이 있고, 고용의 유연성이 높아 이직률이 높은 편이다. 이에 따라 고용된 직원들의 일에 대한 열의도 낮은 편이다.

이런 문제점 때문에 이민 2세를 대안으로 삼는 한국 기업들이 많은데, 이들 2세들이 한국어를 쓰는 한국인이긴 하지만 뉴질랜드에서 자라고 교육을 받은 관계로 한국의 직장인과 같이 비교하는 것은 무리이다.

또한 업무처리에 있어서 인맥이 작용하는 경우도 많다. 특히 환경이나 도시 계획과 관련하여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하거나 지역사회와의 있을 수 있는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지의 영향력 있는 현지인과의 네트워크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다. 대형 프로젝트일수록 이런 현상이 더 심하게 나타나며, 임업, 수산업, 부동산 개발 등에 있어서는 현지 마오리들을 설득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현지 네트워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6. 진출 성공, 실패 사례

가. 오뚜기 식품

오뚜기 식품은 청정 지역과 축산업으로 이름난 뉴질랜드의 장점을 활용하여, 생산제품에 사용되는 식품 원자재를 가공할 공장을 설립하기 위해 뉴질랜드에 투자를 결정했다. 이 회사는 자본금 약 US\$ 4백6십만으로 1995년에 회사를 설립했고, 오클랜드 시내에서 30분거리인 Takanini 지역에 부지를 확보하여 1997년부터 공장 가동을 시작했다.

투자초기에는 자원동의 (Resource Consent)를 받는 과정에서 냄새, 소음 등으로 공장 인근 주민들을 이해시키는 데 다소 어려움이 있었으나 주민들과의 대화 및 전문 컨설팅 업체의 지원을 통해 이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여 투자를 정착시키는데 성공했다.

현재 10여명의 현지 종업원을 두고 자동화된 설비를 이용하여 쇠고기 및 사골 등 엑기스 제품을 가공, 농축시켜 한국 및 해외 시장에 공급하고 있다. 양질의 식품 원자재를 저가로 구입할 수 있고, 노사 분규가 거의 없기 때문에 당초 투자 목적인 원료의 원활한 공급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현지 교민 시장을 대상으로 한 본사 제품의 수입, 판매업무도 새롭게 시작하면서 사업범위를 넓혀 나가고 있다.

나. 플러스 건설

2011년 11월, 국내 중견 건설업체인 플러스 건설이 남태평양 섬나라인 통가의 주택건설사업 수주에 성공했다. 2009년 9월 통가에서 발생한 쓰나미 피해 복구 프로젝트의 하나인 이 사업은 총 공사비가 US\$ 269만이며, 주택 70여채와 각종 기반시설을 건설하는 내용이다.

월드뱅크의 원조로 진행된 동 사업의 입찰에는 플러스건설 이외에도 뉴질랜드 최대 건설업체인 Fletcher의 통가 현지법인 등 남태평양 건설시장에서 활동 중인 8개의 주요 기업들이 참가했다.

동 사업 수주 과정에서 오클랜드무역관과 뉴질랜드 내 교포건설업체인 에일건축의 역할이 컸다. 오클랜드무역관은 통가 내 인맥구축을 통해 입찰정보를 입수해서 제공했고, 에일건축은 현지 건설 규범에 부합하는 기술적인 협력을 지원했다.

우리 기업의 진출이 거의 전무했던 남태평양 도서지역 건설 시장에 최초로 진출에 성공했다는 큰 의미가 있는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다. Foley Family Wines

Foley Family Wines사는 1996년에 미국에서 설립된 와인제조/유통업체이고 매년 50만 case의 와인을 생산하고 있다. Foley Family Wines사는 프리미엄 와인 브랜드를 보유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9년에 New Zealand Wine Fund사를 인수하였다.

New Zealand Wine Fund사는 Vavasour, Goldwater, Clifford Bay 등 다수의 뉴질랜드

프리미엄 와인 브랜드를 소유하고 있었고, 100헥타르의 포도농장에서 매년 28만 case의 와인을 생산하고 있었다.

Foley Family Wines사에 인수된 New Zealand Wine Fund사는 해외 수출을 위한 유통망을 확대하게 되었고, 국제 와인시장에서의 뉴질랜드산의 인지도를 향상시키는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었고, 결과적으로 글로벌 대형 와인업체로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 사례는 해외 수출 유통망을 가진 외국 업체가 고품질의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뉴질랜드 기업에 투자하여 해외로 수출하는 활로를 만들어주고 성공적인 브랜드 다각화를 이룬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라. Sucrogen사

Sucrogen사는 호주 최대 규모의 설탕 정제생산업체이고 세계 8번째 규모의 설탕 제조업체이다. 동사는 2010년 NZ\$ 2.14억을 투자하여 뉴질랜드 최대 설탕정제업체인 Chelsea사를 매입하는 데 성공했다.

Chelsea사는 1884년 뉴질랜드에서 설립된 회사로서 연간 20만 톤의 설탕을 생산하는 업체이고 뉴질랜드 소비자들로부터 가장 사랑 받는 설탕 브랜드였다.

Sucrogen사는 Chelsea사 매입에 성공하면서 세계 설탕생산업체 규모 순위를 8위까지 높였으며, Chelsea사 제품의 주요 수출국인 피지, 뉴칼레도니아 등 남태평양지역 설탕 시장과 일본 및 아시아지역 설탕 시장에서의 점유율 증가를 시도 중이다.

Sucrogen사의 투자는 내실이 있는 뉴질랜드 기업을 인수하며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기업으로 성장하는 발판을 마련한 성공적인 투자로 평가된다.

마. 투자실패사례: A사

우리나라 굴지의 A사는 뉴질랜드 건설 시장 진출을 위해 US\$ 5천만 규모의 상업빌딩(25층 호텔)을 전략적으로 수주, 2009년 초 현지법인을 세웠다.

그러나 A사의 현지 진출에 불안을 느낀 현지 4대 건설사들이 극심한 저항을 보였다. 현지 건설사들이 현지 은행에 압력을 행사해 은행이 지급보증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 현지 건설사들은 그간 제한된 시장을 나눠먹기식으로 적당한 경쟁과 고수익을 누리고 있었는데 강력한 경쟁자가 나타나자 보이지 않게 방해한 것으로 보인다.

보수적인 뉴질랜드 건설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충격적인 요법보다 현지 중소 규모 건설업체 인수를 통한 진출과 같이 시장 저항을 최소화할 것이 요구됨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7. 이주정착 가이드

가. 입국비자

뉴질랜드로의 입국 목적에 따라 발급받아야 하는 비자의 종류가 달라진다. 이민을 목적으로 입국할 경우에는 기술이민이나 투자이민의 카테고리에 맞는 입국 절차를 밟아야 하며, 현지 주재원으로 파견될 경우에는 워크비자를 발급받고 입국해야 한다.

뉴질랜드 비자는 호주 비자와 마찬가지로 매우 까다로운 편이며 발급에 소요되는 시간도 매우 긴 편이다. 따라서 뉴질랜드로의 입국이 결정되면 주한 뉴질랜드 대사관을 접촉, 비자발급 절차를 빨리 밟는 것이 좋다. 자세한 사항은 뉴질랜드 이민성 웹사이트(www.immigration.govt.nz)를 참조하면 되지만 이미 동일한 비자를 발급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된다.

나. 주택 구입 및 임대

주거 희망 지역의 부동산 업자를 접촉하여 매물을 찾는 것이 일반적이며 교민들이 부동산 회사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아 쉽게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뉴질랜드의 대표적인 온라인 거래 사이트인 www.trademe.co.nz를 방문해서 매물을 사전에 찾아보는 것도 큰 도움이 된다.

구입의 경우는 구매를 원하는 주택의 등기 상황이나 건축물 허가 상황 등에 대해서 미리 조사를 해야 한다. 등기소와 시청에서 주택에 대한 정보가 담긴 자료(LIM Report)를 구입할 수 있으며 그 자료에 무허가 증축 또는 미등기 상태, 금융권의 저당권 설정 등 상세한 내용을 볼 수 있으므로 구입 전에 열람 하는 것이 안전하다.

주택 구매에는 수수료가 없으나 판매에는 주택가의 약 4~5% 정도의 수수료를 부담한다. 주택 구매 시에 등기는 직접 해도 무방하나 대부분의 경우 변호사를 통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변호사는 사전 조사, 조건부 구매 및 쌍방간 대금 지불, 권리 등을 정리하므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을 고려해 볼 만하다. (변호사 수임료는 비싸지 않으며, 일반 주택의 경우 NZ\$800~1300수준임.) 구매 후 등기 이전 또는 조건 이행 등의 정리는 본인이 직접 해도 되지만 변호사에게 대행 의뢰도 가능 하다.

임대의 경우는 일반 단독 주택과 시내 아파트 등 선택의 여지가 다양하다. 통상 임대료는 주간 단위로 결정되어 2주마다 지불하는 것이 통례이지만 집주인과 협의해서 매월 지불할 수도 있다. 중개 수수료는 1주 임차료에 해당되는 금액에 상당하며, 보증금(BOND FEE)은 2~4주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부 기관에 예치하여 일방(대부분 임차인)이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 비용을 변제하는 데 사용한다. 집기와 가구를 구비한 임대 주택을 구할 수도 있으나 임대료가 더 비싸며, 입주와 전출할 때 가구와 집기의 상태를 점검해야 하고 손실이 있을 경우 변상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따른다.

통상 입주 시 부동산 업자나 집주인에게 입주 전 주택 하자에 대해 미리 서면이나 사진으로 통보하여 이사 나올 때 부당한 수리 비용을 지불(원상복구)하는 사례를 방지하는 것이 현명하다. 주택의 구매 때도 하자에 대해서는 미리 수리를 요청하거나 그에 상당한 비용을 거래 가격에서 할인 받는 것이 좋다.

최근 오클랜드 인근의 주택사정이 매우 좋지 않은 편으로 집을 구하는데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사전에 인식할 필요가 있다.

나. 자녀 교육 여건

1) 기본적인 여건

한국은 조기 영어 교육에 대한 부모들의 관심이 높아 뉴질랜드로 이민 또는 유학을 오는 사례가 많다. 이민자의 경우는 초등, 중등 및 고등학교에 자녀를 입학시키기 위해서는 학군제에 따라야 한다. 유학생의 경우 높은 수업료를 부담하므로 학군과 상관없이 본인이 원하는 학교에 입학이 가능하다. 이민 문호 개방 후, 자녀 교육에 관심이 높은 아시아계 이민이 늘면서 학군이 좋은 지역의 주택 가격이 기타 여건이 동등한 주변 지역에 비해 10% 이상 높게 가격이 형성되어 있다.

초, 중, 고등학교의 경우 공립학교는 의무교육으로 입학금과 수업료가 없지만(Work Visa 소유 주재원 자녀 포함, 일반 자비 유학생은 제외) 의무적으로 기부금(초등학교 약NZ\$200, 고등학교의 약NZ\$350 내외)을 내야 한다. 사립 학교의 경우에는 입학시 입학허가 심사를 받아야 하며 상당한 학비(약 NZ\$15,000~ NZ\$30,000 내외)와 기부금을 지불해야 한다.

2) 뉴질랜드 교육의 개요

뉴질랜드는 수준 높은 교육을 실시하는 나라로 국제적인 평판을 얻고 있으며 해외 유학생들에게 훌륭한 교육 정보와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교육 제도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로 나뉘나 학년제와 학기제는 우리나라와 다르다.

초등학교의 경우, 단체입학이 없고 만 5세 생일이 지나면 개별적으로 입학한다. 고등학교까지는 4학기제로 운영이 되며 대학교는 3월 학기와 7월 학기가 있다. 유치원은 만 4세까지이며 만 5세에는 6년제 초등학교에 입학한다. 중학교는 2년, 고등학교는 5년이며 의무 교육이고, 대학교는 종합대학교와 교육대학, 기술 단과대학인 전문대학(Polytechnics) 등 세 종류로 나뉜다. 종합 대학교는 뉴질랜드 전국에 8 개가 있다.

전문 대학은 직업 교육과 기술 훈련을 가르치는데 전국에 약 25개가 있다. 정부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으며 초보적인 교육에서부터 전문적 학위 과정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교육 과정은 1년 미만도 있고 4년에 걸친 학사 과정도 있으며 석사 학위를 수여하는 전문 대학도 있다. 교육 대학은 전국에 4개가 있으며 유치원 및 초등 및 중등교사를 모두 양성하며, 2~4년 과정으로 구분되어 있다.

3) 유아원/유치원

생후 만 3개월부터 탁아소(Day Care Centre)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정형화된 교과 과정은 없고 주로 놀이를 통하여 또래의 아이들과 어울리도록 지도한다. 만 3세부터는 유치원(Kindergarten)에서 교육 받을 수 있다.

4) 초·중등학교

어린이들은 만 5세부터 초등 교육을 시작하여 11세쯤 중학교에 입학한다. 고등학교는 만 13세부터 시작하며 다양한 학과목을 제공하는 400여 개의 공립 및 사립 학교(하이스쿨 혹은

칼리지)가 있다.

5) 대학 교육

종합 대학교는 모두 국립 혹은 공립으로 아래와 같다. 전공과 학위 등급에 따라 2년부터 6년까지의 과정이 있다. 17-18세의 고등학교 과정인 Year 13을 마치고 대학 입학 자격 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거나 이와 동등 한 자격을 갖추었을 경우 원하는 학교의 학과에 입학 신청서를 제출, 서류 전형과 인터뷰를 거쳐 입학하게 된다.

- The University of Auckland(Auckland): 뉴질랜드 최고대학, 법률, 정치, 상대 우수
- Auckland University of Technology (Auckland): 디자인, 스포츠매니지먼트 우수
- The University of Waikato(Hamilton): 과학, 기술, 경영학 우수
- Massey University(Auckland, Palmerston North): 농업, 원예, 수의학 우수
- Victoria University(Wellington): 수도권 웰링턴에 있으며 행정학, 법학, 정치학, 사회학 우수
- Lincoln University (Canterbury): 원예와 농업 우수
- University of Otago (Dunedin): 의학, 치의학 등 건강과학 우수
- The University of Canterbury(Christchurch): 공학 부문 우수

다. 기타 현지 생활 여건

1) 계좌 개설

은행 계좌 개설은 은행의 영업 시간에 언제라도 가능하며 임대 주택의 임대료, 전화, 전기, 가스 등의 사용료를 자동 이체할 수도 있다. 국민은행 오uckland 지점(전화: 64-9-366-1000)을 이용하면 외국어를 사용할 필요가 없으며, 그 외 ASB, BNZ, Westpac, The National Bank 및 ANZ 등의 은행에도 교민들이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2) 전화 신청

각 지역의 Telecom 회사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하면 즉시 번호를 부여 받고 대부분 당일 사용이 가능하다. 요금은 전화선 임차료로 일정액이 부과되고 사용량에 따라 이용료가 정해지는데, Auckland 지역 내에서 일반 전화를 이용해 일반 전화 라인으로 통화할 경우 사용료가 무료이다. 그러나 일반 전화로 시외 전화, 국제 전화 또는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 경우 각각 정해진 사용료가 부과된다. 일반 전화로 국제 전화를 이용할 경우 비싼 요금이 부과되는데, 한국 식품점에서 손쉽게 구입할 수 있는 국제전화카드를 이용할 경우 저렴하게 통화할 수 있다.

3) 생필품, 한국식품 조달

식품이나 생활 용품은 각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대형 슈퍼마켓 (PAK'N SAVE, COUNT DOWN, NEW WORLD)이나 잡화점 (THE WAREHOUSE, FARMERS, K-MART 등)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다. 대부분의 매장이 저녁 7시에서 10시까지 매일 영업을 하고 있다.

한국인이 필요로 하는 채소, 양념 및 기타 국산 제품은 한국인이 운영하는 매장에서 쉽게 구할 수 있으나 가격은 국내보다 약간 비싼 편이다. 한국으로부터 다양한 포장 김치가 수입되고 있으며, 오uckland에는 교민이 운영하는 김치 제조업체도 있다.

오클랜드에는 한국인이 운영하는 슈퍼마켓(매점)이 수십 개 존재하며 라면을 비롯하여 고추장, 된장 등 대부분의 한국 식품을 구입할 수 있다. 해밀턴, 웰링턴, 크라이스트처치, 로토루아 지역에는 각각 3~5 곳의 한국 식품점이 있고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여서 오클랜드 보다 불편하기는 하지만 조달에는 큰 어려움이 없다.

식당의 경우도 지역별로 많이 산재해 있는 데 오클랜드 시내에만 약 50여 개 이상의 한국 식당이 있어 원하는 종류의 음식을 맛볼 수 있다. 시내 일부 지역(Queen Street)에는 밀집된 한국 식당가도 있다.

4) 레저 여건

지역별로 럭비 경기장, 스포츠 센터, 수영장, 테니스장 등 사회체육 시설을 갖추고 있어 스포츠 활동을 하기에 좋으며, 동네 별로 골프장 있어 저렴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다. 가까운 숲이나 공원, 해변 등지에서 산책, 피크닉, 자전거 타기 및 요트, 윈드서핑, 제트스키, 낚시 등 다양한 레저 활동을 즐길 수 있다. 캠프 장소도 많아 레저 활동에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다.

5) 치안 상태

치안 상태는 양호하다. 그러나 대부분 퇴근 후에는 외출하지 않고 가족과 함께 지내기 때문에 한밤중에 차량이 없이 단독으로 외출하는 것은 삼가는 것이 좋다. 매 가구당 2대 정도의 자가용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대중교통이 상대적으로 취약하다.

최근 낮에 빈집을 터는 좀도둑이나 소매치기가 늘고 있으나, 전체적으로 볼 때 치안 상태가 불안하다는 느낌을 받을 정도는 아니다.

8. 출장가이드

가. 기후

1) 기후 특성(최상의 기후 여건을 가진 12~2월이 관광 시즌)

남반구에 위치하고 있어 계절이 한국과 반대이다. 온화한 해양성 기후이고 4면이 바다로 둘러 싸여 여름과 겨울의 기온 차가 크지 않다. 그러나 하루에도 4계절이 있다고 할 정도로 날씨가 변덕스럽고, 겨울(6~8월)이 우기라서 체감 온도가 실제 온도보다 낮다.

일반 주택은 한국처럼 난방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겨울철에는 평균 최저 기온이 영상 5도 안팎인데도 불구하고 집안 내부에서는 땀 속까지 시리다는 느낌을 받게 된다. 전기 히터나 가스히터를 사용해야 할 정도이며 한국인의 경우 전기장판 이용이 보편화 되어 있다.

9월 하순 이후 점차 날씨가 온화해지고 쾌적해져 아침 저녁 체감 온도가 약간 떨어지는 것을 제외하고는 생활 및 현지 출장 등에 아주 쾌적하다. 또한 매년 9월 말부터 익년 4월 초까지는 일광 절약제가 시행되어 낮 시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고, 오후 5시 퇴근 시간 후에도 여가활동 및 취미활동이 활발하다.

뉴질랜드는 서안 해양성 기후로 서풍이 불고 북동에서 남서의 방향으로 산맥이 위치해 있어 동서의 강수량 차이가 매우 크다. 최대 상업 도시인 오클랜드는 겨울에도 기후가 온화한 편에 속하며 북섬 하단에 위치한 수도 웰링턴은 바람이 몹시 강하다. 넬슨 지역은 일조 시간이 가장 길고, 남섬의 중심도시인 크라이스트처치는 연간 강수량이 가장 적은 특성을 보여 준다.

2) 주요 도시의 기후

구분	여름(1월)		겨울(7월)	
	최저	최고	최저	최고
WHANGAREI	15.4	24.4	7.2	15.1
AUCKLAND	15.3	23.3	7.1	14.5
HAMILTON	12.8	23.8	3.9	13.6
ROTORUA	12.7	23	3.1	12.1
GISBORNE	13.6	24.9	4.6	14.1
NEW PLYMOUTH	13.6	21.8	5.6	13.3
PALMERSTON	13.4	22.4	4.7	12.5
WELLINGTON	13.4	20.3	6.3	11.4
NELSON	13	22.4	1.6	12.4
CHRISTCHURCH	12.2	22.5	1.9	11.3
TIMARU	11.3	21.1	1.2	10.1
MILFORD SOUND	10.4	18.9	1.3	9.1
QUEENSTOWN	10.7	22.6	0.1	8.2
DUNEDIN	11.5	18.9	3.2	9.8
INVERCARGILL	9.4	18.6	0.9	9.5

자료 <http://www.niwa.cri.nz/edu/resources/climate/maxairtemp>

3) 출장에 필요한 추천 복장

6~8월은 뉴질랜드의 겨울로 비가 자주 내리고 날씨가 쌀쌀하여 여행이나 외부 활동에 제한을 받는다. 낮에는 해가 있어 따뜻하나, 출장시 추동복을 준비해 오는 것이 필수적이다.

12~3월은 여름으로 낮에는 기온이 높고 자외선이 매우 강하나 밤에는 선선하므로 출장 복장으로는 춘추복이 무난하다. 자외선이 강해서 선글라스도 필요하다. 일조 시간이 가장 긴 12월 말에는 저녁 9시까지도 여가 및 레저 활동을 즐길 수 있으며 Mission Bay 등 시내 인근의 주요 지역은 인파로 붐빈다.

나. 시차/근무 시간

1) 한국과의 시차(+3 또는 +4)

한국과의 시차는 KST+3(또는 4)시간이며 한국 시각 12:00가 뉴질랜드 시간으로 15:00 (또는 16:00)이다. 이는 매년 9월 마지막 일요일부터 익년 4월 첫째 주 일요일까지 일광 절약제(Daylight Savings)를 실시하기 때문인데, 이 기간에는 한국과의 시차가 4시간이 된다.

2) 근무 시간

사기업은 물론 관공서의 근무 시간은 09:00~17:00가 일반적이고 주5일 근무제를 실시한다. 은행의 경우 근무 시간은 업무 특성상 09:00~16:30이다. 상가는 10:00~18:00까지 영업하는 곳이 대부분이었으나 아시아계 이민자들의 유입이 증가하고 이들이 영업 시간을 연장하는 경우가 많아 큰 변화를 보이고 있다.

대형 슈퍼마켓 체인점 등은 통상 밤10시까지 운영을 하나 소재 지역에 따라 24시간 운영하는 곳이 생겨나는 등 다양한 업태가 등장하는 추세이다. 정부 회계 연도는 7월 1일부터 익년 6월 30일까지이며 기업의 회계연도는 4월1일부터 익년 3월 31 일까지이다. 예외적으로 일부 기업은 1.1~ 12.31 혹은 7.1~6.30을 택하기도 한다.

근무 시간

관청	월-금	08:30 - 16:30
은행	월-금	09:00 - 16:30
상업권	월-금	09:00 - 17:00
대형쇼핑몰 (Westfields)	월, 화, 수/토	09:00 - 18:00
	목/금	09:00 - 21:00
	일	10:00 - 17:30

다. 도량형

미터법을 사용하고 있어 한국과의 차이는 없으며 전기 규격은 한국과는 다른 230V~240V, 50Hz, 3 PIN 플러그를 표준 규격으로 하고 있다.

대부분의 호텔이나 모텔에 비치된 전기 플러그는 모양이 달라 한국의 제품은 직접 사용이 불가능하며, 별도의 플러그를 구입하여 부착해야 사용할 수 있다. 별도의 플러그는 공항 입국장의 매점이나 한국식품점 등에서 구입이 가능하다.

라. 출입국/비자

1) 여권 및 비자

뉴질랜드 여행에는 입국 후 출국 예정일로부터 3개월 이상 사용기간이 남아있는 여권을 소지해야 한다. 양국간 무비자 협정이 체결되어 있어 3개월 미만 체류희망 시에는 무비자 입국이 가능 한데(뉴질랜드 공항에서 90일 방문 허가 스탬프를 찍어 줌), 이 경우에는 필히 돌아갈 항공 티켓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3개월을 초과하는 장기 체류(취업 및 유학)의 경우에는 한국 또는 제3국에서 비자를 발급 받아야 하며 취업 비자 없이 취업할 수는 없다. 무비자(방문 비자)로 3개월 입국 시에는 3개월이 만료되기 전에 연장할 수 있으며 방문비자로는 최대 9개월까지 체류할 수 있다.

비자 종류로는 방문비자 외에 학생비자, 취업비자, 영주권비자 등이 있으며 주한 뉴질랜드 대사관이나 이민성(www.immigration.govt.nz)를 통해 보다 상세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주한 뉴질랜드 대사관-서울시 종로구 종로1가 교보빌딩/ 전화:(02)730-7794)

2) 까다로운 세관 검사

뉴질랜드는 농업과 목축업 등 1차 산업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 환경보존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농산물에 영향을 미칠 만한 병균이나 해충 등의 전염을 방지하고 유해한 물질을 반입하지 못하도록 엄격한 조사를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비즈니스 출장자나 여행객들이 소지한 식품과 동식물 관련 제품에 대해 세관 검사를 지나칠 정도로 까다롭게 진행하고 있으며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골프화의 경우 사전에 물로 세척해서 흙이 묻어 있지 않아야 한다.

식품이나 목공예 제품, 골프화 등은 도착 전 기내에서 신고 대상 물품이 있다고 신고하고 검사를 받아야 한다. 신고를 하지 않고 입국하려다가 X-레이 검사에서 적발되면 미신고에 따른 불이익(낙장 심사 및 벌금 부과)까지 당하게 된다.

반입 물품 허용 한도는 담배 200개피(1보루), 위스키 1,125ml 등으로 제한되는데, 보다 자세한 정보는 뉴질랜드 검역청에서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다. 출국시 공항세는 별도 납부하지 않는다.

3) 무비자 입국 주의 사항

우리나라와 무비자 협정이 체결되었다고 해서 사전 준비 없이 입국하려다 입국이 거부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무비자 입국 시에는 귀국 항공권과 충분한 유효 기간의 여권을 소지해야 하며, 입국 신고서 작성 시 여행 목적을 명확히 기재하고 일정의 현금이나 카드 등을 제시하여 관광객임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

뉴질랜드 이민국은 테러 분자의 입국을 봉쇄하는 등 자국 안보를 위해 입국 심사를

강화하고 있는데, 입국 목적이 불분명하고 여행 경비가 충분치 못해 불법 취업이나 불법 체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무사증 협정 국가의 국민이라 하더라도 입국을 거부하고 있다. 왕복 항공권이 없는 경우나 카드나 충분한 현금을 소지하지 않은 채 화려한 복장을 하는 경우 등도 오해를 살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마. 환율/환전/신용카드 사용

뉴질랜드 달러(NZ\$)로서 NZ\$ 1은 100 Cents이고, 주화는 10,20,50 Cent와 1, 2Dollar 등이 있으며 지폐로는 5, 10, 20, 50, 100 Dollar가 있다.

2012년 3월 22일 현재, NZ\$ 1은 US\$ 0.8194, 원화로는 925원의 매도율을 기록하고 있다.

환전은 평일 영업 시간에 일반 은행과 공항 환전소 및 주요 번화가의 사설 환전소 등에서 가능하고 공항이나 호텔에서는 항상 가능하다. 뉴질랜드 사람들은 NZ\$20정도 이상만 되면 대부분 직불카드나 신용카드를 사용해 현금을 많이 소지하지 않는다.

다만, 일부 식품점이나 식당 등에서는 신용카드를 받지 않는 곳이 있으므로 일정 수준의 현금을 지닐 필요가 있다. 환전 환율은 은행, 공항 환전소, 번화가의 사설 환전소 중에서 은행의 환율이 가장 유리하나 (크게는 10% 정도의 차이가 있음), 은행 소재지를 잘 모르는 비즈니스 출장자의 경우 US\$100 정도의 소액은 공항에서 환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뉴질랜드에서는 거의 모든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으며, 신용카드에 개인 비밀번호(PIN number)가 부여되었다면 전국의 은행이나 쇼핑센터에 있는 자동 현금 출납기(ATM)에서 현금 인출도 가능하다. 여행자 수표는 일반적으로 사용되지 않는다.

바. 교통/통신

1) 우리나라와의 항공편

인천과 오클랜드를 연결하는 노선에 대한항공이 1993년부터 취항하고 있으며, 2003. 10. 28부터 아시아나 항공이 인천-오클랜드 간 신규 취항을 개시하였으나 2005. 3. 1일부로 아시아나 항공이 운항을 중단했다.

대한항공은 현재 성수기에는 주 7회 매일 운항 중이며, 비수기에는 주 5회 운항 중이다. 인천에서 오클랜드로의 항공편은 월, 수, 금, 토, 일요일 16시 50분 인천에서 출발하여 익일 08:10분 도착이며, 오클랜드에서 인천으로의 항공편은 월, 화, 목, 토, 일요일 오전 08시 50분 출발하여 당일 17시 45분 인천 도착이다.

2) 택시이용

오클랜드는 많은 택시 회사가 영업하는 곳으로 택시 이용이 편리하다. 그러나 일부 대형 호텔 등을 제외하면 대기중인 택시가 없다. 모두 콜택시 형태로 움직이기 때문인데, 요금은 택시 회사별로 차량에 따라 상이하나 기본 요금 NZ\$ 2.40 + KM 당 NZ\$ 1.95 정도이다.

대표적인 콜택시 호출 전화번호(오클랜드)는 300-3000 이며 별도의 팁은 주지 않아도

된다. 공항에서 시내 중심지까지 택시로 이동할 경우, 도로 상황 및 이용 택시 회사에 따라 시간 과 요금에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오클랜드 국제공항에서 시내까지는 약 NZ\$80 정도가 소요되며 시간은 교통 상황에 따라 약 35-60분이 소요된다.

3) 버스/철도 이용

버스는 출퇴근시의 러시아워를 제외하고는 배차 간격이 보통 30~60분으로 운행 횟수가 적고 운행 시간도 제한되어 있어 지리에 익숙하지 못한 외국인 여행자의 경우에는 이용이 쉽지 않다. 21:00 이후에는 대부분 버스운행이 중단된다.

뉴질랜드의 모든 공항에는 셔틀버스가 운행된다. 따라서 숙소 또는 여행지의 중심 상가 지역에서 공항 셔틀을 쉽게 이용할 수 있다. 대부분의 셔틀버스 회사는 융통성을 발휘해 승객의 숙소까지 운행해 주기도 한다. 편도 이용료는 NZ\$20 안팎이다.

뉴질랜드 철도는 노후화된데다가 사용자가 적어 대중교통의 수단으로써의 기능을 거의 하지 못하고 있다. 다만 일부 철도를 이용한 관광 코스에서는 도로에서는 보기 힘든 아름다운 풍경을 볼 수 있다.

4) 국제 통화

□ 뉴질랜드에서 한국으로 통화

00(국제 전화번호)+82(한국 국가번호)+2(0을 제외한 서울 지역번호)+ 해당 전화번호
(예: 코트라 본사: 00+82+2+3460-7114)

□ 한국에서 뉴질랜드로 통화

001 또는 해외접속번호+64(뉴질랜드 국가번호)+9(0을 제외한 오클랜드 지역번호)+해당 전화번호 (예: 오클랜드무역관: 001 + 64 + 9 + 373-5792)

뉴질랜드에서 한국으로의 수신자부담 전화(콜렉트 콜)는 DACOM과 한국통신을 이용할 수 있으며 DACOM은 0009-080-상대방 전화번호를 순차적으로 누르면 되고 한국통신은 자동 Collect Call(000-982-4번을 누르고 지역번호와 전화번호)과 고국 교환원 전화번호(000-982-0)을 누른 후 교환원을 통해 전화하는 방식이 있다. 직통 전화는 000-984-지역번호와 전화 번호를 누르면 된다.

한국인 유학생들이 주로 사용하는 저렴한 국제전화 방법은 국제 전화카드를 구입하여 사용하거나 스카이프를 비롯한 인터넷 무료전화이다.

5) 국내 통화

비즈니스 출장 시에는 오클랜드 공항도착 시 공항에서 휴대폰을 임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공중전화는 주로 전화카드를 이용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전화 카드를 미리 구입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설치된 부스가 적어 상대적으로 전화 이용이 아주 불편하며, 일부는 신용카드 사용도 가능하다. 전화카드는 Pharmacy, Chemist 또는 Phone Card라는 간판을 걸고 있는 소매점에서 구입이 가능하다.

공항이나 시내 중심가에는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전화기와 동전 전화기도 설치되어 있으며 요금은 통화당 70센트이다.

6) 인터넷 사용 환경

한국에서 노트북을 가져갈 경우 뉴질랜드 방식에 맞는 콘센트를 사용하면 대부분 바로 사용할 수 있다. 5성급 호텔의 대부분 객실 내에는 인터넷 라인이 연결되어 있다. 노트북을 가져가지 않더라도 시내에 산재한 인터넷 카페(주로 한국인이 운영하며 한국어 버전도 공급)가 많이 있으며 가격도 저렴하다(1시간 US\$1~2). 다만, 느린 인터넷 속도는 감내해야 한다.

8) 특사 운송 회사 가격 및 사용 방법

가장 손쉽게 특사 운송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전국에 지점망을 가지고 있는 NZ Post를 이용하는 것이며 TNT Express 등도 이용할 수 있다

□ NZ Post 연락처

- 웹사이트: www.nzpost.co.nz
- 가까운 지점 문의 무료 전화번호: 0800 113 355
- 국제 특사운송 문의 무료 전화번호: 0800 736 353

□ 가격

Weight	Australia (Zone A)	South Pacific (Zone B)	East Asia & North America (Zone C)	UK & Europe (Zone D)	Rest of World (Zone E)
0.5kg	\$20.40	\$36.40	\$41.70	\$42.60	\$52.10
1kg	\$26.20	\$38.00	\$52.80	\$52.30	\$70.40
Over 1kg	Documents over 1kg are charged the same as merchandise pricing. Prices are available on the Rate Finder.				

주: 1kg 내외의 서류 발송 시 (1~5일 이내 도착), 한국은 Zone C에 해당

사. 호텔/식당

1) 호텔

뉴질랜드는 관광 국가로 호텔이나 모텔이 많아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데 별 어려움이 없으며 가격도 부담되는 수준은 아니다. 관광 성수기인 12월~2월에는 호텔예약이 힘들 때도 있다.

호텔예약은 통상 현지 여행사를 통해 예약하는 것이 관행이며 개인이 예약하는 것보다 할인 요금을 받을 수 있다. 무역관도 현지 출장자나 업무 유관 방문객들에 게는 여행사에 예약을 의뢰하고 카드로 직접 이용 요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한국에서 직접 인터넷으로 예약을 하거나 모텔 등 숙박시설을 직접 접촉하는 경우도 많다.

관광 시즌(12~2월)이나 주요 행사가 있을 때에는 호텔 예약이 곤란하거나 가격이 급등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비수기(계절 요인)를 감안하여 숙박 시설을 크게 확충하지 않는 데 원인이 있다.

한국인이 운영하는 여행사가 많아 이들을 통해 예약 가능하며 인터넷을 통한 예약도 일반화되어 있다. 많은 기관들이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호텔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동시에 예약도 처리하고 있다. 여행 정보 및 호텔 정보를 제공하는 곳인 AA센터 (www.nz-accommodation.co.nz)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요금은 여행사마다 다르고 관광 성수기인 11~3월이 비싼 편이다. 구체적인 요금은 상황에 따라 10~20% 내외에서 변동 가능하다.

주요 호텔 및 연락처

호텔명	주소
	연락처
The Stamford	Lower Albert St., Auckland TEL : (64 9) 309 8888, FAX : (64 9) 379 6445
Rendezvous Hotel	Cnr. Mayoral Dr. & Vincent St. Auckland TEL : (64 9) 366 3000 FAX : (64 9) 366 0121
Sky City Hotel	Cnr Victoria St., & Federal St., Auckland TEL : (64 9) 363 6000 FAX : (64 9) 363 6010
Hyatt Regency	Cnr. Waterloo Qdt. & Princess St., Auckland TEL : (64 9) 355 1234 FAX : (64 9) 303 2932
Langham	Cnr. Symonds St. & City Rd., Auckland Tel : (64 9) 379 5132 Fax : (64 9) 377 9367
Plaza Int'l	148-176 Wakefield St., Wellington Tel : (64 4) 473 3900 Fax : (64 4) 473 3929
Parkroyal Hotel	Cnr Grey & Featherston St. Wellington Tel : (64 4) 472 2722 Fax : (64 4) 472 4724
Copthorne Plimmer	Cnr Boulcott St & Gilmer, Wellington Tel : (64 4) 473 3750 Fax : (64 4) 473 6329
Millennium Hotel	14 Cathedral Square, Christchurch Tel : (64 3) 365 1111 Fax : (64 3) 365 7676
Holiday Inn City Centre (구: Centra Hotel)	Cnr Cashel & High St, Christchurch Tel : (64 3) 365 8888 Fax : (64 3) 364 5143
Crown Plaza Christchurch Hotel	Cnr. Kilmore & Durham Sts., Christchurch Tel : (64 3) 365 7799 Fax : (64 3) 365 0082
Millennium Hotel	Cnr Frankton Rd. & Stanley St. Queenstown Tel : (64 3) 441 8888 Fax : (64 3) 441 8889
Gardens Parkroyal	Cnr Earl St & Marine Parade, Queenstown Tel : (64 3) 442 7750 Fax : (64 3) 442 7469
Novotel Queenstown	Cnr Earl St and Marine Parade, Queenstown Tel : (64 3) 442 7750 Fax : (64 3) 442 7469
Millennium Hotel	Cnr Eruera & Hinemoaaru St., Rotorua Tel : (64 7) 347 1234 Fax : (64 7) 348 1234

Novotel Rotorua	Lake End Tutanekai St. Rotorua Tel : (64 7) 346 3888 Fax : (64 7) 347 1888
Rydges Hotel	272 Fenton St., Rotorua Tel : (64 7) 349 0099 Fax : (64 7) 349 0900

뉴질랜드 여행객들은 호텔 외에 모텔도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뉴질랜드 모텔은 주방시설이 완비되어 있어, 가족 단위 여행 시 많이 찾고 있다. 성수기에는 빈 방을 찾기가 힘들기 때문에 미리 예약을 해야 한다.

모텔 연락처

Rock Field	100 Rockfield Rd. Greenlen. Auckland Tel: (64 9) 579 4525 Fax: (64 9) 579 7403
Aristotles	Corner Link Dr & Sunnynook Rd. Auckland Tel: (64 9) 444 1177
Takapuna Golf Lodge	27 Ocean View Rd. Northcote Tel: (64 9) 419 8080
Northland Motel	232 Main North Rd. Papanui .Christchurch Tel: (64 3) 352 8478
Rotorua Gate Motel	1322 Hinemoa St. Rotorua Tel: (64 7) 348 1623
Tauranga GardenCourt	44 Sixteenth Avenue. Tauranga Tel: (64 7) 578 5858

2) 식당

현지 식당은 NZ\$10 내외의 FAST FOOD식당부터 최고급 레스토랑에 이르기까지 종류가 다양하다. 영업 시간은 보통 11:30-15:00(점심) 및 18:00-21:00(저녁) 이나 영업 시간이 연장되고 있는 추세이다. 교포 및 한국 여행객이 많아짐에 따라 한국 음식점이 Auckland에 50여 개, 시외 지역에 20개 이상 있으며, 오클랜드 중심지역인 Queen Street 끝에 한국 음식점이 밀집되어 있어 교포 및 비즈니스 출장자들이 이용하기 편리하다.

한식은 다양하게 이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한국으로부터의 이민자가 늘어나던 지난 몇 년과는 달리 유학생 및 이민자의 수가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어 영업 환경이 악화되고 있으며, 오클랜드 시내는 물론 외곽 지역에도 한식 및 중식 식당들이 속속 들어서고 있어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한국 식당

식당명	전화	소재지 및 특징
화 로	09-379-4040	시내에 위치하고 있어 이용이 편리 (최고급)
소나무	09-365-1000	시내에 위치하고 있어 이용이 편리
본가네	09-368-7420	시내에 위치하고 있어 이용이 편리
왕릉갈비	09-444-0092	43-51Downing St. Glenfield. 갈비, 영양탕, 감자탕, 굴밥

중국 식당

식당명	전화	소재지
Grand Harbour	09-357-6889	Viaduct Harbour 18-28
Dragon Boat	09-379-6996	7-37 Elliot St. City
New Orient	09-379-7793	20 Elliot St. City
취선루	09-444-9987	20 Link Dr. Glenfield ,한국인 경영
태화루	09-488-0166	25 Shakespear Rd. Millford, 한국인 경영
이화원	09-489-1800	72-78 Hurstmere Rd.Takapuna, 한국인 경영

일본 식당

식당명	전화	소재지
DAIKOKU	09-302-2432	48 Quay St
Narita	09-309-0033	492 Queen St., 재일교포 경영
GENJI	09-360-5050	26 Ponsonby Rd., 한국인 경영
Katsura	09-366-3000	Cnr Mayoral Drive & Vincent Street
Soto Japanese Garden Restaurant	09-360-0021	17 St.Mary's Rd. Ponsonby 10 NZ Restaruants 순위에 오름
Zipangu	09-376-4565	45 Ponsonby Road. Auckland
Wagamama	09-359-9266	1 Courthouse Lane.CBD

European 식당

식당명	전화	소재지
Sails	09-378-9890	WestHaven Marina. Westhaven Drive
Soul	09-356 -7249	Viaduct
Aquamatta	09-302-0478	2A/48 Courthouse Lane
Toto	09-302-2665	53 Nelson Street
Orbits	09-363- 3000	Skycity Hotel
Mecca	09-358-1093	85 Customs Street West
Harbourside	09-307-0556	1 st Floor. Ferry Bldg. Quay St
Pompino	09-309-3559	Cnr Quay & Queen St.
Prego	09- 376-3095	226 Ponsonby Rd.Ponsonby

아. 관공서 관행

뉴질랜드는 세계적인 수준에 올라있는 공무원들의 청렴도를 바탕으로 모범적인 행정 조직 체계를 갖추고 있다. 매년 부패 지수 조사에서 세계 1-2위를 다룰 정도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1980년대에 모범적으로 행정 개혁을 단행한 국가로서 행정편의주의나 관료주의 성향도 찾아보기 힘들고 행정 조직 구성 및 운영이 잘 되고 있다. 국제투명성기구

(Transparency International)에서 2010년 발표한 국가별 부패지수(CPI)를 보면 뉴질랜드가 9.3점으로 세계 1위의 투명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발표되었다. 전자 정부 구현에서도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으며 정부의 행정 업무에 대한 인터넷 이용이 활성화 되어 있다.

업무 담당자의 재량권 및 자율권이 높으며 상급자도 업무 담당자의 결정을 최대한 존중하는 업무 관행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상식적이고 순리적인 업무 처리 관행이 일상화되어 있고 예측이 가능한 업무 처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면담은 미리 약속을 해야 하며(창구 업무 제외), 청렴도를 고려하지 않더라도 업무상으로 뇌물을 주는 것은 금물이다. 뇌물을 줄 경우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 만인 앞의 평등이 실현되고 있는 국가로서 차별이나 시혜를 보기 힘들며 정보도 항상 공개되어 있어 민원 소지는 극히 낮다.

자. 공휴일

2012년도 뉴질랜드의 휴일은 아래 표와 같으며 신정연휴, Waitangi Day와 Anzac Day 및 크리스마스, Boxing Day는 요일에 관계 없이 그날이 휴일이다. 신정연휴, 크리스마스, Boxing Day가 토요일 혹은 일요일일 경우 다음주 월요일 또는 화요일까지 이월된다. 나머지 공휴일은 금요일 또는 월요일로 지정된다.

역사가 짧아서 전반적으로 공휴일은 많지 않은 편이며 특히 하반기에는 휴일이 3일에 불과해 10월 말 노동절과 12월 크리스마스 시즌이 전부이다.

2012년 뉴질랜드 공휴일

공휴일 명	공휴일	공휴일 내용
New Year's Day	1월 1일-1월 4일	신정 연휴 (2일)
Auckland Ann. Day*	1월 29일	오uckland 기념일(오uckland만 휴일임)
Waitangi Day	2월 6일	영국-마오리 원주민간 평화조약 체결일
Good Friday	4월 6일	부활절
Easter Monday	4월 9일	부활절
ANZAC Day	4월 25일	현충일
Queen's Birthday	6월 4일(6월 첫째 월요일)	영국 여왕 탄신일
Labour Day	10월 22일(10월 넷째 월요일)	노동절
Christmas Day	12월 25일	크리스마스
Boxing Day	12월 26일	크리스마스 익일이나 토요일인 경우 다음 월요일로 이월

주*: 이외에 도시별로 기념일이 다름 (오uckland는 2월 1일)

전반적으로 공휴일이 많지 않아 특별한 출장 지양 기간은 없으나 12월 중순부터 1월 중순까지 한 달 동안은 성탄절을 포함한 연말연시인 관계로 대부분의 기업, 관공서가 휴무에 돌입하고, 의사결정권자들의 접촉은 물론 정상적인 업무추진도 어렵다. 이외에 지역별로 해당 지역만 휴일인 경우도 있다.

차. 여행 시 유의 사항

1) 전반적인 유의 사항

뉴질랜드는 유럽 성향의 선진 국가이자 관광 국가로 외국인이 여행 하는 데 별다른 어려움이 없고 안전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사고를 당하거나 건강의 이상이 생기는 등 여행 도중에 예기치 못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 대사관, 영사관 및 기타 한국 관련 기관의 연락처나 비상 연락망을 확보하고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기본적으로 현지인들의 성향을 파악해 둘 필요도 있다.

2) 의약품 구입 및 병원 활용

간단한 감기약이나 해열제 등은 의사 처방 없이도 약국 (Chemist나 Pharmacy- 약 외에도 일반 생활용품 판매)에서 구입할 수 있다.

관광지와 호텔에서는 구급 병원 및 약국의 연락처를 수록한 관광 안내 책자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사고가 날 경우 국가에서 사고 보험(ACC)으로 치료해 주고 손해 배상 제도는 없다.

3) 국민 성향 및 생활 태도

영국인의 국민성을 이어 받아 보수적인 성품을 지니고 있으며, 성격이 느긋하고 친절하나 자존심이 강하다. 개인주의 의식이 생활화되어 있으며, 질서 의식이 강하고 규칙적인 생활 습관이 몸에 배어 있다. 교통 질서나 줄서기 등을 위반하면 전혀 무관한 시민 또는 행인으로부터 지적을 당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교통 사고가 나면 사진을 찍어 두거나 증인을 확보해 두는 것이 나중에 있을지 모를 다툼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다.

상대방을 만났을 때는 악수를 하며, 친밀한 사이거나 현지인인 마오리족들이 아니고는 뺨에 키스하는 경우는 드물다. 손가락으로 사람을 가리키는 것은 큰 실례이며, 상대방 이야기를 진지하게 경청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예의이다.

Mr., Ms 등은 공식적인 경우에 사용하며, 일반적으로는 First Name만 부른다. 면적에 비해 인구가 적은 관계로 처음 보는 사람끼리도 인사를 나누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외국인에게 초면에도 불구하고 반갑게 대하여 호감을 갖게 한 후 사기 범죄나 강도를 하는 사례도 드물기는 하지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 지고 있다.

어른을 공경하는 관습은 없으나 무례하게 대해서는 안되며 특히 여성에 대해서는 대화나 행동에 조심해야 한다. 심지어 귀엽다고 여자 아이의 얼굴이나 신체를 만지는 등의 행위는 성희롱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한다.

미국식 발음에 익숙한 한국사람은 뉴질랜드식 영어가 알아 듣기 어려울 때가 있으므로 양해를 구하고 천천히 말해 달라고 부탁해도 실례가 되지 않는다. 공식행사가 아니면 정장을 요구하지 않으며 초대를 받았을 때에는 공식 또는 비공식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선물 제공 및 현지인 대응

선물은 한국을 알릴 수 있거나 상징할 수 있는 물품이면 좋으나 비싼 선물은 오히려 역효과를 낸다. 특히 처음 만난 비즈니스 파트너에게는 선물을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뉴질랜드는 Manuka 꿀을 비롯한 다양한 건강 식품이 많이 생산되고 있어 한국의

특산품이 많이 선호되지는 않는다. 한국을 소개할 수 있는 영어 책자, 비디오테이프, 한국 노래 CD 등이 실용성 면에서는 뒤쳐질지 모르나 생동감 있고 색다른 좋은 선물이 될 수 있다. 지리적인 여건과 경제적인 교류 등을 감안하여 아시아와의 유대를 강조하고는 있으나 아시아 이민이 늘어나면서 반아시아 감정을 가진 현지인이나 유럽 이민자들도 있다.

5) 현지 기관 접촉

공공 기관 및 일반 기업 모두 규정 및 규칙에 따라 담당자의 판단 하에 일을 처리하고 있으며, 상급자는 담당자의 결정을 최대한 수용한다. 매우 친절하지만 속도는 빠른 편은 아니며, 공무원의 청렴도가 세계 1위로 모범적인 공무원 조직을 운영하고 있어 업무상 뇌물 제공 등을 통한 편의는 기대하기 어렵다.

카. 유용한 연락처

주 뉴질랜드 대한민국 대사관은 행정 수도인 웰링턴(Wellington)에 소재하고 있으며 뉴질랜드 최대 도시인 오클랜드(Auckland)에는 대한민국 대사관 오클랜드 분관이 소재해 교민 및 여행객들을 위한 영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KOTRA를 비롯한 여타 주요 기관들도 오클랜드에 위치하고 있다. 뉴질랜드에 거주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3만여 명의 교민 대부분도 오클랜드에 체류하고 있고 웰링턴과 크라이스트처치 등 3대 도시에 집중하여 거주하고 있다.

유용한 연락처는 다음과 같으며 한인 사회와 관련해서는 현지에서 발행되는 교민 신문(인터넷 서비스 동시 제공)을 활용하면 주요 기관 연락처는 물론 필요한 생활 정보 다수를 입수할 수 있어 편리하다.

□ 공공 기관

기관 명	소재지	전화번호
대한민국 대사관(Embassy of R.O.K.)	Wellington	64-4)473-9073
대사관 분관(Consular Agency)	Auckland	64-9)379-0818
KOTRA 오클랜드무역관	Auckland	64-9)373-5792
대한항공(Korean Air)	Auckland	64-9)914-2000
국민은행(Kookmin Bank)	Auckland	64-9)366-1000
재 오클랜드 한인회	Auckland	64-9)489-5700
크라이스트처치 한인회	Christchurch	64-3)348-2766

□ 긴급 연락처(현지기관)

- 화재, 경찰, 구급: 111
- 교통 정보: 0900-33-222(Transit NZ)
- 전화번호 문의: 018 (건당 사용료 50 센트 부과)

타. 관광 명소

뉴질랜드는 아름다운 자연 조건과 기후 그리고 관광 자원을 바탕으로 한 천혜의 관광 국가로서, 2010년 12월 기준 1년간 252만명의 외국 관광객이 방문했으며, 우리나라 관광객은 6만명 이상으로 전체 국가 중 6위를 차지했다. 한국에서도 많은 여행 상품이

있고 현지에도 많은 정보가 무료로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관광 명소나 여행에 필요한 정보는 쉽게 입수할 수 있다. 대부분의 관광객들은 북섬의 오클랜드와 로토루아에서 1박 정도를 하고 남섬까지 관광을 하고 있다.

1) 북섬

□ 노스랜드/ 베이오브 아일랜드 (Northland/Bay of Islands)

- 파이히아(Paihia)
 - 품격 높은 숙박 시설과 특유의 고급 해산물 음식점이 즐비한 Paihia 는 베이오브 아일랜드의 자랑이다. 베이오브아일랜드의 거점으로 사용되는 파이히아에서는 유람선이나 보트, 선박 등을 이용한 여행이 유명하다.
- 와이탕이(Waitangi)
 - 와이탕이 조약으로 유명한 와이탕이는 뉴질랜드의 역사에 깊은 관련이 있다. 1840 년 이곳에서 원주민인 마오리족과 영국 왕실이 평화협정조약을 체결했으며 이로 인해 뉴질랜드는 영국의 식민지가 된 바 있다. 조약의 체결 장소였던 트리티 하우스(Treaty House)는 이 지역의 명소이다. 여러 마오리 부족을 대표하는 조각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는 전통 마오리 공회당(마라이: Marae)도 있다.
- 러셀 (Russell)
 - 뉴질랜드 최초의 수도이며 파이히아에서 배편으로 20 분 정도 소요된다. 19 세기 초 선원들과 상인들의 특이한 행동으로 한때 남태평양의 지옥이라고 불리기도 했던 러셀은 정착 초기의 건축 양식을 지닌 건물들과 전경으로 관광객들의 발길을 끌고 있다.
- 케리케리 (Kerikeri)
 - 파이히아에서 북쪽으로 약 23 킬로미터 떨어져 있다. 감귤 및 키위 농장과 공예품의 중심지로 도자기나 직물과 같은 특산품으로 유명하다.

베이오브아일랜드는 낚시, 다이빙, 요트, 카약, 돌고래와의 수영 등 바다에서 여러 가지 레저와 스포츠를 즐길 수 있으며 금빛 모래 사장은 휴식을 취하며 선뜰하기 좋다. 대부분의 유람선 크루즈는 파이히아 항에서 출발하며 아름다운 섬들과 여러 종류의 바다 새들, 바다표범, 돌고래를 볼 수 있는데 유람선 크루즈는 종류에 따라 1시간에서 종일 코스가 있다.

□ 오클랜드(Auckland)

뉴질랜드 최대 도시로 다양한 관광 소재가 있는 상업 도시이며 주로 다음과 같은 관광 대상이 있다. 아래와 같은 관광 코스를 총괄하여 반나절 혹은 하루 관광이 가능한 다양한 상품들이 있다. (참고: 아래 표기된 가격은 시기에 따라 수시로 변경될 수 있음.)

- 오클랜드 주변의 관광지
 - Auckland Domain
 - 전쟁기념 박물관
 - 식물원(Botanic Garden)

- 동물원(Auckland Zoo)
- Western Springs Lakeside
- One Tree Hill
- 콘월 공원(Cornwall Park)
- 오클랜드 천문대 (Auckland Observatory)
- 에덴 동산(Mt. Eden)
- 켈리탈튼 수족관(Kelly Tarton's Underwater World & Antarctic Encounter)
- 해양 박물관 (Maritime Museum)
- 아트 갤러리 (Auckland City Art Gallery)
- 파넬 스트리트 (Parnell St)
- 레인보우 엔드 어드벤처 공원(Rainbow's End Adventure Park)
- 데본 포트 (Devon Port)
- 타마키 드라이브(Tamaki Drive)
- 해상페리(Ferry)

반나절 관광

- 하버 브릿지(Harbour Bridge) → 에덴동산 → 전쟁박물관(마오리쇼 매일 11:00, 13:30)
→ 로즈가든(Rose Garden) → 켈리탈튼 수족관 → 미션베이 해변도로(총 3시간 소요)
- 버스 투어: 매일 09:00 - 16:00 1시간 간격으로 출발
- 예약 전화: Downtown Air Terminal (전화 525-8088) 또는 한국인 여행사

□ 로토루아

원주민인 마오리족의 문화가 가장 잘 보존되어 있는 로토루아 (마오리 언어로 Roto-호수, Rua- 2번째 의 합성어임)는 화산 지대 중심으로 온천, 간헐천 등이 유명하다.

- 당일 투어: 매일 08:00 오클랜드 Downtown Terminal Air Terminal 출발하여 저녁 7시에 돌아오는 당일 일정이 있다. (약 NZ\$ 135)
- 예약 전화: Downtown Air Terminal (전화 525-8088) 또는 한국인 여행사

□ 와이토모 동굴

동굴 속 천장에 가득 찬 수만 마리의 반딧불이가 빛을 발산하고 있어 한밤의 은하수를 보는 것과 같은 감동을 안겨 준다.

- 당일 투어: 매일 08:00 에 오클랜드 Downtown Air Terminal 에서 출발하여 저녁 7시에 돌아온다. (와이토모 동굴과 로토루아 동시 관광 NZ\$ 145)
- 예약 전화: Downtown Air Terminal (전화 525-8088) 또는 한국인 여행사

추천 당일 코스

로토루아	아그로돔 양쇼 - 와카레와레와 마오리 민속촌 및 간헐천 - 진흙열탕 - 로토루아 호수 - 유황 온천욕	어른NZ\$105 어린이NZ\$89
베이오브 아일랜드	카우리 조림지 - 왕가레이 폭포 - 돌고래 크루즈 - 와이탕이 전망대 - 카우리 시계 박물관	어른NZ\$ 129 어린이NZ \$109
코로만델해안	템즈금광체험 투어 - 와카테테베이 - 엘가리무 베이 - 스론톤베이 - 타푸 - 코로만델 - 워터웍스	어른NZ\$129 어린이NZ\$109

추천 1박2일코스

로토루아/ 타우포 타조농장	타우포후카폭포 - 번지점프장 - 타우포호수 -지열발전소 타조농장 - 아그롬동양쇼 - 와카마오리민속쇼 - 레드우드삼림욕 - 가버먼트가든 - 로토루아 호수- 유황 온천욕	어른NZ\$ 249 어린이NZ\$199
베이오브 아일랜드	카우리조림지 - 왕가레이폭포 - 돌고래크루즈 - 와이탕이 전망대 - 90 마일 비치	어른NZ\$259 어린이NZ\$229
코로만델	타이루아 - 조개잡이-Hot water Beach - 위티항아 - 쿡스비치 - 크루즈탑승 -기암절벽의 머큐리섬 투어 - 코로만델 - 워터웍스- 타푸- 와이오무- 와카타베이- 스론톤베이 - 앵거리무베이 - 템즈	어른NZ\$259 어린이NZ\$229

□ 기타

타우포 호수, 뉴플리머스, 코로만델 반도, Bay of Island 등이 빼어난 자연 경관을 자랑한다. 예약 및 문의 전화는 Downtown Air Terminal(전화: 64-9-525-8088) 또는 한국인 여행사로 하면 된다.

2) 남섬

□ 크라이스트처치

크라이스트처치는 남섬 동해안 캔터베리 평야 중앙에 위치한 뉴질랜드 3대 도시이자 남섬 최대 도시로 인구는 약 36만 명이다. 고딕 양식의 대성당을 포함한 웅장한 유럽풍의 건축물을 보유하고 있는 일명 정원 도시(Garden City)이다.

□ 마운트쿡 (Mt. Cook)

남섬의 알프스라고 불리는 마운트쿡 산(3,767M)과 3,000M 급의 수 많은 봉우리 및 태즈먼, 마티슨, 프란츠조셉, 폭스 등의 빙하(헬기 관광 가능), 푸카키 호수, 테카포 호수, 퀸스타운, 밀포드 사운드 등 수려한 경관을 관광하고 스키를 즐길 수 있다.

□ 퀸스타운 (Queenstown)

19세기 초 금광이 발견되기 시작하여 개발되었다. 근처에는 수준 높은 설비와 규모를 자랑하는 밀부룩 골프 리조트가 있으며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이 라운딩한 것으로 명성이 높다. 뉴질랜드 관광의 메카로 불리며 아름다운 와카티푸 호수를 끼고 있으며 리마커마커블스 산맥을 마주하고 있다.

어드벤처 스포츠의 중심지로 급류타기, 제트보팅과 글라이딩은 물론 낙하산 타기 등을 즐길 수 있다. 또 4군데의 번지 점프 장소가 있으며 Kawarau Bungy Centre가 원조를 이루고 있는데 높이는 43미터에서 102미터까지 다양하다. 겨울에는 스키를 즐길 수 있으며 대표적인 스키장으로는 코로넛 피크, 리마커블 스키장 등이 있다.

□ 기타

전통적인 스코틀랜드 풍의 건축물을 자랑하는 교육 도시 더니든과 최남단의 도시 인버카길 등의 관광지가 있다.

○ 한국인 여행사

- 뉴질랜드 호주투어: 64-9)307-1234
- 좋은 여행사: 64-9)300-3720
- 레인보우 관광: 64-9)377-1061
- 하나투어: 64-9)300-3040

이외 약 10개 이상의 여행사가 있으며 이들 여행사를 통하면 호텔 및 다른 예약들을 기준 가격보다 저렴하게 예약이 가능하다.

9. 주요 전시회 개최일정

□ 오클랜드 국제보트쇼 (Auckland International Boat Show)

- 개최국가/도시: 뉴질랜드/오클랜드
- 개최주기: 매년
- 최초 개최년도: 1997년
- 개최기간: 2012.09.27 ~ 2012.09.30
- 개최규모: 27,000 m²
- 전시장: Viaduct Harbour
- 참가국수: 4
- 개최국 참가업체수: 220
- 외국참가업체수: 9
- 개최국 참관객수: 20,053
- 주요 참가국: 자국업체와 호주, 미국, 이태리 등
- 전시분야: 보트, 요트 및 관련 제품
- 주최기관: Marine Industry Association of New Zealand
- 전시품목: 보트, 요트, 해양관련 레저 및 스포츠 용품 등
- 홈페이지: <http://www.aucklandinternationalboatshow.com/>

□ 뉴질랜드 농업 박람회(Fieldays)

- 개최국가/도시: 뉴질랜드/해밀턴
- 개최주기: 매년
- 최초개최년도: 1968년
- 개최기간: 2012.06.13 ~ 2012.06.16
- 전시장: Mistery Creek Event Centre
- 참가국수: 다수
- 개최국 참가업체수: 900
- 외국참가업체수: 150
- 개최국 참관객수: 130,000
- 전시분야: 농.축산관련 제품
- 주최기관: Mistery Creek Event Centre
- 전시품목: 잔디깎는기계, 관계시설, 트랙터, 파종기, 물탱크 등
- 홈페이지: <http://www.fieldays.co.nz/>

□ 오클랜드 식품전(The Food Show)

- 개최국가/도시: 뉴질랜드/오클랜드
- 개최주기: 매년
- 최초개최년도: 1995년
- 개최기간: 2012.08.02 ~ 2012.08.05
- 개최규모: 5000 m²
- 전시장: ASB Showgrounds
- 참가국수: 다수
- 개최국 참가업체수: 300

- 외국참가업체수: 0
- 개최국 참관객수: 35,200
- 전시분야: 식품, 음료, 유흥, 요식업
- 주최기관: North Port Event Ltd
- 전시품목: 음식, 음료수 관련 모든 제품. 음식 재료, 향신료, 부엌용품, 건강식품, 와인
- 홈페이지: <http://www.foodshow.co.nz/>

□ 2011 오uckland 홈 쇼(Auckland Home Show 2011)

- 개최국가/도시: 뉴질랜드/오uckland
- 개최주기: 매년
- 최초개최년도: 1982년
- 개최기간: 2012.09.05 ~ 2012.09.07
- 개최규모: 12593 m²
- 전시장: ASB Showgrounds
- 참가국수: 7
- 개최국 참가업체수: 630
- 외국참가업체수: 6
- 개최국 참관객수: 72,000
- 주요 참가국: 호주, 뉴질랜드, 영국, 미국, 태평양 국가
- 전시분야: 가구, 가정용품, 건축, 냉난방, 실내.외 인테리어, 청소
- 주최기관: DMG World Media (NZ) Ltd
- 전시품목: 가전제품, 가구, 건축자재, 부엌 및 욕실제품, 에너지절약 제품
- 홈페이지: <http://www.aucklandhomeshow.co.nz/>

□ 오uckland 아기용품 전시회(Baby Show)

- 개최국가/도시: 뉴질랜드/오uckland
- 개최주기: 매년
- 최초개최년도: 1994년
- 개최기간: 2012.10.26 ~ 2012.10.28
- 개최규모: 6000 m²
- 전시장: ASB Showgrounds
- 참가국수: 다수
- 개최국 참가업체수: 180
- 외국참가업체수: 없음
- 개최국 참관객수: 14,269
- 전시분야: 교육, 유학, 서적, 완구, 게임, 의류, 캐릭터, 게임
- 주최기관: North Port Events
- 전시품목: 아동 및 유아용품, 장난감, 학습용 교재, 이유식, 산후용품
- 홈페이지: www.parentandchildshow.co.nz

10. 유관기관 웹사이트

가. 정부기관

- 경제개발부 (Ministry of Economic Development)
 - 주소: 33 Brown Street, PO Box 1473, Wellington
 - 전화: 64-4)472-0030
 - 팩스: 64-4)473-4643
 - 홈페이지: www.med.govt.nz
 - E-메일: info@med.govt.nz
- 해외투자실 (Overseas Investment Office, OIO)
 - 주소: 160 Lambton Quay, Private Box 5501, Wellington
 - 전화: 64-4)462-4490
 - 팩스: 64-4)460-0111
 - 홈페이지: www.oio.linz.govt.nz
 - E-메일: oio@linz.govt.nz
- 회사등기소 (Companies Office)
 - 주소: Northern Business Centre, Private Bag 92061, Victoria Street West, Auckland
 - 전화: 64-3)962-2602 (국제전화), 0508-266-726 (국내 무료전화)
 - 팩스: 64-9)912-7787
 - 홈페이지: www.companies.govt.nz
 - E-메일: 홈페이지 Q&A 이용
- 무역진흥청 (New Zealand Trade & Enterprise)
 - 주소: Level 11, ANZ Centre, 23-29 Albert Street, PO Box 8680, Symonds Street, Auckland
 - 전화: 64-9)366-4768
 - 팩스: 64-9)366-4767
 - 홈페이지: www.nzte.govt.nz
 - E-메일: 홈페이지 Q&A 이용
- 투자진흥청 (Investment New Zealand)
 - 주소: Level 11, ANZ Centre, 23-29 Albert Street, PO Box 8680, Symonds Street, Auckland
 - 전화: 64-9)366-4768
 - 팩스: 64-9)914-9896
 - 홈페이지: www.investmentnz.govt.nz
 - E-메일: info@investmentnz.govt.nz

나. 주요 도시 시청

- 오클랜드 시청 (Auckland City Council)
 - 주소: 35 Graham Street, Auckland Central
 - 전화: 64-9)379-2020
 - 팩스: 64-9)375-3358
 - 홈페이지: www.aucklandcity.govt.nz
 - E-메일: 홈페이지 양식 이용

- 노스쇼어 시청 (North Shore City Council)
 - 주소: 1-7 The Strand, Takapuna, Private Bag 93500, North Shore City
 - 전화: 64-9)486-8600
 - 팩스: 64-9)486-8500
 - 홈페이지: www.northshorecity.govt.nz
 - E-메일: actionline@northshorecity.govt.nz
- 와이타케레 시청 (Waitakere City Council)
 - 주소: 6 Henderson Valley Road, Henderson, Waitakere
 - 전화: 64-9)836-8000
 - 팩스: 64-9)836-8001
 - 홈페이지: www.waitakere.govt.nz
 - E-메일: info@waitakere.govt.nz
- 마누카우 시청 (Manukau City Council)
 - 주소: 31-33 Wiri Station Road, Private Bag 76917, Manukau City
 - 전화: 64-9)262-5104
 - 팩스: 64-9)262-5151
 - 홈페이지: www.manukau.govt.nz
 - E-메일: 홈페이지 contact us 양식 이용
- 웰링턴 시청 (Wellington City Council)
 - 주소: 101 Wakefield Street, PO Box 2199, Wellington
 - 전화: 64-4)499-4444
 - 팩스: 64-4)801-3138
 - 홈페이지: www.wellington.govt.nz
 - E-메일: info@wcc.govt.nz

다. 뉴질랜드 전체 법규

- 국회사무국 (Parliamentary Counsel Office)
 - 주소: Level 12, Reserve Bank Building, 2 The Terrace,
 - PO Box 18070, Wellington
 - 전화: 64-4)472-9639
 - 팩스: 64-4)499-1724
 - 홈페이지: www.legislation.govt.nz
 - E-메일: contact.pco@parliament.govt.nz

라. 해외투자승인 관련 법규

- 해외투자실: www.linz.govt.nz/overseas-investment
- 무역진흥청: www.nzte.govt.nz
- 투자진흥청: www.investmentnz.govt.nz

마. 노무 관련 법규

○ 노동부

- 주소: P.O. Box 3705, Wellington, New Zealand
- 전화: 64-4)915-4400
- 팩스: 64-4)915-4015
- 홈페이지: www.dol.govt.nz
- E-메일: info@dol.govt.nz

바. 조세 관련 법규

○ 국세청

- 주소: PO Box 761, Waikato Mail Centre, Hamilton 3240
- 전화: 64-4)472-0030
- 팩스: 64-4)890-4510
- 홈페이지: www.ird.govt.nz
- E-메일: nonres@ird.govt.nz